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 은 자

---

## 발간사

WTO체제의 도래와 선진국의 국내시장 개방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경쟁우위 확보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더 이상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시장 개방은 국내 중소기업과 외국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는 중소기업정책은 시장개방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높다.

중소기업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는 중소기업정책은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불균형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형평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정책이다. 나아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피해를 준다는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안정된 경영을 확보하고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해소한다는 논리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근거하여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 보호정책 중 대표적인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인 동시에 대기업 규제정책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고유업종제도에 대해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한계를 입증함으로써 고유업종제도의 폐지 내지는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본원의 김은자 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연구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황인학 연구위원, 이재우 연구위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이 연구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저자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7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

# 차 례

## 제1장 서론 / 11

## 제2장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정책근거와 논리 / 14

1. 고유업종제도의 정책적 배경과 논리 / 14
2. 고유업종제도의 법률적 근거 / 16
3. 고유업종제도 논리의 문제점 / 20
4. 법률적 근거의 문제점 / 24

## 제3장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현황 / 26

1. 고유업종의 지정·해제 현황 / 26
2. 고유업종의 시장구조 / 38
  - (1) 출하액 규모 / 45
  - (2) 평균출하액 비교 / 46
  - (3) 출하액 비중 / 48

## 제4장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평가 : 사례연구 / 51

1. 경쟁제한 / 51
2. 경쟁력 / 57
3. 시장개방과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 / 64
4.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형 업종의 변화 / 68

**제5장 요약 및 결론 / 75**

**참고문헌 / 79**

**부록 / 81**

**영문초록 / 151**

## 표·그림 차례

- <표 1> 고유업종 지정 현황 / 27
  - <표 2> 고유업종 지정품목 내용 / 28
  - <표 3> 산업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추이 / 36
  - <표 4> 해제품목의 업종별 현황 / 37
  - <표 5> 제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 출하액 비중 / 39
  - <표 6>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출하액 비중 / 39
  - <표 7> 제조업과 고유업종의 출하액 비중 / 40
  - <표 8> 제조업의 사업체수 및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 비중 / 41
  - <표 9> 고유업종의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 비중 / 41
  - <표 10> 제조업 전체 사업체수 및 고유업종 사업체수 비중 / 42
  - <표 11> 제조업 평균출하액과 고유업종의 평균출하액 비교 / 44
  - <표 12> 제조업 품목당 평균출하액 / 45
  - <표 13> 대기업 출하액 비중 70% 이상 고유업종 품목 / 53
  - <표 14> 대기업 참여 고유업종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비교 / 54
  - <표 15> 단체수의계약 품목과 고유업종 품목 중복지정 현황 / 56
  - <표 16> 골판지 제조설비의 단위당 생산 비교 / 71
  - <표 17> 골판지 생산기업의 시장점유율 비교 / 72
- 
- <그림 1>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규제의 법률적 근거 / 18
  - <그림 2>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절차 / 19

## 제1장 서론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보호육성정책의 근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의 기본정신이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임을 법률의 취지로 밝히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위의 정책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중소기업간의 협력, 기업구조의 전환, 계열화 촉진, 사업영역의 보호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정책은 크게 세제지원, 금융지원과 같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지원정책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포함한 그 밖의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정책으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 정책들 중 규제정책은 과거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성장이 일어났으므로 중소기업을 차별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적 기반하에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개방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경제환경에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은 여건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상실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정책 중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

업형 업종을 사전적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이 지정된 사업분야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현재 사업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유업종제도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제도로 경쟁을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제한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보호정책 중 가장 배타적이며 강력한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유업종제도를 주장하는 논리는 중소기업이 생산해도 품질에서 대기업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규모의 경제성이 없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기에 적당한 품목을 중소기업이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에게 성장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과 품질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낮은 기술수준은 대기업과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고유업종의 실효성은 해외로부터 국내시장의 진입장벽이 존재할 때 유지된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관세나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시장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외국 대기업의 고유업종투자도 신고제로 완화되었으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고유업종의 제품들이 대형할인매장을 통해 직접 수입되고 있다. 국내 고유업종 중소기업은 외국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 정책효과가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고유업종제도는 외국 대기업의 시장진출은 허용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국내 대기업만 불리한 제도이며,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의미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논리적 배경과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고유업종제도의 운영현황과 시장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구조를 파악하고 개별 품목의 사례조사를 통해 고유업종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정책배경과 논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고유업종의 지정과 해제 현황 및 시장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고유업종제도의 문제점을 경쟁제한과 시장개방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시사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제2장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정책근거와 논리

### 1. 고유업종제도의 정책적 배경과 논리

고유업종제도는 정부가 과거에 추진해 온 성장정책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격차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마련에서 출발하였다. 정부는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보면 업종을 고유중소기업형, 전문계열화형, 대기업화형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을 돕는다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고유업종제도는 1979년에 지정되기 시작하여 1997년 현재까지 중소기업 보호정책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과 더불어 기술변화 등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마찬가지로 고유업종제도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고유업종제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유업종제도에 대한 논리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와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고유업종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첫째, 중소기업은 과거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소외되었으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우리 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

1) 상공부(1988)

의 육성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업종을 정해 중소기업이 안정된 사업활동을 하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둘째, 과거 대기업은 성장과정에서 무분별한 다각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형 업종에 진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sup>3)</sup> 즉 대기업의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다각화가 경제력을 집중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립적 시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식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유업종제도가 고려되었다.<sup>4)</sup>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나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지정하는 고유업종제도의 논리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대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전제된 것이다. 중소기업형 업종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중소기업형 업종의 존재를 주장하는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형 업종은 일반적으로 생산의 분업체제상 중소기업에 적합한 분야로서 규모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업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sup>5)</sup> 호스머 W. A. Hosmer에 의하면, 중소기업형 업종이란 중소기업에 유리한 특수한 분야로서 국내수요에 주로 의존하며, 생산과 소비가 소규모이고, 고정밀도, 지방특화 제품, 불균형

2) 상공부(1988), 중소기업정책연구회(1991)

3) 최순규(1991)

4) 중소기업정책연구회(1991)

5) 산업연구원(1992)의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성장부문, 단기에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매스 M. L. Mace는 유행과 제품형태의 변화가 심해 중소기업에 유리한 업종을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보고 있다. 즉 표준품의 장기생산이 어려워 대량생산체제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 의한 소규모생산이 더 유리한 업종이 중소기업형 업종이라는 것이다. 그룬왈드 A. E. Grunewald는 소비행태의 변화나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가 변하여 발생하는 소비부분을 중소기업에 유리한 업종으로 보았다. 즉 소비의 다양성은 생산품의 다양성을 요구하므로 차별화된 다양한 소규모의 제품생산에 유리한 중소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메릴 H. F. Merrill은 대규모 조립산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는 상호분업관계가 성립되며, 이 분업관계 속에서 대기업은 조립부분을 중소기업은 부품생산을 담당하게 된다고 보고 부품생산부분을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보았다. 카프란 A. D. Kaplan은 적정투자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형 업종을 구분하였는데, 규모의 경제성이 대규모기업에 유리한 업종은 높은 투자규모에서 최적이윤점이 결정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낮은 투자규모에서도 최적이윤점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낮은 투자수준에서 최적이윤점이 결정되는 품목을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소기업형 업종은 중소기업에 규모의 경제성 및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으로서 시장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수요의 다양성에 적응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이고, 기술적으로 단순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분업관계를 유지하는 부품생산인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 2. 고유업종제도의 법률적 근거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정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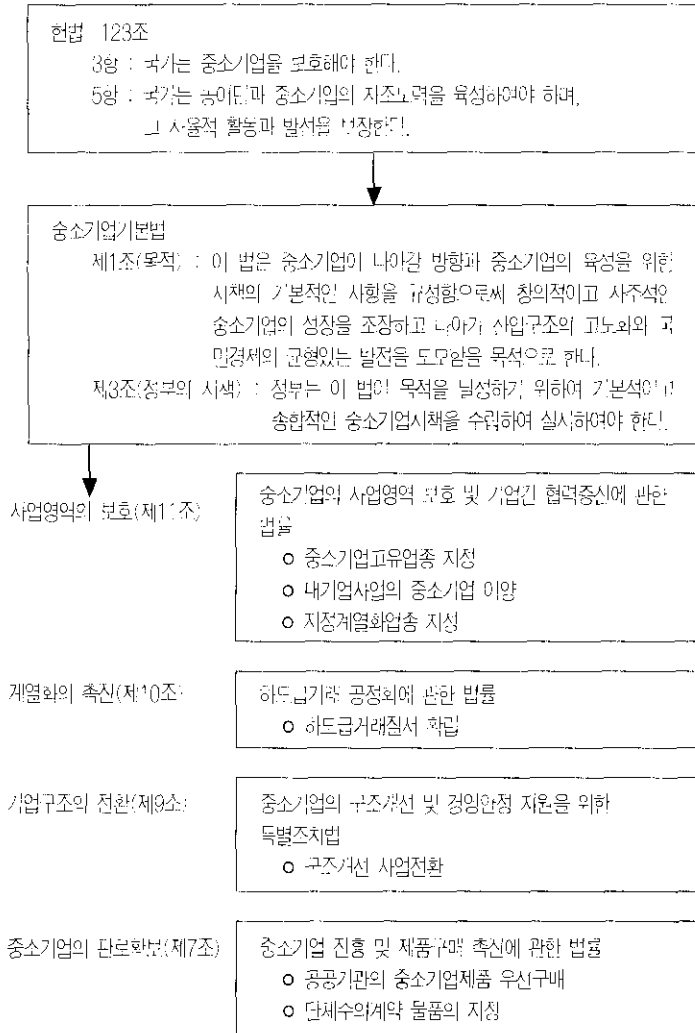
크게 세제지원, 금융지원과 같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지원정책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포함한 그 밖의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정책으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 정책들 중 규제정책의 배경에는 과거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성장이 일어났으므로 중소기업을 차별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경쟁은 대기업의 불공정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하기까지 대기업과의 경쟁을 유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의 지정업종에 대한 사업의 개시 및 확장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차별적 보호와 대기업의 경쟁유보를 모두 포함하는 규제논리에 근거한 가장 강력한 중소기업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중소기업 보호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23조 3항에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중소기업기본법이다. 동법의 목적은(동법 제1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또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창업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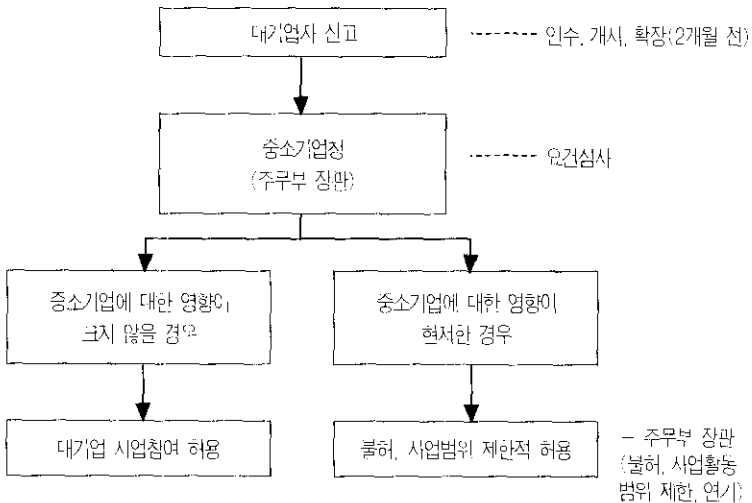
<그림 1>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한 규제의 법률적 근거



진(제5조),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제7조), 중소기업자간 협력(제8조), 기업구조의 전환(제9조), 계열화의 촉진(제10조), 사업영역의 보호(제11조) 등을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제시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고유업종제도의 법률적 근거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3조에 정부는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고유업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 2>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절차



있다. 고유업종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데, 제4조에 대기업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자가 고유업종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2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반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연기시키거나 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 3. 고유업종제도 논리의 문제점

고유업종제도의 전제가 되는 중소기업형 업종의 존재는 산업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기술의 변화, 시장수요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김상권(1995)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알맞은 업종이라도 연구개발 투자나 기업의 이미지와 같은 범위의 경제를 인정하면 중소기업형 업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업종을 중소기업형 업종이나 대기업형 업종으로 사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무의미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만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산업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어떤 업종을 사전적으로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는 없으며 선진외국의 어떤 나라에도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sup>6)</sup> 또 우리 나라에서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식되어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었거나, 대기업의 사업참여로 분쟁을 야기한 간장이나 식용유, 안경테 등이 선진국에서는 국내 대기업과는 비

---

6) 중소기업정책연구회(1991)



교가 안되는 다국적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런 업종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비난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현 제도하에서 고발조치된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고유업종 품목에 대한 외국기업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은 국내 대기업과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기업과 바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업종에 대한 시장 참여의 판단은 기업이 해야 할 일이며, 어떤 업종을 정부가 중소기업형 업종이나 대기업형 업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 보호하는 것은 경제효율성을 해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불균형 성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과거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성장정책이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특혜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재홍(1994)은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시정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특혜나 혹은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보호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뿐이며,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 제고에도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sup>7)</sup> 즉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효율성을 저해하여 중소기업 보호하는 제도는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고유업종제도를 도입한다는 논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초점을 둔 제도로서 과거에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조된 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관계는 건전한 시장관계로 인식되기보

---

7) 김재홍(1994)

다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만이 강조되어 대기업의 자율적인 행위는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고유업종제도는 이러한 인식이 정부정책에도 반영된 것으로 대기업의 시장참여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의해 중소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하에 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시장참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대기업의 시장참여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시장참여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은 모두 대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며, 경쟁의 본질적인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경쟁은 모두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 된다.<sup>8)</sup> 대기업과의 경쟁을 우려하여 사전적으로 중소기업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참여로 경쟁을 촉진하여 얻을 수 있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특정 업종에 대해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만을 위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정책이지 경제정책으로서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만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지정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것이다.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

WTO체제의 도래는 선진외국의 국내시장 개방요구로 더 이상 국

---

8) 김재홍(1994)

내시장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쟁력우위 확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시장개방의 확대로 고유업종제도에 의한 중소기업 보호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개방으로 고유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외국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개방으로 고유업종의 제품이 대형할인매장과 같은 유통시장을 통해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업종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과의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대기업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외국기업은 고유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면서 국내 대기업에게만 시장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국내 대기업만 불리하게 하는 제도로 형평에 어긋난다. 또 고유업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규모가 국내 대기업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대규모 기업들도 있어서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즉 국내시장이 해외시장으로부터 진입장벽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한 고유업종제도의 효과가 없어지고 있다.

고유업종제도의 취지 중 하나가 일정기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업종제도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중소기업의 낮은 기술수준은 대기업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대기업과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의 이익이 감소되게 된다.

고유업종제도는 그 동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

이다. 고유업종제도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논리가 무시되고 중소기업은 보호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형평의 논리에 따라 전개된 경향이 있다. 김주훈(1996)은 중소기업 지원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사회정책적 이념과 분리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정책에서 경쟁과 형평이 함께 존재하면 상호모순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어느 것도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sup>9)</sup>

따라서 중소기업의 보호나 형평을 내세워 중소기업 보호를 지속 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유업종제도를 위시한 경쟁제한적인 중소기업정책은 폐지되어야 하며,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정책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 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4. 법률적 근거의 문제점

고유업종 지정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소비자나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기준 등 사업조정시 중소기업 사업영역 참여를 허용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 제도를 운영하는 통상산업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신규참여나 설비확장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sup>10)</sup> 생산물품의 규격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거나, 극히 일

9) 김주훈(1996)

10) 산업연구원(1992)

부를 생산하고 있더라도 품질이나 수급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술 변화속도가 빨라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투자의 대형화가 요구되는 경우, 수급상에 문제가 있어 국내 수요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생산제품의 전량을 수출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단순한 시설개체 또는 부대시설의 보완과 생산공정상 필수적인 분야로서 최종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원가절감 등을 위해 시설의 개체 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유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품목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내용의 내용을 보면, 1990년의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총 88건이었으나 고유업종 해당품목에 대한 인수, 참여 또는 확장을 금지한 건수가 25건, 사업활동의 범위를 제한하여 허용한 것이 53건, 합의 및 자진철회가 8건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유업종제도는 해외로부터 고유업종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경우 고유업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모르나, 수입자유화의 확대, 관세율의 인하 및 외국인 투자의 자유화 조치 등으로 국내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어서 국내 대기업만 진출을 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제3장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현황

### 1. 고유업종의 지정·해제 현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는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안정된 사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적극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전문적 분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정책취지를 두고 있다.<sup>11)</sup>

고유업종 지정의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더라도 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수급에 문제가 없고 일반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불리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이며, 둘째,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경우 기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고유업종의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형 전문업종으로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품목,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소규모의 자본투자로 생산이 가능한 품목, 소량 다품종 다규격 제품으로 중소기업 전문생산체제가 바람직한 품목이다. 둘째, 중소기업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품목으로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한 품목이거나, 대기업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수준에 손색이 없는 품목, KS규격 또는 국제 공인규격 등을 획득하여 대내외적으로 품질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품목이다. 셋째,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비교적 큰 품목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

---

11) 상공부(1988)

고 있는 분야에 대기업이 경제력을 이용하여 참여할 우려가 있는 품목, 수급처가 주로 대기업인 품목으로 자사그룹의 수요를 독점하거나 중소기업의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하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은 1979년 3월에 '중소기업 특화업종'으로 23개 품목을 지정한 이래 1983년 8월 103개 품목, 1984년 12월에 205개 품목, 1989년 8월에 237개 품목, 1994년 179개 품목, 1995년 134개 품목, 1997년 88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지정은 1979년 이후 1989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9년 17개, 1994년 58개 품목, 1995년 45개 품목, 1997년 47개 품목이 해제됨에 따라 1997년 현재는 88개 품목만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1> 고유업종 지정 현황

지정, 해제일	1979. 3. 6	1983. 8. 11	1984. 12. 31	1989. 8. 30	1994. 9. 1	1995. 1. 1	1997. 1. 1
신규지정업종	23	103	104	49	0	0	0
해제업종	0	0	2	17	58	45	47
선기다비 증감	0	80	102	32	58	45	47
누 계	23	103	205	237	179	134	88

주 : 1979년 3월 6일 지정된 23개 업종은 1983년 8월 11일 재지정됨.

1994년 9월 1일 해제된 58개 업종 중 1개 업종은 부분해제됨.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지정은 기본적으로 품목분류(KSIC 분류 8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지정된 연도에 따라 신규지정된 품목과 해제된 품목의 내용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은 해면양식업과 유창청소업을 제외하면 모두 제조업에 해당하는 품목들이다.

<표 2> 고유업종 지정품목 내용

산업	1983	
	지정품목	해제품목
음식료품 및 담배	미강유, 옥수수기름, 당면, 국수, 두부, 고구미전분, 알파전분 (7)	
섬유, 의복 및 가죽	면이불솜, 세폭직물, 부직포, 휴대용케이스, 섬유장갑, 지대봉사, 타올, 폴리프로필렌 직물포대, 순방모사, 혼방방모사, 가방, 순방모직물, 혼방방모직물, 핸드백 (14)	
목재 및 나무제품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노트, 일기책, 장부책, 연히장, 크라프트지, 습간지, 앨범, 날판지상사, 골판지, 상업인쇄업 (10)	
석유, 화학물, 화학제품 및 고무	유기계면활성제, 조제계면활성제, 황산알루미늄, 양조, 고무장갑, 폴리에틸렌 포대, 물감, 재생타이어,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 플라스틱주방용품, 세탁바구니, 합성수지저관, 폴리스틱용기 및 육모상자, 폴리에틸렌포대,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필름, 이연화채조, 세생플라스틱제품(구두 고무창) (18)	
비금속광물	공업용수경성석회, 공업용수경성석분, 거울, 연마지석, 유리용도가니, 식건재, 생석회, 흙관, 화장품용 유리제품, 소석회, 위생약품용유리제품, 콘크리트전수, 콘크리트과일 (13)	



<표 2> 계속

산업	1983	
	지정품목	해제품목
제1차금속	쇠못,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재 생알루미늄, 아연밀, 연관, 맨 홀, 울타리철선 (6)	
조립금속 및 기타조립기계 및 장비	롤리체인, 상업용저울, 용접기, 고압가스용기, 땀납, 방열기, 밀링기, 수동식밸브, 선반, 도 근업 (10)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및 통신	등안정기, 백열등기구, 마그네 트선, 무성전전원장치, 성류기, 부스공중전화, 시내단사함, 퍼 뢰탄기반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탁상시계, 벽시계, 길이계, 안 경렌즈, 안경테, 손목시계케이 스 (6)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일변선박 (1)	
기타	유아용승용물, 스텝프, 티이프 용리본, 우산, 양산, 성냥, 크 레용, 슬라이드화스니, 봉제완 구, 공휴 (10)	
산업	1984	
	신규지정품목	해제품목
음식료품 및 남배	수산물 냉동냉장, 수산물봉조 림, 장류 (3)	알다전분
섬유, 의복 및 가죽	번거즈, 가타솜, 이불·요, 천 막, 배낭·수통피·안전삼, 양 밀, 작업장갑, 침낭 (9)	
목재 및 나무제품	포프라(할저, 목소폰 등) (1)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카본지, 종이컵, 판지상자, 회 계장, 연습장, 음반 및 녹음테 이프, 바인더 (7)	

<표 2> 계속

산업	1984	
	지정품목	해제품목
석유, 화학물, 화학제품 및 고무	판택재, 폴리스치렌 페이퍼쉬트, 동물약품, 고체가성소다, 탄산가스, 액상고상염화아민, 염화비닐열수축라벨, 폴리염화알루미늄 (8)	구두 고무창
비금속광물	콘크리트블럭 벽돌 기와, 석유 심지 (2)	
제1차금속	아연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	
조립금속 및 기타조립기계 및 장비	일류미늄압력솥, 동력탈곡기, 곡물거르기, 사료절단기, 종곡기, 가정용보일러, 구멍탄용연소기, 구덩타난로, 아이크용접기, 누방용보일러, 캐비, 아테나제조, 전기번드기, 오일크리너, 휴얼탱크, 브레이크슈라이닝, 베이링용강구, 개폐장치 및 보호장치부품, 설망, 금속제식당용품, 증기보일러 (21)	
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및 통신	기중부하개폐기, 전자기기용휴즈, 컷아웃스위치, 플러그 및 잭, 고장구간자동개폐기, 트랜스퍼머, 플러그부착코일, 동력강선, 콘베너, 리코로우저, 헤드폰, 전자메가폰, 어학실습기, 이어폰, 인터폰, 노브, 철심코어, 라드와이어 (1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박용전기방식제, 선박용유, 박용송풍기, 구명장, 선등, 박용전선, 박용사다리, 소형프로펠러, 현창, 박용액아음쇠, 소형조도기 (11)	

<표 2> 계속

산업	1984	
	신규지정품목	해제품목
기타	초저학성용책결상, 학교용책결상, 캐니벌용품, 지우개, 휴판, 빗, 화장용 보침 및 패드제조업, 가류섬, 심크래, 가타남시, 장비, 서거, 기발, 악기, 책상, 축신반, 보편심자, 실험대, 도, 시카도함, 비물관진열대, 닥구대, 마나링, 펜대 (22) 하면양식, 유장총소업	
산업	1989	
	신규지정품목	해제품목
음식료품 및 담배	김치류, 양파도징업, 배합사료, 어육연제품, 직오싱어주미가공, 국산차 (6)	
석유, 의복 및 가죽	자수제품 (1)	
목재 및 나무제품	비어오에너지(알기딘, 톱밥탄) : 1)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시진제판 (1)	
석유, 화학물, 화학제품 및 고무	부동액, 브레이크액, 황화소다, 규산소다, 전기절연유, 가너비 유허유, 발포폴리스치렌의 판 및 판, 이류차안전모, 점착제, 발포폴리스치렌 내포장용성형 제품 (10)	플라스틱주방용품, 폴리염화알루미늄 (2)
비금속광물	연마지 및 포체주, 점토기와, 복층유리, 아스콘, 타일시멘트, 석강예 (6)	공업용수경성석분, 콘크리트 전주, 콘크리트파일 (3)
제1차금속	소방호스 및 소방용금속용구, 스텐레스용접강관, 동모세관, 폴리메틸렌테라프탈산 (4)	연판 (1)

<표 2> 계속

산업		1989	
	신규지정품목	해제품목	
조립금속 및 기타조립기계 및 장비	싹통, 자동소화기, 소화기, 피 근기구, 축압기, 전동체인호이 스트, 저항용접기, 강판전주 (6)	일부다용양력솔, 전기머드기, 휴얼탱크, 브레이크슈라이어, 개폐장치 및 보호장치구름, 금속세탁용품 (6)	
기타선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및 통신	전기보관용조인트 및 부착물, 외재강변기, 의료용물질생성기 (3)온수기, 배선기구 (4)	백열등기구, 기술투개폐기 (2)	
의료, 성밀, 광학기기 및 시계	코창기, 일회용수사기 및 수액 세트, 가스미터기, 봉합침, 자기 치류기, 의료용수술기구류 (6)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탱크크리닝머신 (1)		
가내	모조상식품(의복장식) (1)	커니발용품, 펜대 (2) 해면양식	
산업		1994	
	신규지정품목	해제품목	
음식료품 및 담배		수산물통조림, 김치류, 배합 시료, 국산차, 장류 (5)	
섬유, 의복 및 가죽		부직포, 순방모사, 혼방방모사, 순방모직물, 혼방방모직물, 기 타용, 가죽침구 및 관련제품 (7)	
목재 및 나무제품		바이오에너지 (1)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사신제판 (1)	
석유, 화학물, 화학제품 및 고유		유기계변환성제, 조제계면활 성제, 황산알루미늄, 수성페 인트, 유성페인트, 폴리메틸 렌 및 폴리프로필렌필름(식품 포장용량), (제기)성소다, 역 상고성업화이엔, 부농액, 브 라이더액, 황화소다, 구산소 다 (12)	

<표 2> 계속

산 업	1994	
	신규지정품목	해제품목
비금속광물		홍판, 소석회, 점토기와, 복충유리, 타일시멘트 (5)
제1차금속		소방호스 및 소방용금속용구, 폴리에틸렌피복강관 (2)
조립금속 및 기타조립기계 및 장비		이이크용접기, 싼통, 소화기, 전동체인호이스트, 저항용접기, 강관전주 (6)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및 통신		등안성기, 무정전전원장치, 정류기, 피뢰탄기반, 콘택터, 전기도관용조인트 및 부착물, 화재경보기, 배선기구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손목시계케이스, 가스미터기 (2)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구명정 (1)
기타		슬라이드화스나, 공류, 학교용책결상, 상크대, 서기, 책선반, 보관상사, 도서카드함 (8)
산 업	1995	
	신규지정품목	해제품목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의복 및 가죽		지대봉사, 배낭·수통피·안전삽, 천막, 작업장갑 (4)
목재 및 나무제품		포프라(합제, 목스폰 등) (1)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장부책, 회계상 (2)

<표 2> 계속

산업	1995	
	신규지정품목	해제품목
석유, 화학물, 화학제품 및 고무		양초, 합성수지제관, 폴리에틸렌포대,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필름, 염화비닐수축리벨, 이문자인신코, 발포폴리스티렌 내포장용성형제품 (7)
비금속광물		유리용도기니, 콘크리트벽돌기와, 석유삼지 (3)
제1차금속		만총 (2)
스랍금속 및 기타조립기계 및 장비		방열기, 수동시벨브, 동력탈곡기, 시료철단기, 구멍탄연소기, 구멍탄반로, 배어링용강관 (7)
가전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및 통신		부스공송전화기, 시내(시)간, 동복강선, 노브 (4)
의료, 장난, 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운송상비		박용전기방식제, 박용송풍기, 전능, 현창 (4)
가제		스택프, 성냥, 철저리성용적건상, 옥판, 기눈셋, 기방, 악기, 책장, 실랍단, 박울판진열대, 비 (11) 유창청소업
산업	1997	
	신규지정품목	해제품목
음식료품 및 담배		미강유 (1)
섬유, 의복 및 가죽		현대용케이스, 폴리프로필렌직물포방, 기방, 핸드백, 이불·오 (5)
목재 및 나무제품		

<표 2> 계속

산업	1997	
	신규지정품목	해제품목
종이, 종이제품, 인쇄 및 출판		연하상, 상업인쇄업, 카본지, 종이컵, 판지상사, 인쇄장, 카인더 (7)
석유, 화합물, 화학제품 및 고무		물감, 세탁비누, 장식제, 심상 단사칼슘 (4)
비교속광물		
제1차금속		울타리철선 (1)
조립금속 및 기타조립기계 및 장비		볼라체인, 용접기, 맨날, 딥링기, 선반, 성미기, 기정용 보일러, 난방용보일러, 버너, 철망, 중기도일러 (11)
기타전자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및 통신		다크네트신, 전자기기용 휴즈 리크로우저, 헤드폰, 전자메, 기폰, 이어폰, 인터폰 (7)
의료, 성밀, 광학기기 및 시계		의료용수술기구 (1)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일변선식, 박용사다리, 박용관 이음식, 소형조타기, 탱크리닝머신 (5)
기타		타이프용리본, 화장용분침 및 패드, 기타 낚시장비, 탁구대, 마네킹 (5)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을 산업별로<sup>12)</sup> 살펴보면 1983년의 경우 석유제품·화합물·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이 1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섬유제품·의복·가죽 제조업이 13.6%, 비금속광물이 1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4년에 지정업

12) 산업분류체계가 1981년 이후 달라졌기 때문에 1991년 이전 분류와 비교하여 조정하였음.

종이 추가됨에 따라 조립금속 및 기타조립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15.1%로 가장 많은 품목지정이 되었고, 1994년 고유업종의 일부 해제 후인 1995년의 경우 14.2%, 1997년 1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다.

<표 3> 산업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추이

	1983	구성비	1984	구성비	1989	구성비	1994	구성비	1995	구성비	1997	구성비
음식료품 및 난 배	7	6.6	9	4.4	15	6.3	10	5.6	10	7.5	9	10.3
섬유제품 의복, 가죽	14	13.6	23	11.2	24	10.1	17	9.5	13	9.7	8	9.2
목재 및 나무 제품/가구 제외	9	9.0	1	0.5	2	0.8	1	0.6	0	0.0	0	0.0
종이, 종이제품 출판, 인쇄	10	9.7	17	8.3	18	7.6	17	9.5	15	11.2	8	9.2
석유제품, 화학 물, 화학, 고무, 플라스틱	18	17.5	25	12.2	35	13.9	21	11.7	14	10.4	10	11.5
비금속광물 제 차금속	13	12.6	15	7.3	16	7.6	13	7.3	10	7.5	10	11.5
금속	6	5.8	6	2.9	10	4.2	8	4.5	7	5.2	6	6.9
조립기계 및 장비	10	9.7	31	15.1	32	13.5	26	14.5	19	14.2	8	9.2
가전기기 및 전기전자 기, 통신	8	7.8	26	12.7	26	11.8	20	11.2	16	11.9	9	10.3
의료, 정밀, 광 학기기 및 기계	6	5.8	6	2.9	12	5.1	10	5.6	6	4.5	5	5.7
자동차, 트랙터 기, 기타, 운송장비	1	1.0	12	5.9	13	5.5	12	6.7	12	9.0	7	8.0
기타	10	9.7	32	15.6	31	13.1	23	12.8	12	9.0	7	8.0
수산물(면양식) 양돈·양계·양 우·양소·양 염·양모		0.0		0.5	0	0.0	0	0.0	0	0.0	0	0.0
합 계	103	100.0	205	100.0	237	100.0	179	100.0	134	100.0	87	100.0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고유업종의 해제는 198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89년에 해제된 품목은 17개 품목이다. 또 1989년부터 고유업종의 해제예시제를 도입하였는데 58개 업종을 1992년에 해제하도록 예시하였다. 그러나 1992년에 해제하기로 예시된 품목은 실제로는 1994년에 해제되었다. 1994년에 58개 업종이 해제되었고 1995년에 47개 품목이 해제되었으며, 1997년까지 해제된 품목은 169개 품목이다. 해제품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조립금속 및 기타조립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30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석유제품·화합물·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업과 기타 업종이 26개 품목이 해제되었으며,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및 통신 제조업이 21개 품목의 순이다.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 많았던 업종의 품목이 많이 해제되었다.

<표 4> 해제품목의 업종별 현황

	1984	1989	1994	1995	1997	합계
음식료품 및 담배	1		5		1	7
섬유제품, 의복, 가죽			7	4	5	1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	1		2
종이, 종이제품, 출판, 인쇄			1	2	7	10
석유제품, 화합물, 화학, 고무, 플라스틱	1	2	12	7	4	26
비금속광물		3	5	3		11
제1차농축		1	2	1	1	5
조립금속 및 기타조립기계 및 장비		6	6	7	11	30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통신		2	8	4	7	21
의류, 장발, 광학기기 및 시계			2		1	3
자동차, 트럭, 기타자동차			1	4	5	10
기타		2	8	11	5	26
수산(해면양식)		1				1
유상청소업				1		1
합계	2	17	56	45	47	169

고유업종이 지정된 이래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의 시장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출하액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변화와 고유업종의 사업체수 변화추이를 통해 시장구조를 파악하려고 한다.

## 2. 고유업종의 시장구조

고유업종의 출하액 규모는 1989년 약 23조 6,793억 원으로 제조업의 총출하액 약 146조 2,602억 원의 16.19%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고유업종 사업체수는 1989년의 경우 19,156개 업체로 제조업 전체 사업체수 65,684개 업체의 29.2%를 나타냈다. 고유업종의 사업체수 비중이 출하액 비중의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경우 고유업종의 총출하액이 약 33조 9,741억 원으로 제조업의 총출하액 358조 8,877억 원의 9.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는 제조업의 총사업체수 96,202개의 11.7% 수준인 11,249개 업체로 사업체수의 비중이 출하액 비중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전체 출하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에 57.7%에서 1991년 55.5%로 나타났으며, 고유업종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34.26%에서 1991년 47.3%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42.3%에서 1991년 44.5%로 증가하였고, 고유업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65.8%였으나 1991년에는 52.7%로 감소하였다.

제조업 중 대기업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으나 고유업종 출하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고유업종의 대기업 생산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제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 출하액 비중

(단위 : 백만 원)

	출 하 액			비 중	
	제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83	60,022,888	39,215,065	20,807,823	65.3	34.7
1984	70,369,457	45,996,817	24,372,640	65.4	34.6
1988	133,080,647	80,791,660	52,289,187	60.7	39.3
1989	146,260,242	84,390,491	61,869,751	57.7	42.3
1990	175,234,250	100,600,165	74,634,085	57.4	42.6
1991	202,528,604	112,497,271	90,031,333	55.5	44.5
1992	224,599,267	122,066,944	102,532,323	54.3	45.7
1993	254,398,952	133,281,664	121,117,088	52.4	47.6
1994	296,166,543	154,290,603	141,875,940	52.1	47.9
1995	358,837,677	191,654,272	167,233,405	53.4	46.6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표 6>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출하액 비중

(단위 : 백만 원)

	출 하 액			비 중	
	고유업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83					
1984	8,903,910	4,399,418	4,504,492	49.4	50.6
1988	16,997,536	7,580,178	9,417,358	44.6	55.4
1989	23,679,344	8,098,858	15,580,486	34.2	65.8
1990	26,228,042	9,933,374	16,294,668	37.9	62.1
1991	35,672,831	16,866,865	18,805,966	47.3	52.7
1992	41,104,465				
1993	40,111,459				
1994	33,858,888				
1995	33,974,086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주 : 고유업종 지정은 품목기준이므로 출하액도 품목기준으로 추계한 것임.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출하액 규모는 1984년에 24조 3,726억 원이며, 고유업종 중소기업 총출하액 규모는 4조 5,044억 원으로 제조업부문 중소기업 출하액의 18.5%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유업종이 가장 많이 지정되었던 1989년의 경우 고유업종 중소기업의 출하액 규모는 제조업부문 중소기업 출하액 61조 8,698억 원의 25.2%인 15조 5,804억 원으로 나타났다. 1991년의 경우 고유업종 중소기업의 출하액 18조 8,059억 원은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20.9%로 나타났다.

<표 7> 제조업과 고유업종의 출하액 비중

	고유업종 /제조업	제조업 출하액 비중		고유업종 출하액 비중		고유업종/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고유대기업/ 제조대기업	고유중소기업/ 제조중소기업
1983		65.3	34.7				
1984	12.65	65.4	34.6	49.4	50.6	0.10	18.5
1988	12.77	60.7	39.3	44.6	55.4	0.09	18.0
1989	16.19	57.7	42.3	34.2	65.8	0.10	25.2
1990	14.97	57.4	42.6	37.9	62.1	0.10	21.8
1991	17.61	55.5	44.5	47.3	52.7	0.15	20.9
1992	18.30	54.3	45.7				
1993	15.77	52.4	47.6				
1994	11.43	52.1	47.9				
1995	9.47	53.4	46.6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제조업 전체 사업체 중 대기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1989년 1.88%에서 1.53%로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1989년 98.1%에서 98.5%로 증가하였다. 고유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1989년 2.54%에서 1991년 2.78%로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1989년 97.5%에서 1991년 97.2%로 감소하였다.

<표 8> 제조업의 사업체수 및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 비중

(단위 : 개, %)

	사업체수			사업체수 비중	
	제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83	39,243	1,030	38,213	2.62	97.4
1984	41,549	1,059	40,490	2.55	97.5
1988	59,928	1,318	58,610	2.20	97.8
1989	65,684	1,238	64,446	1.86	98.1
1990	68,872	1,193	67,679	1.73	98.3
1991	72,213	1,108	71,105	1.53	98.5
1992	74,679	1,022	73,657	1.37	98.6
1993	88,864	951	87,913	1.07	98.9
1994	91,372	925	90,447	1.01	99.0
1995	96,202	917	95,285	0.95	99.0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표 9> 고유업종의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체수 비중

(단위 : 개, %)

	사업체수			사업체수 비중	
	고유업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84	12,570	431	12,139	3.43	96.6
1988	16,327	567	15,760	3.47	96.5
1989	19,156	487	18,669	2.54	97.5
1990	18,382	499	18,383	2.64	97.4
1991	19,544	543	19,001	2.78	97.2
1992	18,171				
1993	19,244				
1994	15,431				
1995	11,249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전체 제조업에서 고유업종의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9.16%였으나 1991년에는 27%에서 1995년에는 11.6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 대기업 중 고유업종 대기업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9.3%에서 49.0%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 중 고유업종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0%에서 26.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제조업 전체 사업체수 및 고유업종 사업체수 비중

	고유업종/ 제조업	사업체수 비중(제조업)		사업체수 비중(고유업종)		고유대기업/ 제조대기업	고유중소기업/ 제조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983		2.6	97.4				
1984	30.25	2.5	97.5	3.4	96.6	40.7	30.0
1988	27.24	2.2	97.8	3.5	96.5	43.0	26.9
1989	29.16	1.9	98.1	2.5	97.5	39.3	29.0
1990	27.42	1.7	98.3	2.6	97.4	41.8	27.2
1991	27.06	1.5	98.5	2.8	97.2	49.0	26.7
1992	24.33	1.4	98.6				
1993	21.66	1.1	98.9				
1994	16.89	1.0	99.0				
1995	11.69	1.0	99.0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제조업 전체 품목을 사업체수로 나눈 품목별 평균 참여사업체수를 살펴보면, 고유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평균 참여업체수가 1989년의 경우 중소기업 79.1개, 대기업 2.1개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의 평균 업종별 중소기업체수는 22.9개, 대기업 0.5개로 나타났다. 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평균 중소기업체수가 3.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1년의 경우는 고유업종에 해당하는 평균 참여업체수가 중소기업 80.5개, 대기업 2.3개이며, 제조업 전체 평균 중소기업체수는 20.1개, 대기업 0.3개로 역시 고유업종의 경우 평균 중소기업체

수가 4배나 많다. 이것은 고유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체당 평균출하액 규모는 1989년 고유업종의 평균출하액 12억 9,000만 원으로 제조업의 22억 2,600만 원의 58% 정도이며, 1991년의 경우 고유업종 전체의 평균출하액은 18억 2,200만 원으로 제조업 전체 평균출하액 28억 400만 원의 65% 정도 수준이다. 1995년의 경우 고유업종의 평균출하액은 30억 2,000만 원으로 제조업 전체 출하액 37억 3,000만 원의 80%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평균출하액을 보면, 1991년의 경우 고유업종 중소기업의 평균출하액은 9억 9,000만 원으로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 평균출하액 12억 6,600만 원의 78% 수준이다.

고유업종의 경우 품목당 평균 사업체수는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체수보다 2-4배 많지만, 1사당 평균출하액은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보다 낮아서 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사업체 1사당 평균출하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1984-1991년 사이에 7.4%이며, 고유업종의 경우 14.2%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고유업종 대기업의 평균출하액 증가율이 17.4%로 고유업종내 대기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출하액 비중은 제조업 전체의 경우 대기업은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증가한 반면, 고유업종의 경우 대기업은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품목당 평균 참여사업체수가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고유업종의 중소기업이 1991년의 경우 4배나 많아서 고유업종내 중소기업들의 신규진출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체 1사당 평균출하액 규모를 보면 고유업종 중소기업의 평균출하액이 제조업 전체 중소기업 출하액의 78%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고유업종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제조업 평균출하액과 고유업종의 평균출하액 비교

(단위 : 백만 원)

	제조업 평균출하액			중소기업 고유업종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1983	1,529.5	38,072.9	544.5			
1984	1,693.6	43,434.2	601.9	705.8	10,255.6	365.0
1988	2,220.7	61,298.7	892.2	1,045.4	13,368.9	492.0
1989	2,226.7	68,166.8	960.0	1,290.6	17,014.4	871.8
1990	2,544.3	84,325.4	1,102.8	1,388.2	19,669.4	889.9
1991	2,804.6	131,531.8	1,266.2	1,822.6	31,351.1	990.1
1992	3,007.5	119,439.3	1,392.0	2,262.1		
1993	2,862.8	140,149.2	1,377.7	2,084.4		
1994	3,241.3	186,809.7	1,568.6	2,194.2		
1995	3,730.6	209,001.4	1,755.1	3,020.2		
1984-1991	7.4	12.8	11.2	14.5	17.4	15.3
1992-1995	7.4			10.1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고유업종 품목에 대한 시장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사당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출하액 비중 등을 제조업 평균과 고유업종 평균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83년부터 1995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품목단위(8단위)로 지정되어 있으나, 1992년 이후에는 규모별 품목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는 1991년까지만 가능하다.<sup>13)</sup> 따라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 품목별 비교대상 범위는 1995년까지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온 254개 업종(해체업종 포함)을

13) 1992년부터 1995년 자료는 품목별 총액 데이터만 수록되어 있고, 중소기업 대기업 자료가 없어서 세세분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품목의 분석은 품목 데이터와 세세분류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만 1995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다.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1991년에 산업분류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자료의 변동이 심한 것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 (1) 출하액 규모

다음으로 제조업의 총출하액을 제조업 총품목수로 나눈 품목당 평균출하액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각 품목의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고유업종의 상대적인 시장규모의 크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제조업 품목당 평균출하액

(단위 : 억 원)

연 도	제조업 출하액	품목수(8단위)	품목당 평균출하액
1989	1,462,602	3,089	473
1990	1,752,342	3,233	542
1991	2,025,286	3,537	573
1992	2,245,993	3,242	693
1993	2,543,990		785
1994	2,931,685	3,455	857
1995	3,566,877	3,488	1,029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주 : 1993년 품목수는 1992년 품목수로 적용한 것임.

1989년의 경우 제조업의 품목당 평균출하액이 약 473억 원 정도로 고유업종 지정품목 중 출하액 규모가 473억 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236개 품목 중 94개 품목이다. 1991년의 경우 제조업의 품목당 평균출하액은 573억 원으로 고유업종 중 출하액 규모가 573억 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105개 품목으로 1989년에 비해 11개 품목이 증가했다. 이것은 1989년 236개의 고유업종 지정품목의 40%가 제조업 품

목당 평균출하액 규모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1년의 44%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의 경우 제조업 품목당 평균출하액은 857억 원으로 고유업종 출하액이 857억 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63개 업종이며, 1995년의 경우 50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179개 고유업종의 35%에 해당하며, 1995년 134개 고유업종의 37%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1989년에서 1991년까지 고유업종의 44%가 품목당 제조업의 평균출하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품목이 해제된 1994년에는 1991년에 비해 제조업의 품목당 평균출하액을 상회하는 고유업종 품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1991년의 경우 100억 원 미만의 품목은 34개 품목으로 고유업종 지정품목의 14% 수준이다. 1994년의 경우 22개 품목이 출하액 규모가 100억 원 미만이며, 1995년의 경우 15개 품목이 100억 원 미만인 품목이다. 고유업종 전체로 보면 1994년 12%, 1995년 11%에 해당한다. 고유업종 중 출하액 규모가 아주 적은 품목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평균출하액 비교

제조업 전체 출하액을 품목별 사업체수의 합계로 나눈 제조업 전체 평균출하액과 고유업종 품목의 업체당 평균출하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의 경우 제조업 평균출하액 22억 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32개 품목이다(표 참고). 1991년의 경우 제조업 평균출하액 28억 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23개 품목이다. 특히 스텐레스용접강판과 세탁비누, 일반선박, 배합사료, 동복강선은 1991년에 1사당 평균 매출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품목으로 시장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이다.

1989년 제조업 평균출하액 상회 품목	1991년 제조업 평균출하액 상회 품목
스텐레스용접강관, 농모세관, 고압가스용기, 유기계면활성제, 고체기성신지, 유성페인트, 식판, 베이킹용 강구, 방열기, 비닐전선, 일러스트, 마그네트선, 트랜스포머, 전자기기를 유즈, 플러그 및 잭, 농복강선, 순방크식물, 순방노사, 훈방방모사, 슬라이드화식나, 약기, 골판지, 세탁비누,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필름, 위생약품용 유리, 화장용품 유리, 옥수수기름, 배합사료, 알과 노정면, 석유심지, 증기보일러, 수산물냉동냉장	폴리에틸렌배관강관, 스텐레스용접강관, 농모세관, 강관선주, 펌프, 고체기성신지, 유성페인트, 식판, 일반선박, 어획실습기, 마그네트선, 트랜스포머, 동복강선, 훈방방모직물, 약기, 세탁비누, 위생약품용 유리, 미강유, 석유전분, 배합사료, 증기보일러, 배터, 가성용 보일러

1994년의 경우 제조업 전체 1사당 평균출하액이 32억 원으로 고유업종 1사당 평균출하액이 32억 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25개 품목이며 1사당 평균출하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스텐레스용접강관, 일반선박, 마그네트선 등이다. 1995년의 경우는 제조업 전체 1사당 평균출하액이 37억 원으로 고유업종 중 37억 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18개 품목이며, 1사당 평균출하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품목은 일반선박, 증기보일러 등이다.

1994년 제조업 평균출하액 상회 품목	1995년 제조업 평균출하액 상회 품목
스텐레스용접강관, 주물 및 다이캐스팅, 아연알, 농모세관, 맨홀, 곡물건조기, 베이킹용강구, 양접기, 일반선박, 어획실습기, 인테나, 마그네트선, 트랜스포머, 컷아웃스위치, 배낭·수통피·인전선, 골판지, 종이컵, 세탁비누, 연마지 및 도, 위생약품용 유리병, 옥수수기름, 동물약품, 석유심지, 난방용 보일러, 가성용 보일러	동모세관, 맨날, 침강탄산칼슘, 곡물건조기, 일반선박, 어획실습기, 인테나, 마그네트선, 트랜스포머, 골판지, 세탁비누, 위생약품용 유리, 미강유, 옥수수기름, 증기보일러, 난방용 보일러, 배터, 가성용 보일러

### (3) 출하액 비중

1989년 제조업 총출하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품목분류 기준으로 42.3%, 1991년 44.5%로 나타났다. 고유업종 품목의 중소기업 비중이 1989년에 42.3% 이하인 품목은 2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중 출하액 규모가 1,000억 원을 넘는 품목은 고체가성소다, 박용전선, 일반선박, 어학실습기, 트랜스포머, 동복강선, 혼방방모사, 약기, 세탁비누, 타일시멘트, 증기보일러 등으로 대기업의 출하액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1991년 44.5% 이하인 품목은 20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중 출하액 규모가 1,000억 원을 넘는 품목은 동모세관, 강관전주, 고체가성소다, 일반선박, 어학실습기, 동복강선, 혼방방모직물, 책장, 약기, 습강지, 위생약품용 유리, 증기보일러, 버너 등으로 대기업의 출하액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출하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아서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이다.

고유업종의 중소기업 비중 42.3% 이하 (1989년 기준)	고유업종의 중소기업 비중 44.5% 이하 (1991년 기준)
고체가성소다, 선반, 브레이크슈라이닝, 박용전선, 일반선박, 어학실습기, 헤드폰, 트랜스포머, 전자기기용 휴즈, 동복강선, 무청전진원장치, 박열진구, 순방모직물, 혼방방모직물, 혼방방모사, 슬라이드화선, 약기, 세탁비누, 타일시멘트, 석유심자, 증기보일러	동모세관, 강관전주, 고체가성소다, 베이강강선, 일반선박, 어학실습기, 마그네트선, 동복강선, 순방모직물, 혼방방모직물, 책장, 흑판, 슬라이드화선, 약기, 습강지, 위생약품용 유리, 증기보일러, 버너, 구멍난반로, 비오에너저

다음은 중소기업의 비중변화를 통해 시장구조를 파악하기로 한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중소기업 비중이 감소한 품목은 유기계면활성제, 밀링기, 브레이크슈라이닝(1990), 박용사다리, 전자메가폰(1990),

안테나, 헤드폰(1990), 마그네트선, 무정전전원장치, 순방모직물, 혼방방모직물, 싱크대, 습강지, 세탁비누, 위생약품용 유리, 미강유, 버너, 구멍탄난로, 바이오에너지, 컷아웃스위치, 구멍정, 박용전기방식제, 안경렌즈, 피난기구, 탁상시계, 동모세관, 오일클리너 등으로 27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 동모세관, 오일클리너, 안테나, 마그네트선, 싱크대, 흑판, 습강지, 세탁비누, 위생약품용 유리, 증기보일러, 버너, 구멍탄난로, 바이오에너지 등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1991년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중소기업 비중보다 낮아서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첫째, 출하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아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품목은 1991년 기준으로 동모세관, 강관전주, 고체가성소다, 베어링용강구, 일반선박, 어학실습기, 마그네트선, 동북강선, 순방모직물, 습강지, 위생약품용 유리, 증기보일러, 버너 등이다. 둘째, 해당업종의 출하액 규모 또는 1사당 평균출하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중소기업 비중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대기업 구조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품목은 안테나, 마그네트선, 싱크대, 위생약품용 유리, 동모세관, 피난기구이다. 셋째, 중소기업 비중이 낮고 1사당 평균출하액 규모가 대기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시장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품목은 베어링용강구, 일반선박, 안테나, 마그네트선, 동북강선, 순방모직물, 혼방방모직물, 싱크대, 습강지, 위생약품용 유리, 증기보일러, 버너 등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정업종수를 늘려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당수의 품목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사업체수는 증가한 반면 대기업수는 고정되거나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유업종내 대기업의 성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유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신규진출은 촉진했으나 중소기업의 보호보다는 이미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4장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평가 : 사례연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업종 지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유업종이 지정되기 이전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은 고유업종 사업을 제한적이지만 계속할 수 있어서 신규 진출을 원하는 대기업에 비해 형평에 어긋난다. 고유업종제도는 업종에 대한 진입제한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었고, 시장개방으로 인해 해외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정책 자체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고 결국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도 저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이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하에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고유업종제도의 문제점을 자료와 사례조사를 토대로 지적하고자 한다.

### 1. 경쟁제한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대기업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고유업종제도는 지정 당시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은 고유

업종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진출을 원하는 대기업은 고유업종제도가 진입장벽이 되는 반면, 이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고유업종제도가 대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을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고유업종 지정 당시 대기업의 출하액 비중이 높은 품목은 중소기업과의 차이가 계속 유지·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기존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계속 지정되어 온 236개 품목 중 지정 당시 대기업의 출하액 비중이 1984년에 70%를 넘는 품목은 11개 품목이다. 1991년의 경우 대기업의 출하액 비중이 70%를 넘는 품목은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 중 1991년까지 계속 대기업의 출하액 비중이 70%를 넘는 품목은 4개 품목으로 일반선박, 베아링용강구, 동북강선, 약기 등이다. 이들 품목은 고유업종 지정으로 중소기업이 보호되었다기보다는 신규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됨으로써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의 이익이 보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평균출하액과 중소기업의 출하액 비교에서도 발견된다.



<표 13> 대기업 출하액 비중 70% 이상 고유업종 품목

(단위 : 백만 원)

고유업종	1984년			1991년		
	전체 출하액	대기업 비중	대기업체수	전체 출하액	대기업 비중	대기업체수
선반	8,783	0.91	4	168,643	0.58	6
일비산막	1,967,811	0.97	19	3,078,690	0.96	19
트렌스포머	99,035	0.74	8	270,760	0.53	1
플리그잭	33,534	0.83	1	88,320	0.68	1
베어링용강구	60,220	0.77	3	244,307	0.72	11
농복김선	526,330	0.81	15	460,719	0.76	7
채장	76,328	0.70	12	100,166	0.58	7
악기	102,802	0.96	7	437,586	0.86	5
고체가열소다	55,446	0.71	12	143,049	0.56	4
김관점주(1989)				851,627	0.70	14
폴리에틸렌교목 김관(1989)				931,591	0.78	6
훈방방크지물	47,868	0.97	10	100,097	0.64	5

주: 플리그잭과 선반은 1990년 자료임.

중소기업 비중이 100%인 고유업종과 1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고유업종의 평균출하액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100%인 115개 고유업종과 대기업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113개 업종의 평균출하액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고유업종의 전체 평균출하액은 약 25억 원으로 중소기업이 100%인 평균출하액 5억 원에 비해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은 신규참여가 제한됨으로써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보호보다는 기존의 대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의 평균출하액 규모는 11억 5천7백만 원(대기업이 참여한 고유업종 중소기업)과 5억 9천5백만 원(중소기업 비중

이 100%인 고유업종 중소기업)으로 1.9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고유업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품목은 소규모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고유업종 지정 당시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의 경우 고유업종제도가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대기업 참여 고유업종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비교

(단위 : 백만 원)

	대기업 참여 고유업종 평균출액			중소기업 100%인 고유업종 평균출액	
	선체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1984	1,030.1 (7,712)	10,256.6 (425)	492.0 (7,287)	167.0	4,643
1989	1,527.6 (14,253)	15,911.3 (509)	994.9 (13,744)	395.0	4,814
1990	1,784.7 (13,145)	19,520.7 (520)	1,054.3 (12,625)	539.3	5,974
1991	2,452.3 (12,542)	31,012.4 (64)	1,157.4 (11,998)	596.3	5,346

주: ( )는 사업체수임.

고유업종제도가 기존의 대기업의 이익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사실은 제조업 전체의 대기업과 고유업종에 참여하는 대기업의 출하액 신장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유업종에 속한 업종의 1사당 평균 매출액 신장률(1984-1991, <표 11> 참고)이 제조업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고유업종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의 1사당 평균매출액 신장률은 17.4%로 제조업 전체의 대기업의 1사당 평균매출액 신장률 1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고유업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진입장벽 때문에 신규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에는 고유업종제도가 불리한 제도인 반면, 이미 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있어서는 동 제도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경쟁상대인 다른 대기업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시장개방으로 외국기업의 시장참여가 자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대기업만 경쟁에 제한을 두는 것은 더 이상 중소기업을 경쟁에서 보호할 수도 없으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고유업종제도는 단체수의계약이나 지정계열화 품목과 중복 지정됨으로써 중소기업간 경쟁도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영역 확보를 위한 사업조정법에 의해 지정된 업종이 단체수의 계약제도, 중소기업계열화제도 등과 중복되어 실시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상호간의 관계에서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 지방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991년 말 70개 고유업종이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업종으로 중복 지정되었으며, 1996년 19개 품목이 중복 지정되어 이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수의계약 품목의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경쟁도 저해하고 있다. 기업들이 물품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음에 따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복되는 제도로는 중소기업계열화제도가 있다. 중소기업계열화제도는 계열화업종 및 품목을 지정하여 이들 업종 및 품목에 속하는 모기업 및 수급기업이 공동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부품조달과 수요확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0년 말 42개 업종 1,160개 품목이 계열화 지정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현재, 36개 업종 1,053개 품목이 지정계열화 품목으로 지정되

<표 15> 단체수익계약 품목과 고유업종 품목 중복지정 현황

단체수익계약 품목	최초지정연도	고유업종	최초지정연도	
			시정	5·제
상감(편직예 한함)	1982	상감번소입	1984.12	
사무용 서식인쇄물	1978	상업인쇄업	1979.3	1997.1.1
서지인쇄물				
홍보용인쇄물				
사성송사본(통행권, 주차권 포함)				
경인쇄물				
스프린트인쇄물				
기방	1982 (1983, 1994 제외)	기방	1979.3	1997.1.1
면류(당면, 냉면, 쌀, 국수, 숙면)	1988	국수, 당면	1983.8	
송이저문구(미인더)	1979	미인더	1984.12	1997.1.1
사무용문구(컴퓨터용리본)	1988	타이프용리본	1979.3	1997.1.1
파일러 및 구성품(베너 포함)	1985	중기보일러	1984.12	1997.1.1
		단방향보일러	1984.12	1997.1.1
		비너	1984.12	1997.1.1
이스핀트르그라브	1986	이스콘	1989.8	
결시계	1994	벽시계	1979.3	
공판자상자	1985	공판자상자	1979.3	
공판지상사(판지상사 포함)	1985	판지상사	1984.12	1997.1.1
우산(양산 포함)	1984	우산, 양산	1979.3	
승신토닉	1986	어육연제품	1989.8	
실용유지(비강유에 한함)	1988	비강유	1983.8	1997.1.1
선박(500톤 이상 및 특수선박 제외)	1983	일반선박(500톤 이하에 한함)	1983.8	1998.1.1
철망	1978	철망	1984.12	1997.1.1
이불(일록쿠비단 포함) 및 요(카 비 포함)	1978	이불, 요	1984.12	1998.1.1
타올	1978	타올	1983.8	
P.P포대	1976	P.P자물포대	1979.3	1997.1.1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어 있다. 계열화 지정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중 안테나, 화장품유리병 등 일부 품목은 고유업종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원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지정계열화 품목의 경우도 고유업종과 같이 지정계열화 품목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그 시설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을 업종별 해당기관을 통해 계열화촉진협의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 보호라는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도가 고유업종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지정계열화제도 등과 중복으로 운영되는 품목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제도는 대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경제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제한적 제도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 2. 경쟁력

고유업종제도의 경쟁제한요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고유업종 품목은 경쟁압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래 고유업종 지정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준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이 일정한 성장기간을 통해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업종에 대한 사례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대한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안경테의 경우 1983년에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안경테는 디자인이 상품의 가치를 좌우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안경테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있

는 업체가 거의 없으며, 상당수의 업체들은 디자인실조차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경테는 생활필수품을 넘어서 패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품목이다. 또 소방기구의 경우도 1992년 고유업종의 기술평가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sup>14)</sup> 사례조사에 의하면 외국제품과 가격수준이 비슷한 대신 기능성과 디자인에서 국내제품이 외국제품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고유업종 지정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사례 : 안경테

안경테는 1983년에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1997년 현재까지 고유업종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1984년 출하액 규모는 230억 원 정도였으나 1996년 출하액 규모는 2천3백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사업체수는 1984년의 경우 4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으나 1996년의 경우 500여 개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사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종업원 10인 이하,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의 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자동화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품목이다.

안경테의 경우 생산의 3/4을 미국, EU,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개방화로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 안경테의 경우 개방 전에는 관세율이 30%였기 때문에 수입 안경테의 가격이 높아 국산 안경테가 가격경쟁력이 있었다. 1995년 개방화 이후 관세율이 기본관세율 8%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 안경테와 국산 안경테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진 상태다.

14) 산업연구원(1992)

1996년말 수입 안경테의 시장점유율이 1995년 25%에서 29%로 증가 추세에 있다. 수입 안경테의 대부분은 일본, 프랑스, 이태리에서 수입되는 제품으로 아직은 동남아나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제품의 시장점유는 미미한 편이다. 국산 안경테와 동남아나 중국산 안경테의 경우 국산대비 가격은 40 정도이며 품질은 60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안경테의 경쟁력은 디자인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안경테는 패션감각과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디자인이 경쟁력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안경테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 디자인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도 독자적인 디자인개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경테의 경우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필수품에서 패션감각 상품으로 변화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유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많은 투자가 필요한 디자인개발 등을 중소기업이 하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을 잃어가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어느 업종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거나 규모의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만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전문화하도록 하기보다는 경쟁에 늦게 노출되도록 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 • 사례 : 싱크대

싱크대는 1984년에 고유업종으로 일부 지정되었으며, 1989년에 일부 품목이 추가지정되었다. 1984년 출하액 규모는 293억 원이었으나 1989년에는 1,488억 원이 되었으며, 1995년에는 5,02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참여사업체수는 1989년에 175개에서 1995년에 477개 사업체로 2.7배 증가하였다.

대기업 중소기업 비중은 1996년의 경우 2개의 대기업이 전체 시

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며, 100여 개 사업체는 연간 출하액 규모가 10억 원 정도 수준이다.

최근에는 싱크대에 식기세척기나 가스오븐렌지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키친 경향으로 가고 있어 관련업체의 제품개발과 관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의 주거문화는 주방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관계로 시스템키친 개념에 맞는 제품개발이 선진국보다 뒤늦게 이루어져 시스템키친에 들어가는 제품의 대부분이 수입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주방이 주된 생활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싱크대에 들어가는 악세사리나 부품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외국의 경우 싱크대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악세사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이지만, 이들 업체들은 제품을 전문화하고 디자인 개발에 주력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주방에 들어가는 부품에 패션기능이 강조되어 색상과 디자인, 기능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반면 국내업체들은 제품의 전문화가 미비한 수준이며, 디자인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주거문화의 변화에 대한 수요는 커진 반면, 높아진 수요수준에 맞는 제품개발이 어려워 세부적인 부품은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싱크대는 고유업종이 1994년에 해제되었으나 단채수의계약 품목이어서 1996년에도 주택공사에 1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1999년까지 납품하도록 계약된 상태다.

- 사례 : 소화기(소화기, 소방호스 및 소방용구, 화재경보기, 자동 소화기, 피난기구)

소화기에 관련된 고유업종 지정품목은 소화기, 소방호스 및 소방용구, 자동소화기, 피난기구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1989년에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1994년에 소화기, 소방호스·소방용



구, 화재경보기는 고유업종에서 해제되어 1997년 현재 자동소화기와 피난기구만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피난기구의 1989년 출하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며, 화재경보기가 689억 원, 소방호스 및 소방용구가 470억 원이고, 소화기 118억 원, 자동소화기 299억 원 규모다. 소방호스 및 소방용구는 해제연도인 1994년 출하액 규모가 1,792억 원 규모이며, 화재경보기는 1,400억 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사업체수를 보면, 소방호스 및 소방용구가 1989년 56개 업체에서 1994년 116개 업체로 지정 당시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였다. 화재경보기는 1989년 95개 업체에서 145개 업체로 1.5배 증가하였다. 반면 피난기구의 경우 고유업종 지정 당시 출하액이 1,000억 원이었으나 1994년의 경우 3,600억 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사업체수는 피난기구의 경우 1989년 105개 사업체에서 1994년 403개 업체로 업체수가 3.8배나 증가하였고, 자동소화기의 경우는 24개 업체에서 17개 업체로 감소하였다.

1996년 기준으로 피난기구와 자동소화기 업체들의 평균출하액 규모를 보면 50억 원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70%를 점하고 있어서 이 품목 역시 사업체규모가 영세함을 알 수 있다. 경쟁력 면에서는 아직 국내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품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수입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미국산인데 미국산의 경우 가격은 국산과 비슷하나 기능성 면에서 국산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술과 기능성 그리고 디자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소방기구업체가 영세하여 디자인개발이나 기능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소방기구는 안전과 관련된 제품으로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다양하고 전문화된 품목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품목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제업종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에 고유업종 중 17개 품목이 해제되었고, 해제품목예시제를 도입함에 따라 58개 품목이 해제품목으로 예시되었다. 1989년에 해제예시된 58개 품목은 1992년에 해제되지 않고 1994년에 해제되었다. 그 후 1995년에 45개 품목이 해제되었고, 1997년에 47개 품목이 해제되었다. 해제업종에 대한 분석은 1989년에 해제된 품목에 대해서 해제품목의 출하액 규모나 평균출하액 그리고 대기업 신규진출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품목별 자료가 1991년까지밖에 없는 관계로 1989년 해제 후 1년 정도의 효과밖에 볼 수 없어서 해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제한적인 설명만 가능하다.

1989년에 해제된 품목을 살펴보면, 출하액 규모가 큰 1,000억 원 이상인 품목은 금속제식탁, 개폐장치 및 보호장치부품, 콘크리트파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출하액 비중을 보면 금속제식탁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의 비중이 85%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다. 반면 개폐장치 및 보호장치부품은 1984년 지정 당시 중소기업의 비중이 81%였으나 1989년 해제 당시 55%로 나타났고, 해제 후인 1990년에는 중소기업 비중이 오히려 65%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대기업수가 9개사에서 해제 후 7개사로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체 1사당 평균출하액을 비교하면 금속제식탁제조업과 개폐장치 보호부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평균출하액의 격차가 1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콘크리트파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평균출하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파일의 경우 고유업종이 해제된 후 대기업의 신규진출이 2개 기업이 늘어났고 대기업의 평균출하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액 규모가 작은 품목들은 콘크리트전주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의 신규참여가 나타나지 않았다. 콘크리트전주의 경우도 대기업의 출하액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업종과 해제업종이 시장구조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해제 후 중소기업의 출하액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에 해제된 품목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1994년에 해제된 고유업종에 대해 해제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고유업종 제품의 경쟁력이 대기업과 해외기업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1994년에 폐지된 58개 업종 중 51개 업종을 가격, 품질, 기술, 생산성 측면으로 나누어 업종별 협동조합의 자체 경쟁력 평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고, 외국기업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비교 가능한 33개 품목 가운데 대기업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업종은 김치 등 2개 품목에 불과했고, 생산성이 더 높은 품목은 조제계면활성제 등 5가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품질, 기술 측면에서는 7개 품목이 대기업보다 우위에 있으나 가격경쟁력이 영세한 품목은 14개 품목, 생산성이 영세한 품목은 17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또 48개 품목을 외국기업과 비교했을 때 가격우위 품목은 17개 품목, 품질우위 품목은 5개 품목, 기술, 생산성우위 품목은 각각 3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생산성은 24개 품목이 외국기업보다 떨어지고, 기술은 16개 품목, 품질 9개 품목, 가격은 5개 품목이 외국기업보다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 그다지 원래의 취지대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시장규모가 작거나 성장성이 없는 품목은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시장규모가 작은 품목은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대기업의 신규진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고유업종으로 지정될 필요가 없

---

15) 한겨레신문, 1993년 11월 12일자.

는 품목임을 보여준다.

### 3. 시장개방과 고유업종제도의 실효성

WTO체제하에서 국내시장의 개방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가속화되고 있다. 고유업종의 지정은 국내시장이 해외시장에 대해 진입장벽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란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나 외국기업으로부터 국내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된다.

국내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고유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규제가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고유업종에 외국기업이 투자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했으나, 1993년부터 고유업종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이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외국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국내 대기업의 투자는 금지하고 있어서 고유업종제도는 국내 대기업에게만 불리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배합사료의 경우 미국의 카길Cargill사가 국내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 기업의 규모는 국내 대기업과는 비교가 안되는 다국적기업이다. 카길사는 1995년 기준으로 음식료품 세계시장에서 매출액이 187억 달러로 음식료품 판매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다.<sup>16)</sup>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고유업종 참여는 허용되지만 국내 대기업의 시장참여가 금지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다.

16) Cargill사 *annual report* 내부자료(1996). <http://www.cargill.com>

• 사례 : 배합사료

배합사료는 1983년에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1994년에 해제되었다. 지정 당시 출하액 규모와 사업체수를 보면 1조 7,650억 원과 82개 사업체였으나, 1995년에는 출하액 규모가 3조 963억 원, 117개 사업체로 증가하였다.

해제 이후 신규로 참여한 대기업은 없으나 기존에 참여한 대기업의 시설확장 및 증설이 나타났다. 1996년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대기업이 50%, 중소기업이 25%, 축협이 25% 정도 수준이다.

이 품목은 지정 당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품목(0.81)이지만, 시장규모가 워낙 커서 규모의 경제성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중소기업형 품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대기업이 고유업종 전체 출하액의 약 9%를 점하는 시장규모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한 중소기업형 업종에만 지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유업종의 지정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는 상대적으로 기여했으나 경쟁력 제고에는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정기준이 없어서 소위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형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했다기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고유업종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유업종 지정기준으로 품질과 기술이 차이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생산해도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을 들고 있으나, 품질의 개념이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기능성이나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의 경우에도 디자인개발이나 전문화로 인한 고부가가치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개발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압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변화함에도 어느 한

공정에 대해 고유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품목은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 대체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수준에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자체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규모가 작은 것은 해제 후에도 대기업의 진출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품목은 고유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 • 사례 : 유아용 승용물

유아용 승용물은 세발자전거, 보행기 유모차 등 바퀴가 달린 완구로 1984년에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1997년 현재까지 고유업종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구업종은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이며,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는 1996년의 경우 350억 원 정도의 작은 규모다. 이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30여 개 정도이며, 국내시장 점유율은 65% 정도다. 개방화의 영향으로 구미의 고가품목과 저가의 중국산의 수입이 증가하여,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35%나 된다. 완구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가 중국산에 밀려 프라스틱 완구의 경우 50% 이상의 시장을 수입품에 내준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시장을 지키고 있는 품목이다. 아직은 중국의 저가 품목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구미 수입품에 비하면 안전성이나 기능성, 색상, 디자인 면에서 떨어진다.

이 품목의 경우 대기업형 품목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소규모의 중소기업형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업종 역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경쟁압력이 적어 경영의 안정성은 확보했는지 모르나, 품질향상과 제품개발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화로 고유업종 품목의 제품이 유통시장을 통해 직접 국내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1995년 말 유통관련 외국기업체 1백여 개가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으며,<sup>17)</sup> 국내시장에 진출한 유통업체들은 대부분이 할인점, 회원제 창고형 매장으로 선진국 제조업체의 국내진출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 유통업체들은 국내 도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므로 가격하락폭이 커서 국내시장에서 국산품과 외제상품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통시장의 개방은 고유업종과 관계없이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서 고유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외국의 유통업체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국상품을 국내에 싼 값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시점에서 국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금하는 것은 외국 기업들에게 우리 시장을 쉽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고유업종제도는 경쟁이 치열한 경제환경에서는 효과가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중소기업이 경쟁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중소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

17) 삼성경제연구소(1996)

#### 4.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형 업종의 변화

고유업종 지정기준에 의하면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는 업종은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지 않는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품목이다. 그러나 중소기업형 업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기술변화에 의해 공정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다거나 신기술도입으로 중소기업이 빠른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는 고유업종 지정이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사례조사에 의하면, 이런 경우 대기업의 고유업종 시장참여가 불가피하게 되고 초기에는 고유업종 침해로 대기업이 고발되는 사례가 많으나 결국 대기업의 일부 참여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고유업종 지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금업은 지정 당시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평가되었으나, 첨단업종인 반도체에 고기능의 도금이나 자동차의 도금 등 새로운 설비에 의한 도금이 요구됨에 따라 대기업의 도금업 진출이 불가피하게 된 사례이다. 이 경우 대기업의 고유업종 침해로 초기에는 분쟁이 있었으나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빠른 기술변화 속도를 중소기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일부 공정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된 사례이다.

##### • 사례 : 도금업

도금업종은 1983년에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1997년 현재까지 고유업종으로 지정되고 있다. 도금업은 최근에 자가공장에 의한 반도체 소자, 리프트레임, 강판, 강관, 철강선, 자동차 제동장치, 인쇄회로기판, CHIP형 전자부품도금 등은 고유업종에서 제외되었다.

도금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1996년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며, 도금



을 위한 설비가 고가인 장치산업이다. 도금업을 하는 사업체는 중소기업이 200여 개 사업체가 있으며, 기계설비와 도금업을 겸업하는 업체의 평균 출하액은 100억 원 정도이나 나머지 업체들은 출하액 10억 원 정도의 소규모 업체가 많다.

도금은 악세사리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완제품의 중간제품에 필요한 공정으로 품질과 납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변수이다. 도금기술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금에 맞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력이 필요한 업종이다. 경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반도체나 전자부품에 필요한 도금은 고품질의 도금이 상품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금 기술은 새로운 설비를 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이 변화하고 생산공정이 바뀌에 따라 적절한 도금설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반제품에 필요한 도금의 내부화를 원하고 있다. 반도체소자나 자동차 제동장치 등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도금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품질향상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도금이 지정 초기에는 간단한 생산공정의 하나로 판단되었을지 모르나 제품의 성격이 다양화함에 따라 고가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품의 출현으로 설비투자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도금업은 어떤 업종을 중소기업형 업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 사례 : 골판지상자

골판지상자는 모든 포장에 들어가는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업종으로 100% 내수에 의존하는 품목이다. 전량 주문생산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대규모 포장에서 소

포장으로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수요감소가 있었지만, 농산물 포장 이 증가한다든가, 포장재질의 환경친화적 추세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골판지상자는 일반원지에서 골판지를 생산하는 단계와 골판지를 가지고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1996년 골판지상자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는 약 1,145개 업체로 이 중 일반원지부터 골판지 생산과 골판지상자까지 생산하는 업체는 5개 업체, 골판지에서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145개 정도며, 골판지를 가져다가 단순히 상자만을 생산하는 업체가 1,000개 정도에 이른다. 이 업종은 전량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품목이다.

골판지상자는 1983년에 지정되어 1997년 현재도 고유업종지정 품목이다. 이 품목은 1984년 출하액 규모가 3천4백77억 원, 1995년 출하액 규모가 2조 5천6백23억 원에 이르는 시장규모가 큰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참여사업체는 1984년 429업체로 이 중 6개 업체가 대기업이며, 413개 업체가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었고, 1991년에 참여업체수가 대기업 2개 업체, 중소기업 728개 업체로 증가하였다. 1995년 이 품목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1,029업체로 1984년에 비해 2.4배가 증가하였다. 1사당 평균매출액은 1984년 8억 원에서 1995년에는 2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의 경우 대기업 1사당 평균매출액은 179억 원인 데 반해 중소기업 1사당 평균매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다.

제품생산비의 70%—75%가 재료비이며, 기술적 차별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품목이지만 외국에 비하면 생산설비가 영세한 편이다. 1995년 우리 나라 골판지포장 생산량은 31억 7천7백만  $m^2$ 로 제조설비 한 대당 생산량은 독일에 비해 33%, 영국 43%, 미국의 32%, 일본의 79%에 불과해 단위당 생산량이 낮다. 이는 국내 골판지 제조설비의 영세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표 16> 골판지 제조설비의 단위당 생산 비교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1992)	미국(1992)	한국
생산량 (백만 m <sup>2</sup> )	1994	6,052	3,865	4,188	12,269	33,466	2,942
	1995	6,070	3,958	4,221			3,177
기계대수 (대)	1994	108	80	120	573		183
	1995	118	100	120			187
대당 생산량 (백만 m <sup>2</sup> )	1994	56.0	48.3	34.9	21.4	53.11	16.1
	1995	51.4	39.58	35.18			17.0

자료: 골판지협회

골판지 포장공장의 대외적인 추세를 보면 다공장화, 대규모화 추세  
 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Stone Container사는 미국 국  
 내에 60여 개의 공장에서 연간 440억 ft<sup>2</sup>를 생산하고 Packing Corp  
 of America사는 39개 공장에서 300억 ft<sup>2</sup>를 생산하는 등 상위 8개  
 업체가 차지하는 미국내 시장점유율이 60%에 이르고 있다. 세계 2  
 위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랭그그룹이 19.0%, 혼  
 슈제지그룹이 12.0% 등 상위 9개사가 총 58%를 점유하고 있다. 반  
 면 우리 나라의 경우 상위 10개사의 1995년도 시장점유율은 29.4%  
 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로는 우리 나라의 경우 골  
 판지 포장품목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경영의  
 안정화를 꾀하는 중소기업의 진출은 활발하게 일어났으나 대기업의  
 생산설비 확장 및 신규진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수는 1,145개 업체로 상당히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이 중 1,000개 업체는 골판지 생산설비가  
 없는 골판지상자만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따라서 이 품목은 골판  
 지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가 대량으로 생산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이  
 룰 수 있는 품목임에도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참여가 금  
 지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포장이 필요한 대부분

의 제품에 필요한 품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내부화를 원하는 품목이다.

<표 17> 골판지 생산기업의 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백만 m<sup>2</sup>, 미 백만 ft<sup>2</sup>)

	1992	1993	1994	1995	미국(8사)	일본(9사)
생산량	2,612	2,745	2,942	3,177	33,466	12,269
상위업체 생산량	760	786	85	933	20,080	7,116
점유율(%)	29.1	28.6	28.9	29.4	60.0	58.0

자료 : 골판지협회

또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대규모의 연구 개발투자가 요구되거나 기업의 이미지 효과 등과 같은 범위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형 업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M회사는 스카치테이프, 샌드페이퍼, 포스트잇 등 5만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제품들의 상당 부문은 최소 효율규모로 볼 때,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R&D와 이미지의 범위의 경제를 이용하여 1995년 1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이다. 이렇듯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그 실체가 불투명하다.<sup>18)</sup>

외국의 경우 특정업종을 사전적으로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내시장에서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었거나 현재도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 외국에서는 대규모 기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정되는 간장(1994년 해제)은 일본의 경우 1996년 매출규모가 2,060억 엔이나 되

18) 김상권(1996)

는 대기업인 Kikkoman사가 생산하고 있다.<sup>19)</sup> 국내에도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서 국내기업들이 이들 제품과 경쟁해야 한다. 현재까지 고유업종으로 지정되고 있는 안경테나 옥수수기름은 국내에서는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제품의 기업 규모를 보면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이 이 같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경테의 경우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Ray-Ban, Revo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안경뿐만이 아니라 눈에 관련된 제품을 거의 다 생산하는 미국의 Bausch & Lomb사에서 생산하고 있다.<sup>20)</sup> 이 기업의 1996년 매출규모(안경테, 안경렌즈, 안과약품 포함)는 19억 달러인 회사다. 이에 비해 국내 안경테의 총매출규모는 1,750억 원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안경테 업체 중 하나인 S기업의 1995년 매출액은 약 95억 원이다.

옥수수기름의 경우 국내에 진출해 있는 Mazola 옥수수기름은 미국에서 식품회사 중 매출순위 1위를 점하고 있는 CPC International Inc.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다.<sup>21)</sup> 이 회사의 경우 1996년 매출이 98억 달러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이 기업은 62개국에 사업부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판매의 75% 이상이 미국의 지역에서 판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에 170개 공장이 있으며, 이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만 약 51,000명이다.

유아용 승용물의 경우도 유통업체를 통해 진출하고 있는 Dorel사는 매출규모가 1997년 1/4분기의 경우 500만 달러인 회사다.<sup>22)</sup> 이에

19) Kikkoman사 *annual report* 내부자료(1996). <http://www.kikkoman.co.jp>

20) Bausch & Lomb *annual report* 내부자료(1996). <http://www.bausch.com>

21) CPC International Inc. *annual report* 내부자료(1996).

<http://www.cpcinternational.com>

22) Dorel사 *quarterly report* 내부자료(1997). <http://www.coscoinc.com>

비해 국내 유아용 승용물의 전체 매출규모는 80억 원 규모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특정업종을 두고 대기업형 업종,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형 업종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대기업이 이러한 업종에 진출하면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업종을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외국에서는 특정업종을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간장이나 식용유, 안경테, 유아용 승용물과 같은 품목이 외국에서는 대규모 기업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들이 국내시장 개방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고유업종 중소기업들은 이들 대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시장개방과 더불어 유통시장 개방으로 대형 할인업체를 통해 고유업종 제품인 간장, 옥수수기름, 유아용 승용물, 안경테 등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서 고유업종 중소기업은 국내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대기업과의 경쟁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배양하지 못한 고유업종 중소기업들은 외국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유지하고 있는 고유업종제도와 같은 경쟁제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제5장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을 크게 구분하면, 금융이나 세제 등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른 경제주체를 규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규제정책은 대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경쟁제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유업종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발생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불균형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소외된 중소기업을 차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도록 지원하여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해서 중소기업 보호하려는 것은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여 중소기업과 경쟁하면 대기업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정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의 결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면, 중소기업이 경쟁을 통해 피해를 받는 것은 경쟁의 속성상 발생하는 결과일

뿐이다. 이런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는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경제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

고유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을 진출을 금지하는 데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중소기업형 업종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다품종 소량생산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중소기업형 업종은 기술변화나 수요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또 생산의 최소효율 규모가 작아서 다품종 소량생산에 알맞은 업종이라도 제품간 R&D 투자나 기업의 이미지 효과를 고려하면 중소기업형 업종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또 국내시장에서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식되는 간장이나 식용유 그리고 유아용 승용볼(유모차, 보행기 등), 안경테, 배합사료와 같은 품목이 외국의 경우 대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으며, 업종을 사전적으로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는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경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품을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감소되게 된다.

고유업종제도는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당시에 이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은 계속 고유업종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참여를 원하는 대기업에게는 강력한 진입장벽이 되며 형평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자료에 의하면 고유업종에 진출해 있는 상당수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중이 높아서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보호보다는 기존의 대기업의 가득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유업종제도는 경쟁을 사전적으로 축소하고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 고유업종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나 지정계열화제도와 중첩되어 실시되고 있어서 대기업의 경쟁제한뿐 아니라 중소기업간 경쟁도 제한하고 있다.

고유업종제도는 해외시장으로부터 국내시장의 진입장벽이 있을 때 중소기업의 보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해외시장과 국내시장간 진입장벽이 낮아진 경우 그 효과가 없다. WTO체제의 도래로 국내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고유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고유업종 품목에 대한 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고유업종제도는 국내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제한하고 있어서 국내 대기업만 불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장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다국적기업들로 국내 대기업과는 비교가 안되는 대형업체들이다. 고유업종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외국의 대기업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 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의 대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중소기업정책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사회정책적 이념과 분리시켜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실시되는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 고유업종과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단체수의계약이나 지정계열화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차별적 보호 측면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마련되어

야 하며, 여타 중소기업정책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상권,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경제분석」, 『경제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내부자료, 1996.
- 김재홍, 『한국의 진입규제』, 한국경제연구원, 1994.
- 김재홍,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제 비판」, 『정책적 규제 비판』, 한국경제연구원, 1994.
- 김주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지식집약화』, 한국개발연구원, 1996.
- 대한상공회의소, 『WTO체제하의 경쟁라운드 전망과 대응전략』, 1995.
- 백낙기·양현봉·조진희,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전략과 시책방향』, 산업연구원, 1992.
- 백낙기 외,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업종별 경쟁력 실태분석 및 강화방안』, 산업연구원, 1992.
- 백낙기 외,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제도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1992.
- 삼성경제연구소, 「유통시장 전면개방 효과」, 세미나자료, 1996.
- 상공부, 『중소기업육성시책』, 1990.
- 상공부, 『중소기업육성 40년』, 1988.
- 이경의, 『중소기업의 이론과 정책』, 1996.
- 중소기업정책연구회, 『경쟁과 협력』, 한국능률협회종합연구소, 1991.
- 중소기업진흥공단, 『WTO체제와 중소기업』, 1995.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편람」, 1996.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단체수의계약제도·중소기업간 경쟁제도』,

1997.

최규순, 『한국중소기업정책사』, 도서출판 지스, 1991.

한국경제법연구회 편, 『한국중소기업법연구』, 삼영사, 1986.

허민주, 「고유업종해제 현황과 대응전략」, 『중소기업진흥』, 1996.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일본경제신문사, 『일경회사정보』, 여름호, 1997.

한국신용평가, 『기업재무총람』, 1996.

CPC International Inc., *Annual Report*, 1996.

Bausch & Lomb, *Annual Report*, 1996.

Kikkoman Co., *Annual Report*, 1996.

Dorel Industries, *Quarterly Report*, 1997.

---

## 부 록

1.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해제 현황
2. 고유업종 품목별 출하액 비중
3. 고유업종 품목별 사업체수
4. 고유업종 품목별 평균출하액



## [부록 1]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해제 현황

업종	1983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5년	1997년
물타리철선 제조업	1983	○	○	○	○	-
철망 제조업		1984	○	○	○	-
망(철망) 제조업		1984	○	○	○	-
쇠못 제조업	1983	○	○	○	○	○
폴리에틸렌파복강관(외면에 피복한 400A 이하)			1989	-		
스텐레스용접강관(장식용 구조용에 한함)			1989	○	○	○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재생알루미늄	1983	○	○	○	○	○
아연말 제조업	1983	○	○	○	○	○
동모세관(외경4mm 이하에 한함)			1989	○	○	○
맨홀 제조업	1983	○	○	○	-	
연관 제조업	1983	○	-			
아연 및 알루미늄 다이캐스팅(350톤 이하)		1984	○	○	○	○
금속제식탁용품 제조업		1984	-			
강관전주(Flange Type에 한함)			1989	-		
고압가스용기(50L이상인 제품에 한함)	1983	○	○	○	○	○
알루미늄압력솔		1984	-			
도금업(자기공정도 포함)	1983	○	○	○		
도금업(자기공정도 제외)					1995	○
쌀통 제조업			1989	-		
멤날 제조업	1983	○	○	○	○	-
철제학생용 책걸상 제조업		1984	○	○	-	
생석회(생산능력 20만 톤 이상의 자가소비 제외)	1983	○	○	○	○	○
소석회 제조업	1983	○	○	-		
공업용 수성경석회	1983	○	-			
유기계면활성제(대기업 신규개발품목 제외)	1983	○	○	-		
조제계면활성제(대기업 신규개발품목 제외)	1983	○	○	-		
부동액 제조업			1989	-		
브레이크액 제조업			1989	-		

업종	1983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5년	1997년
탄산가스(액화탄산, 고형탄산에 한함, 자가소비 제외)		1984	○	○	○	○
황신알루미늄 제조업	1983	○	○	-		
침강탄산칼슘 제조업			1989	○	○	-
고체가성소다 제조업		1984	○			
약상, 고상 염화이연 제조업		1984	○	-		
규산소다(액상에 한하며, 자가소비용 제외)			1989	-		
황화소다(황화수소가스를 포함해서 정제)			1989	-		
기타무기화합물		1984	○	-		
이연화 제조업	1983	○	○	○	○	○
수성페인트 제조업	1983	○	○	-		
수동식벨브 제조업	1983	○	○	○	-	
롤리체인 제조업	1983	○	○	○	○	-
맨홀 제조업	1983	○	○	○	-	
동력탈곡기 제조업		1984	○	○	-	
곡물건조기 제조업		1984	○	○		
사료절단기 제조업		1984	○	○	-	
선반(전문용기계 및 수차제어식 기계제품 제외)	1983	○	○	○	○	-
개폐장치 및 보호장치부품 제조업		1984	-			
밀링기(전문용기계 및 수차제어식 기계제품 제외)	1983	○	○	○	○	-
정미기 제조업		1984	○	○	○	-
상업용 저울(가정용 저울 포함)	1983	○	○	○	○	○
오일크러너(오일클러리파이어 포함)		1984	○	○	○	○
베어링용 강구 제조업		1984	○	○	-	
브레이크슈 및 라이닝		1984	-			
추열탱크		1984	-			
박시계 제조업	1983	○	○	○	○	○
탁상시계 제조업	1983	○	○	○	○	○
걸이계(자에 한함) 제조업	1983	○	○	○	○	○
용접기(전기용접기를 제외) 제조업	1983	○	○	○	○	-
방열기(라디에이터에 한함) 제조업	1983	○	○	○	-	
안경렌즈(누진다초점 유리렌즈 제외)	1983	○	○	○	○	○



업종	1983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5년	1997년
인경테 제조업	1983	○	○	○	○	○
자동소화기 제조업			1989	○	○	○
소화기 제조업			1989	-		
피난기구 제조업			1989	○	○	○
축압기 제조업			1989	○	○	○
손목시계케이스(이형케이스 제외) 제조업	1983	○	○	-		
전동체인호이스트(10톤 이상 제외)			1989	-		
소방호스 및 소방용 금속용구 제조업			1989	-		
소방호스 및 소방용구			1989	-		
가스미터기(산업용 제외)			1989	-		
박용전기방식제(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1984	○	○	-	
선박용문(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1984	○	○	○	○
현창(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1984	○	○	-	
박용관아음쇠(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1984	○	○	○	-
박용송풍기(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1984	○	○	-	
소형프로펠러(조선용 기자재용으로 직경 4천mm 이하)		1984	○	○	○	○
소형조타기(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1984	○	○	○	-
박용전선(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1984	○	○	○	○
선등(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1984	○	○	-	
박용사다리(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1984	○	○	○	-
일반선박(500G/T 이하에 한함)	1983	○	○	○	○	-
탱크크리닝머신 제조업			1989	○	○	-
구멍정(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1984	○	-		
이어폰 제조업		1984	○	○	○	-
어학실습기 제조업		1984	○	○	○	○
전자메가폰 제조업		1984	○	○	○	-
안테나 제조업(TV 옥외 제외)		1984	○	○	○	○
안테나 제조업			1989	○	○	○
인터폰(송수 1회선에 한함) 제조업		1984	○	○	○	-
부스공중전화 제조업	1983	○	○	○	-	
시내단자함 제조업	1983	○	○	○	-	

업종	1983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5년	1997년
피로탄기반 제조업	1983	○	○	-		
헤드폰 제조업		1984	○	○	○	-
마그네트선(0.6m/m 이하인 제품에 한함)	1983	○	○	○	○	-
플러그부착코우드 제조업		1984	○	○	○	○
노브 제조업		1984	○	○	-	
철심코어(전자기기용 변성기용에 한함)		1984	○	○	○	○
리드와이어 제조업		1984	○	○	○	○
트랜스포머(AC/AC승압 및 강압용으로 권선된 상태에 한함)		1984	○	○	○	○
전자기기용 휴즈 제조업		1984	○	○	○	-
플러그 및 썸(3극수 이하의 것에 한함)		1984	○	○	○	○
콘넥티류(단자에 한함)		1984	○	-		
화재경보기류(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한함)			1989	-		
동복강선 제조업		1984	○	○	-	
컷아웃스위치(25KV급에 한함)		1984	○	○	○	○
고장구간 자동개폐기(25.8K, 400A, 15KV급에 한함)		1984	○	○	○	○
리크로우저(27KV, 560A 이상, 10KV급에 한함)		1984	○	○	○	-
등인정기(형광등용에 한함) 제조업	1983	○	○	-		
정류기(4천 KW 이하에 한함) 제조업	1983	○	○	-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업	1983	○	○	-		
저항용접기(SPOT, PROJECTION)용접기, 자동식 제외			1989	-		
전기면도기		1984	-			
백열전구	1983	○	-			
전기도관용 조인트 및 부착물(비절연) 제조업			1989	-		
아아크용접기(교류범용, CO <sub>2</sub> , TIG, MIG, MAG 용접기)		1984	○	-		
배선기구(육내용 소형스위치로서 수동에 의한 점멸)			1989	-		
지대봉사 제조업	1983	○	○	○	-	
면거즈 제조업		1984	○	○	○	○
배낭, 수통피, 안전삼피 제조업		1984	○	○	-	
순방모직물 제조업	1983	○	○	-		
혼방방모직물 제조업	1983	○	○	-		
기타 솜 제조업		1984	○	-		

업 종	1983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5년	1997년
이불, 요 제조업		1984	○	○	○	-
세족직물 제조업	1983	○	○	○	○	-
손방모사 제조업	1983	○	○	-		
훈방방모사 제조업	1983	○	○	-		
타올 제조업	1983	○	○	○	○	○
폴리프로필렌 직물포대 제조업	1983	○	○	○	○	-
포장용 직물포대 제조업	1983	○	○	○	○	-
기타 침구 및 관련제품(침낭에 한함)			1989	-		
지수제품(전자지수제품에 한함)			1989	○	○	○
부직포(단섬유제 중 화학약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	1983	○	○	-		
천막 제조업		1984	○	○	-	
면이불솜 제조업	1983	○	○	○	○	○
양말 편조업(스타킹류를 제외)			1989	○	○	○
양말 제조업		1984	○	○	○	○
장갑 편조업			1989	○	○	○
섬유장갑 제조업	1983	○	○	○	○	○
작업장갑 제조업		1984	○	○	-	
기방 제조업	1983	○	○	○	○	-
핸드백 제조업	1983	○	○	○	○	-
휴대용케이스류 제조업	1983	○	○	○	○	-
서가 제조업		1984	○	-		
싱크대(주방에 설치되는 복합취사대, 물버림대)		1984	○	-		
싱크대(주방에 설치되는 복합취사대, 물버림대)			1989	-		
책장 제조업		1984	○	○	-	
책선반 제조업		1984	○	-		
보관상자 제조업		1984	○	-		
학교용 책걸상 제조업		1984	○	-		
실험대 제조업		1984	○	○	-	
도서카드함 제조업		1984	○	-		
박물관 진열대 제조업		1984	○	○	-	
공류 제조업	1983	○	○	-		

업종	1983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5년	1997년
탁구대 제조업		1984	○	○	○	-
기타 낚시장비 제조업		1984	○	○	○	-
봉제완구 제조업	1983	○	○	○	○	○
유아용 승용물 제조업	1983	○	○	○	○	○
캐니발용품		1984	-			
모조장식품(의복장식) 제조업			1989	○	○	○
가발 제조업		1984	○	○	-	
가늌쇠 제조업		1984	○	○	-	
크레용파스텔 제조업	1983	○	○	○	○	○
스탬프 제조업	1983	○	○	○	-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	1983	○	○	○	○	-
지우개 제조업		1984	○	○	○	○
흑판 제조업		1984	○	○	-	
우산 제조업	1983	○	○	○	○	○
양산 제조업	1983	○	○	○	○	○
슬라이드화스나 제조업	1983	○	○	-		
빗 제조업		1984	○	○	-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제조업		1984	○	○	○	○
성냥 제조업	1983	○	○	○	-	
화장용 분첩 및 패드 제조업		1984	○	○	○	-
마네킹 제조업		1984	○	○	○	-
악기(리코더, 실로폰, 소고, 탬버린, 국악기에 한함)		1984	○	○	-	
거울판(거울을 포함함) 제조업	1983	○	○	○	○	○
카본지 제조업		1984	○	○	○	-
노트 제조업	1983	○	○	○	○	○
일기책 제조업	1983	○	○	○	○	○
연습장 제조업		1984	○	○	○	-
장부책 제조업	1983	○	○	○	-	
회계장 제조업		1984	○	○	-	
앨범 제조업	1983	○	○	○	○	○
바인더 제조업		1984	○	○	○	-

업종	1983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5년	1997년
연하장 제조업	1983	○	○	○	○	-
물감 제조업	1983	○	○	○	○	-
골판지상자 제조업	1983	○	○	○	○	○
골판지 제조업	1983	○	○	○	○	○
크라프트지포대 제조업	1983	○	○	○	○	○
종이컵 제조업		1984	○	○	○	-
습강지(위생용 냅킨에 한함)	1983	○	○	○	○	○
판지상자 제조업		1984	○	○	○	-
광택제 제조업		1984	○	○	○	○
세탁비누 제조업	1983	○	○	○	○	-
양초 제조업	1983	○	○	○	-	
양초 제조업	1983	○	○	○	○	○
재생타이어 제조업	1983	○	○	○	○	○
고무장갑 제조업	1983	○	○	○	○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함유(이축연산폴리프로필렌)	1983	○	○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함유(이축연산폴리프로필렌)	1983	○	○	○	-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관 및 판 제조업			1989	○	○	○
폴리스티렌 페이퍼슈트 제조업		1984	○	○	○	○
발포폴리스티렌(EPS) 내포장용 성형제품(자체소비 제외)			1989	○	-	
이륜차용 안전모 제조업			1989	○	-	
주방용 플라스틱 제품	1983	○	-			
영화비닐열수축라벨 제조업		1984	○	○	-	
폴리에틸렌 포대 제조업	1983	○	○	○	-	
플라스틱용기 및 육묘상지(플리에스텔용기 제외)	1983	○	○	○	○	○
합성수지제 끈 제조업	1983	○	○	○	-	
상업 인쇄업	1983	○	○	○	○	-
재생플라스틱원료 제조업			1989	○	○	○
재생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83	○	○	○	○	○
점착제(초산비닐 및 아크릴수지에열전매 한함) 제조업			1989	○	○	-
사진제판(자가공정용을 제외)업			1989	-		
콘크리트 블록, 벽돌, 가와 제조업		1984	○	○	-	

업종	1983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5년	1997년
홍관(코아식 프레스트레스 콘크리트관을 제외)	1983	0	0	-		
콘크리트전주	1983	0	-			
콘크리트파일	1983	0	-			
연마지석 제조업	1983	0	0	0	0	0
연마지석 제조업			1989	0	0	0
연마지 및 포 제조업			1989	0	0	0
아스콘(이동식 간이설비를 제외함)			1989	0	0	0
복층유리 제조업			1989	-		
위생약품용 유리제품(자동제병을 제외)	1983	0	0	0	0	0
화장품용 유리제품(자동제병을 제외)	1983	0	0	0	0	0
유리용 도가니 제조업	1983	0	0	0	-	
점토기와 제조업			1989	-		
타일시멘트(타일용 혼합시멘트로서 KSL1592에 규정)			1989	-		
미강유 제조업	1983	0	0	0	0	-
식용정제 및 가공유제조업(기타 식물성기름)	1983	0	0	0	0	-
옥수수기름 제조업	1983	0	0	0	0	0
식물성유지 제조업(옥수수유, 옥배유)	1983	0	0	0	0	-
서류전분(감자전분 제외)	1983	0	0	0	0	0
배합사료 제조업			1989	-		
동물약품(원료동물약품을 제외)		1984	0	0	0	0
양곡 도정업			1989	0	0	0
국수 제조업	1983	0	0	0	0	0
당면 제조업	1983	0	0	0	0	0
두부 제조업	1983	0	0	0	0	0
붕합침 제조업			1989	0	0	0
의료용 물질생성기(이온수기) 제조업			1989	0	0	0
자기치료기 제조업			1989	0	0	0
보청기 제조업			1989	0	0	0
어육연제품(맛살류를 제외)			1989	0	0	0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1989	0	0	0
적오징어 조미가공제품 제조업			1989	0	0	0

업 종	1983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5년	1997년
김치류 제조업			1989	-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			1989	○	○	-
의료용 수술기구류 제조업			1989	○	○	○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에 한함)		1984	○	-		
국산채울무차, 유자차, 생화차, 생강차, 칩차에 한함)			1989	-		
석유심지(석유난로 및 풍로용 심지에 한함)		1984	○	○	-	
석건재 제조업	1983	○	○	○	○	○
석공예 제조업			1989	○	○	○
증기보일러(석탄용 등 특수보일러를 제외한 ...)		1984	○	○	○	-
난방용 보일러(기름용의 것으로서 용량이 열량...)		1984	○	○	○	-
버너(보일러용 버너로서 건타입, 로타리타입 및 기류분)		1984	○	○	○	-
가정용 보일러(가스용을 제외)		1984	○	○	○	-
구멍탄용 연소기 제조업		1984	○	○	-	
구멍탄난로 제조업		1984	○	○	-	
전기절연유(1종 광유계에 한함)			1989	○	○	○
기타 비윤활유(프로세스유) 제조업			1989	○	○	○
바이오에너지(왕겨탄, 톱밥탄 한함)			1989	-		
해면양식		1984	-			
수산물 냉동냉장(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및 허가 제외)		1984	○	○	○	○
수산물 통조림		1984	○	-		
포프라제품(할저, 얼음과자꽃이, 목스폰에 한함)		1984	○	○	-	
유창청소업(선박청소업)		1984	○	○	-	
음반 및 녹음테이프(녹음 또는 녹화가 되어 있는 것 제외)		1984	○	○	○	○

주 : ○ 계속지정, - 해체

## [부록 2] 고유업종 품목별 출하액 비중

업종	1984년					1989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울타리철선철조당*	21,223	12,463	8,760	0.59	0.41	15,517	242	15,275	0.02	0.98
철강망*	124,018	12,167	111,851	0.10	0.90	262,472	20,261	242,211	0.08	0.92
쇠못 합계**	182,705	20,624	161,881	0.11	0.89	377,562	37,318	340,535	0.10	0.90
스틸러스 용접강관(장식용 구조용)						179,945	56,841	123,104	0.32	0.68
주물 및 다이 캐스팅용 재생알루미늄	10,479		10,479	0.00	1.00	94,539		94,539	0.00	1.00
아연말 제조업	22,924		22,924	0.00	1.00	18,226		18,226	0.00	1.00
동모서관(외경 4mm 이하)						676,364	370,845	305,519	0.55	0.45
연관 제조업	2,564		2,564	0.00	1.00	2,118		2,118	0.00	1.00
아연 및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8,355		8,355	0.00	1.00					
고압가스용기	7,707	179	7,528	0.02	0.98	112,484	55,929	56,555	0.50	0.50
도금업(자기공정도 포함)						25,741	3,366	22,372	0.13	0.87
땀납 제조업										
생석회	10,955		10,955	0.00	1.00	16,250		16,250	0.00	1.00
공업용 수송경석회	86		86	0.00	1.00	488		488	0.00	1.00
탄산가스(액화탄산, 고형탄산)	67,706	6,891	78,815	0.10	0.90	136,438	13,829	122,609	0.10	0.90
침강탄신칼슘 제조업						16,330		16,330	0.00	1.00
아연화 제조업						11,419		11,419	0.00	1.00
폴리체인 제조업	3,940		3,940	0.00	1.00	26,026	5,914	20,112	0.23	0.77
공돌건조기 제조업	1,463		1,463	0.00	1.00	19,669		19,669	0.00	1.00
선반**	8,783	6,011	772	0.91	0.09	98,303	85,419	12,884	0.87	0.13
탈황기	16,385	5,446	12,939	0.30	0.70	77,011	39,067	37,944	0.51	0.49
정미기 제조업	1,323		1,323	0.00	1.00	4,574		4,574	0.00	1.00
삼업용 저울(가정용 저울 포함)	3,778		3,778	0.00	1.00	16,943		16,943	0.00	1.00
오일크리니오일클러리어(파이어 포함)	20,961	3,753	17,208	0.18	0.82	76,186	1,394	76,804	0.02	0.98
벽시계 제조업	10,680	1,279	9,401	0.12	0.88	163,110	1,753	145,557	0.11	0.89
탄상시계 제조업	5,164	389	4,775	0.08	0.92	1,205		1,205	0.00	1.00
길이계(키스에 한함) 제조업	1,334		1,334	0.00	1.00	6,966	1,289	5,697	0.18	0.82
용접기(전기용접기 제외) 제조업						2,108		2,108	0.00	1.00
인경렌즈(누진디초점 유리렌즈 제외)	5,171	70	5,101	0.01	0.99	18,904		18,904	0.00	1.00



1990 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8,637	4,132	4,505	0.48	0.52	40,378		40,378	0.00	1.00	13,480	7,557	13,371	18,364
261,405	18,282	243,123	0.07	0.93	70,560	0	70,560	0.00	1.00	79,276	103,463	98,911	132,999
451,492	36,401	415,091	0.08	0.92	93,732	0	93,732	0.00	1.00	410,925	113,473	131,543	119,699
237,267	141,700	95,567	0.60	0.40	154,679	59,813	94,866	0.39	0.61	112,004	320,501	307,644	
139,610		139,610	0.00	1.00	85,367		85,367	0.00	1.00		130,029	195,759	
28,366		28,366	0.00	1.00	10,227		10,227	0.00	1.00	15,497	36,937	28,059	
793,520	426,088	367,432	0.54	0.46	277,129	194,628	82,501	0.70	0.30	239,314	209,435	286,306	395,715
1,041		1,041	0.00	1.00									
130,412	55,848	74,566	0.43	0.57	60,171	743	59,428	0.01	0.99	87,505	76,926	65,901	67,197
12,650		12,650	0.00	1.00	15,918		15,918	0.00	1.00	22,415	14,191		
					23,519	65,332	58,197	0.53	0.47	140,686	188,531		204,696
20,649		20,649	0.00	1.00	26,322		26,322	0.00	1.00	32,808	49,667	52,596	51,611
249		249	0.00	1.00	110	0	110	0.00	1.00				
189,576	16,450	173,126	0.09	0.91	20,601		20,601	0.00	1.00	26,032	20,176	36,243	70,105
16,121		16,121	0.00	1.00	17,667		17,667	0.00	1.00	22,750	43,437	42,087	64,239
20,194		20,194	0.00	1.00	19,219		19,219	0.00	1.00	28,392			
27,507		27,507	0.00	1.00	14,676		14,676	0.00	1.00	3,886	15,345	36,711	63,454
23,922		23,922	0.00	1.00	25,933		25,933	0.00	1.00		72,200	46,949	59,498
168,543	98,569	69,974	0.58	0.42	108,361	27,783	80,578	0.26	0.74	74,355	50,773	86,152	133,430
79,252	36,673	42,579	0.46	0.54	82,454	28,318	56,136	0.32	0.68	49,705	51,443	106,678	135,620
3,338		3,338	0.00	1.00	3,333		3,333	0.00	1.00	7,806	11,938	20,639	17,833
13,926		13,926	0.00	1.00	20,429		20,429	0.00	1.00	27,289	31,836	34,510	44,776
19,656	15,081	104,575	0.13	0.87	9,736		9,736	0.00	1.00	6,156	20,428	36,737	101,783
7,838		7,838	0.00	1.00	15,730	1,067	15,663	0.06	0.94	13,948	18,857	34,491	32,362
2,233		2,233	0.00	1.00	28,747	10,084	18,663	0.25	0.75	32,363	19,485	21,203	26,907
5,646		5,646	0.00	1.00	6,712		6,712	0.00	1.00	7,928	8,763	3,634	12,766
1,700		1,700	0.00	1.00	3,584		3,584	0.00	1.00	977	11,310	60,102	13,504
12,987		12,987	0.00	1.00	32,796	4,807	27,989	0.15	0.85	38,943	50,786	43,568	61,435

업 종	1984년					1989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인경테 제조업	27,000	15,476	11,524	0.57	0.43	54,224	5,052	49,172	0.09	0.91
자동소화기 제조업						29,982		29,982	0.00	1.00
파난기구 제조업						107,700		107,700	0.00	1.00
축압기 제조업						50,468	884	49,584	0.02	0.98
선박용문(조선용 기지재)	19,707		19,707	0.00	1.00	27,111		27,111	0.00	1.00
박용관아음쇠(조선용 기지재)										
소형프로펠러(조선용 기지재)	156,616	105,842	50,776	0.68	0.32	283,028	125,566	157,462	0.44	0.56
소형조타기(조선용 기지재)										
박용전선(조선용 기지재)	124,372	82,554	41,818	0.66	0.34	335,290	203,508	131,782	0.61	0.39
박용사다리(조선용 기지재)	87,842	27,222	60,620	0.31	0.69	152,529	36,922	113,607	0.26	0.74
조선용기지재 합계**	413,967	221,703	192,264	0.54	0.46	897,505	379,115	518,390	0.42	0.58
일반선박**	1,937,611	1,913,153	54,458	0.97	0.03	1,342,718	1,253,991	88,727	0.93	0.07
탱크크리닝머신 제조업						22,963		22,963	0.00	1.00
이어폰 제조업	59,570	26,627	32,943	0.45	0.55	130,233	59,712	70,521	0.46	0.54
어학실습기 제조업	59,905	40,579	19,326	0.68	0.32	185,968	109,579	76,389	0.59	0.41
전자메카톤 제조업	46,380	18,553	27,727	0.40	0.60	275,579	148,488	127,091	0.54	0.46
안테나 제조업						1,004,463	243,116	761,347	0.24	0.76
어학기재 합계*	184,440	87,642	96,798	0.48	0.52	1,676,650	603,358	1,073,292	0.36	0.64
인터폰(송수 1 회선에 한함) 제조업 1										
인터폰(송수 1 회선에 한함) 제조업 2	4,371		4,371	0.00	1.00					
헤드폰 제조업 5	20,563	2,730	17,833	0.13	0.87	55,831	33,655	22,176	0.60	0.40
마그네트선(0.6m/m 이하)	3,084		3,084	0.00	1.00	95,414	53,699	41,715	0.56	0.44
플러그부착코드 제조업	70,964	32,463	38,501	0.46	0.54	216,120	56,307	159,813	0.26	0.74
철심코어(전자기용 연성기용)										
리드와이어 제조업										
트랜스포머(AC/AC 증압 및 강압용)	99,035	73,552	25,483	0.74	0.26	263,809	157,931	105,878	0.60	0.40
전자기용 축조 제조업	7,649	1,202	6,447	0.16	0.84	40,713	37,826	2,887	0.93	0.07
플러그 및 잭(3 극수 이하)	33,534	27,758	5,776	0.83	0.17	96,731	53,830	42,901	0.56	0.44
컷아웃스위치(25KV 급)	7,849	1,202	6,447	0.16	0.84					
고장구간자동개폐기**	66,484	12,760	53,724	0.19	0.81	240,049	107,569	132,480	0.45	0.55
리크로우저										
먼거즈 제조업	7,308		7,308	0.00	1.00	10,008		10,008	0.00	1.00
세폭직물 제조업	6,293	626	5,667	0.10	0.90	19,621	3,670	15,951	0.19	0.81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59,242		59,242	0.00	1.00	70,546		70,546	0.00	1.00	87,019	128,294	153,519	175,103
33,808	6,303	27,305	0.19	0.81	25,365		25,365	0.00	1.00	36,171	31,649	40,602	41,351
151,926	26,548	125,378	0.17	0.83	344,046	90,715	253,331	0.26	0.74	265,232	339,475	368,238	428,094
43,331	4,086	39,245	0.09	0.91	24,659		24,659	0.00	1.00	47,156	34,630	29,789	49,305
34,038		34,038	0.00	1.00									368,175
358,376	118,444	239,932	0.33	0.67									
418,657	291,778	126,879	0.70	0.30									
119,570	2,591	116,979	0.02	0.98									
1,304,769	412,928	591,641	0.41	0.59	70,349	30,457	39,892	0.43	0.57	118,233	116,642	221,458	368,175
2,170,568	2,094,865	75,703	0.97	0.03	3,078,690	2,957,160	121,530	0.96	0.04	4,465,194	3,683,859	4,749,608	5,798,781
34,407		34,407	0.00	1.00									
109,736	29,627	80,109	0.27	0.73						18,117	23,698	22,056	26,702
208,465	110,615	97,850	0.53	0.47	7,727,310	6,398,758	1,328,552	0.83	0.17	8,631,365	8,037,936	9,085,089	10,286,532
376,564	254,222	122,342	0.68	0.32						127,584	136,230	99,335	74,920
1,469,383	806,331	663,052	0.55	0.45						42,532	58,322	52,407	66,331
2,266,777	1,252,802	1,013,975	0.55	0.45	7,727,310	6,398,758	1,328,552	0.83	0.17	8,387,269	7,742,353	8,832,790	10,094,605
346,000	95,049	250,951	0.27	0.73	11,978		11,978	0.00	1.00				
151,019	148,734	2,285	0.98	0.02	13,866		13,866	0.00	1.00	32,523	6,860	9,875	15,764
55,222	37,891	17,331	0.69	0.31						42,544	56,744	57,293	83,946
149,104	71,068	78,036	0.48	0.52	77,954	56,802	21,152	0.73	0.27	198,043	196,598	234,649	357,848
319,771	135,884	183,887	0.42	0.58	64,845	24,003	40,842	0.37	0.63	97,767	116,711	151,026	168,726
276,646	147,173	129,473	0.53	0.47	270,760	142,640	128,120	0.53	0.47	257,330	328,940	298,216	292,126
67,877	64,493	3,384	0.95	0.05	6,323		6,323	0.00	1.00	13,285	20,887	15,653	12,123
88,320	60,248	28,072	0.68	0.32	8,777		8,777	0.00	1.00	19,950	24,197	31,860	28,240
					159,988	40,898	119,090	0.26	0.74	151,623	119,405	110,442	131,989
232,867	81,295	151,572	0.35	0.65	15,442		15,442	0.00	1.00	43,737	90,497	204,355	231,816
5,796		5,796	0.00	1.00	3,692		3,692	0.00	1.00	1,270	2,057		
34,141	210	33,931	0.01	0.99	49,877	1,823	48,054	0.04	0.96				

업종	1984년					1989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서책지출 제조업										
자수제품 (전자자수제품)										
타올 제조업	36,485	2,303	34,483	0.05	0.95	134,467	20,081	114,386	0.15	0.85
폴크 프루필핀포데(포장용 직물포데)*	59,026	13,359	45,669	0.23	0.77	117,317	17,679	100,238	0.15	0.85
기타 섬유 및 관련제품(침낭)										
자수제품 2(전자자수제품)	64,421	27,371	37,050	0.42	0.58	100,994	16,759	84,235	0.17	0.83
넉넉, 수통과, 안전삽과, 제조업										
견이불승 제조업	9,584		9,684	0.00	1.00	27,273		27,273	0.00	1.00
양말 (민조업(스타킹류 제외))						155,084	9,114	145,970	0.06	0.94
장갑 제조업						21,075	567	20,508	0.03	0.97
가방 제조업	174,564	49,081	125,283	0.28	0.72	373,162	32,125	341,037	0.09	0.91
핸드백 제조업	69,341	26,782	42,559	0.39	0.61	166,102	55,752	110,350	0.35	0.65
추대용케이스류 제조업	1,795		1,795	0.00	1.00	7,758		7,758	0.00	1.00
탁구당 제조업										
기타 낚시장비 제조업	25,581	2,915	23,566	0.08	0.92	54,331	5,842	47,489	0.13	0.87
봉제완구 제조업	35,002	37,150	97,852	0.28	0.72	84,302	2,382	81,920	0.03	0.97
유아용 승용돌**	5,463	0	5,480	0.00	1.00	24,818	5,759	19,059	0.23	0.77
모조장식품(오복장식) 제조업						79,885	3,400	76,285	0.04	0.96
그레용과스탈 제조업	4,531		4,531	0.00	1.00	8,581		8,581	0.00	1.00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	1,200		1,200	0.00	1.00	6,978		6,978	0.00	1.00
지우개 제조업	1,388		1,388	0.00	1.00	2,689		2,689	0.00	1.00
우산 제조업	11,772		11,772	0.00	1.00	3,194		3,194	0.00	1.00
양산 합제**	1,379	0	1,379	0.00	1.00	1,486	0	1,486	0.00	1.00
호중용 분침 및 패드 제조업	6,799		6,799	0.00	1.00	12,155		12,155	0.00	1.00
미네링 제조업	11,278		11,278	0.00	1.00					
거울관(거울 포함) 제조업	320		320	0.00	1.00	26,073	233	19,840	0.01	0.99
키보드 제조업	2,793		2,793	0.00	1.00	71,16	3,300	13,816	0.19	0.81
노트 제조업	6,166		6,166	0.00	1.00	10,105		10,105	0.00	1.00
일기책 제조업	216		216	0.00	1.00	2,549		2,549	0.00	1.00
연습장 제조업	26,436	4,243	16,247	0.21	0.79	33,715		33,715	0.00	1.00
앨범 제조업	52,574	13	52,681	0.00	1.00	66,945		66,945	0.00	1.00
바인딩 제조업										
연하장 제조업	519		519	0.00	1.00	5,609		5,609	0.00	1.00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11,451		11,451	0.00	1.00	36,126	61,213	87,287	58,877
					68,436	17,585	50,851	0.28	0.74	25,771	13,233		26,453
84,896	0	84,896	0.00	1.00	80,585	11,267	69,318	0.14	0.86	119,032	100,396	122,133	123,813
118,900	22,325	96,575	0.19	0.81	28,495	7,487	21,008	0.14	0.86	22,071	6,525	26,975	16,189
					11,373		11,373	0.00	1.00	11,973	7,742	4,384	5,070
125,039	33,619	91,420	0.27	0.73	121,439	20,585	100,854	0.17	0.83	14,870	4,385	3,303	1,800
					12,672		12,672	0.00	1.00	41,107	31,370	30,767	39,819
28,913		28,919	0.00	1.00	24,036		24,036	0.00	1.00	170,120	194,725	209,539	277,517
153,006	22,560	130,446	0.15	0.85	202,204	20,256	181,948	0.10	0.90				
19,012		19,012	0.00	1.00	23,544		23,544	0.00	1.00				
373,401	21,712	351,689	0.06	0.94	389,980	18,472	371,508	0.05	0.95	267,830	233,766	224,200	262,672
225,701	56,049	169,652	0.25	0.75	229,625	48,831	180,794	0.21	0.79	8,875	12,159	15,845	36,621
15,759		15,759	0.00	1.00	13,321	397	12,924	0.03	0.97	14,212	13,459	37,665	23,533
62,278		62,278	0.00	1.00	1,063		1,063	0.00	1.00	79,861	73,126	84,095	106,013
62,276		62,276	0.00	1.00	86,323		86,323	0.00	1.00	198,814	164,477	143,775	116,914
85,729	12,480	73,249	0.15	0.85	285,642	37,560	248,082	0.13	0.87	5,095	6,783	8,747	4,771
16,413	0	16,413	0.00	1.00	16,784	0	16,784	0.00	1.00				
91,648		91,648	0.00	1.00	100,971		100,971	0.00	1.00	79,231	65,106	75,986	55,882
8,861	242	8,619	0.03	0.97	11,912	1,701	10,211	0.14	0.86	557	514	223	2,542
9,394		9,394	0.00	1.00	8,938		8,938	0.00	1.00	5,445			
2,685		2,685	0.00	1.00	3,655		3,655	0.00	1.00	25,032	70,739	64,299	40,061
12,657		12,657	0.00	1.00	22,243		22,243	0.00	1.00	9,106	13,153	11,511	5,844
12,593	0	12,593	0.00	1.00	27,153	0	27,153	0.00	1.00	69,063	75,254	75,364	89,660
6,038		6,038	0.00	1.00	605		605	0.00	1.00	2,230	7,783	7,632	10,148
69,554	26,439	43,115	0.38	0.62	3,587		3,587	0.00	1.00	5,034	4,336	7,415	7,204
29,669	68	29,601	0.00	1.00	28,510		28,510	0.00	1.00	35,321			
18,741		18,741	0.00	1.00	3,203		3,203	0.00	1.00	3,219	4,316	10,320	4,352
10,542		10,542	0.00	1.00	35,831		35,831	0.00	1.00	54,672	66,462	76,206	81,228
1,373		1,373	0.00	1.00									
30,689		30,689	0.00	1.00									
72,686		72,686	0.00	1.00	72,919		72,919	0.00	1.00	76,099	66,549	84,099	97,899
					11,406		11,406	0.00	1.00	12,119	21,148	19,071	25,253
9,405		9,405	0.00	1.00	195,544	78,875	116,669	0.39	0.61	194,252	223,300	245,427	324,170

종업	1984					1989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물감 제조업	2,746		2,746	0.00	1.00	9,805		9,805	0.00	1.00
골판지상자 제조업	280,401	21,682	258,719	0.08	0.32	614,288	34,571	579,717	0.06	0.94
골판지상자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57,355	13,779	53,576	0.20	0.80	138,430		138,430	0.00	1.00
골판지상자(골판지)*	347,756	35,461	312,295	0.10	0.90	752,718	34,571	718,147	0.05	0.95
크라프트지, 포대 제조업	25,413	374	25,036	0.01	0.99	48,549		48,549	0.00	1.00
종이컵 합계**	6,168	0	6,168	0.00	1.00	20,337	0	20,337	0.00	1.00
슬김지 합계**	2,441	0	2,441	0.00	1.00	4,622	550	4,072	0.12	0.88
핀지상자 제조업	72,255	5,276	66,979	0.07	0.93	169,064		169,064	0.00	1.00
광택제 합계*	2,686	0	2,686	0.00	1.00	5,143	176	4,967	0.03	0.97
세탁비누 제조업	52,214	25,250	26,964	0.48	0.52	53,360	38,022	15,338	0.71	0.29
양초 합계*	2,621	0	2,621	0.00	1.00	4,229	0	4,229	0.00	1.00
재생타이어 제조업	6,368	272	6,096	0.04	0.96	17,329	471	16,858	0.03	0.97
고무장갑 제조업	19,986	19,862	104	0.99	0.01	2,864		2,864	0.00	1.00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관 및 판 제조업						202,505	4,343	198,162	0.02	0.98
폴리스티렌 페이퍼쉬트 제조업	83,827		83,827	0.00	1.00					
폴리스티렌 페이퍼쉬트/발포폴리스티렌 내포장*	83,827	0	83,827	0.00	1.00	0	0	0		
주방용 플라스틱제품						80,997	13,596	61,401	0.24	0.76
플라스틱용기 및 욕문상자**	77,626	24,349	53,277	0.31	0.69	176,764	34,860	142,104	0.20	0.80
상업 인쇄업	35,079		35,079	0.00	1.00	39,848		39,848	0.00	1.00
재생플라스틱원료 제조업						10,494		10,494	0.00	1.00
점착제 제조업						215,965	64,579	151,386	0.30	0.70
연마지식 제조업*	11,133	0	11,133	0.00	1.00	23,174	0	23,174	0.00	1.00
연마지 및 포 제조업	18,523		18,523	0.00	1.00	37,998		37,998	0.00	1.00
이스콘						207,031	6,176	200,855	0.03	0.97
위생약품용 유리제품	70,100	26,681	43,419	0.38	0.62	52,986	16,595	36,391	0.31	0.69
화장품용 유리제품	8,936	3,625	5,311	0.41	0.59	49,111	27,305	21,806	0.56	0.44
위생약품용 유리(화장품용 유리 합계)*	79,036	30,286	48,750	0.38	0.62	102,097	43,900	58,197	0.43	0.57
미강유 제조업	8,278		8,278	0.00	1.00	11,623		11,623	0.00	1.00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식물성기름)										
미강유(식용정제 및 가공유) 합계*	8,278	0	8,278	0.00	1.00	11,623	0	11,623	0.00	1.00
옥수수기름 제조업	2,529		2,529	0.00	1.00	4,790		4,790	0.00	1.00
식물성유지 제조업(옥수수유, 옥배유)	5,041		5,041	0.00	1.00	450,278	209,122	241,156	0.46	0.54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14,399		14,399	0.00	1.00	10,429		10,429	0.00	1.00	12,994	15,305	8,573	8,200
727,288	35,793	691,495	0.05	0.95	190,809		190,809	0.00	1.00	267,845	468,312	537,644	690,236
					787,798		787,798	0.00	1.00	817,064	749,788	980,989	1,161,926
93,998		93,998	0.00	1.00	190,809		190,809	0.00	1.00	267,845	468,312	537,644	690,236
621,286	35,793	785,493	0.04	0.96	1,169,416	0	1,169,416	0.00	1.00	1,352,774	1,686,412	2,035,377	2,562,398
51,024		51,024	0.00	1.00	59,727		59,727	0.00	1.00	70,931	87,179	76,320	103,998
25,666	0	25,666	0.00	1.00	49,234	0	49,234	0.00	1.00	142,350	124,608	180,542	149,891
4,363	796	3,267	0.20	0.80	243,661	138,094	135,567	0.57	0.43	312,293	324,156	375,210	407,913
181,426		181,426	0.00	1.00	168,323		168,323	0.00	1.00	126,901	145,000	207,343	221,295
10,912	0	10,912	0.00	1.00	15,452	213	15,238	0.01	0.99	27,337	19,294	29,951	30,842
67,233	55,207	12,026	0.82	0.18	156,143	140,955	15,188	0.90	0.10	67,631	54,369	54,991	93,385
3,520	0	3,520	0.00	1.00	4,306	0	4,306	0.00	1.00	5,617	8,962	5,035	8,734
20,254	5,055	15,199	0.25	0.75	25,455		25,455	0.00	1.00	23,010	51,139	50,013	30,859
8,017	4,620	3,397	0.58	0.42	30,714	8,556	22,158	0.28	0.72	21,160	30,036	35,400	34,165
250,353		250,353	0.00	1.00	15,324		15,324	0.00	1.00	53,182			
					142,337		142,337	0.00	1.00	150,446	248,481	359,487	323,256
0	0	0			142,337	0	142,337	0.00	1.00	150,446	248,481	359,487	323,256
101,045			0.00	1.00	64,133	0	64,133	0.00	1.00				
205,959	38,531	167,428	0.19	0.81	330,755	75,044	255,711	0.23	0.77	321,067	421,726	428,284	421,225
12,668		12,668	0.00	1.00	514,733	75,733	439,000	0.15	0.85	192,113	11,393		
13,845		13,845	0.00	1.00	11,586		11,586	0.00	1.00	10,906	11,038	20,603	23,106
184,937	33,805	151,132	0.18	0.82	297,223	31,507	265,716	0.11	0.89	287,106	318,082	313,200	381,092
34,269	0	34,269	0.00	1.00	31,982	0	31,982	0.00	1.00	27,336	35,368	56,484	67,093
43,209	11,101	32,108	0.26	0.74	37,746		37,746	0.00	1.00	45,221	54,741	60,154	694
313,863		313,863	0.00	1.00	362,703	890	361,813	0.00	1.00	578,784	610,960	503,129	523,309
61,069	25,624	35,465	0.42	0.58	264,415	148,492	115,923	0.56	0.44	292,662	279,355	350,810	334,491
44,241	24,380	19,861	0.55	0.45									
105,330	50,004	55,326	0.47	0.53	264,415	148,492	115,923	0.56	0.44	292,662	279,355	350,810	334,491
10,491		10,491	0.00	1.00	11,067		11,067	0.00	1.00				
					55,216	20,389	34,827	0.37	0.63		14,186	12,575	97,825
10,491	0	10,491	0.00	1.00	66,283	20,389	45,894	0.31	0.69		14,186	12,575	97,825
8,472		8,472	0.00	1.00	3,892		3,892	0.00	1.00	28,396			
465,539	173,284	292,255	0.37	0.63	42,238	535	41,703	0.01	0.99	77,427	33,743	57,140	55,323

업종	1984년					1989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옥수수기름(식물성유) 합계*	7,570	0	7,570	0.00	1.00	455,366	299,122	245,946	0.46	0.54
서륙전문(감자전문 제외)	39,051	16,814	22,237	0.43	0.57	107,419	54,016	53,403	0.50	0.50
동물약품	43,374	5,072	38,302	0.12	0.88	161,815	6,959	94,854	0.07	0.93
양극 도정업						494,689	136,176	358,513	0.28	0.72
곡수 제조업	11,258	90	11,168	0.01	0.99	23,757		23,757	0.00	1.00
당면 제조업	6,905		6,905	0.00	1.00	26,220		26,220	0.00	1.00
두부 제조업	41,660		41,660	0.00	1.00	59,347		59,347	0.00	1.00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										
의료용 물질생성기(이온수기) 제조업						16,882	2,733	14,149	0.16	0.84
의료용 수술기구류 제조업										
보청기 제조업						371		371	0.00	1.00
어육연제품(맛살류 제외)						249,509	130,343	118,166	0.52	0.48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정오징어 조니가공제품 제조업										
붕합질 제조업						1,398		1,398	0.00	1.00
자기치료기 제조업										
식건재 제조업	97,945	12,311	84,734	0.13	0.87	277,266	38,036	239,230	0.14	0.86
석공예 제조업										
석건재(석공예)*	97,945	12,311	84,734	0.13	0.87	277,266	38,036	239,230	0.14	0.86
중기보일러						562,053	389,455	172,598	0.67	0.33
난방용 보일러(기름용)	13,178		13,178	0.00	1.00	146,587	42,555	104,032	0.29	0.71
버너 합계*	59,302	62,635	76,667	0.52	0.48	63,623	2,388	61,235	0.04	0.96
가정용보일러(가스용을 제외)	14,169		14,169	0.00	1.00	14,107		14,107	0.00	1.00
기타 비운활유(프로세스유) 제조업						9,763		9,763	0.00	1.00
전기절연유(1종 광유계에 한함)						23,334		23,334	0.00	1.00
기타 비운활유(전기절연유)*						37,441		37,441	0.00	1.00
해면양식										
수산물 냉동냉장	205,604	63,211	142,393	0.31	0.69	411,408	77,254	334,154	0.19	0.81
음탄 및 녹음테이프 합계**	174,593	134,540	40,053	0.77	0.23	115,701	8,616	107,085	0.07	0.93
철재학생용 책걸상 합계**	13,215	0	13,215							
수동식발브 제조업	159,741	54,575	105,166	0.34	0.66	459,102	106,956	352,146	0.23	0.77
동력할곡기 제조업	6,856		6,856	0.00	1.00	3,835		3,835	0.00	1.00
사료절단기 제조업	6,877		6,877	0.00	1.00	7,549		7,549	0.00	1.00



'990 년					'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474,011	175,284	300,727	0.37	0.63	46,130	535	45,595	0.01	0.99	105,823	33,743	57,140	55,323
123,289	57,799	65,490	0.47	0.53	154,866	67,645	87,221	0.44	0.56	130,561	128,387	127,539	176,934
143,033	24,766	118,267	0.17	0.83	120,050		120,050	0.00	1.00	152,024	166,269	267,038	269,660
530,465	87,494	442,971	0.16	0.84	240,626		240,626	0.00	1.00	388,462	697,849	818,053	1,259,209
26,337		26,337	0.00	1.00	30,568		30,568	0.00	1.00	40,096	44,290	59,266	50,253
36,346	9,486	26,860	0.26	0.74	26,607		26,607	0.00	1.00	28,812	46,199	47,457	56,699
68,655		68,655	0.00	1.00	68,329		68,329	0.00	1.00	94,829	101,021	104,581	101,474
5,692		5,692	0.00	1.00	72,75	14,885	57,865	0.20	0.80				
39,752	7,303	32,449	0.16	0.84	58,029	15,703	42,326	0.27	0.73	57,735	46,419	52,461	97,199
					23,670		23,670	0.00	1.00				
824		824	0.00	1.00	242		242	0.00	1.00	555	4,709	5,263	6,038
299,041	135,319	163,722	0.45	0.55	151,677	30,378	121,299	0.20	0.80	96,484	101,773	95,572	98,453
					308,459	112,057	196,402	0.37	0.63	266,368	330,072	345,920	400,625
					143,276	24,261	119,015	0.17	0.83				
1,396		1,396	0.00	1.00						64,714	63,694	68,694	90,486
										49,634	47,663	47,408	
310,898	42,238	268,660	0.14	0.86	365,258	25,279	339,979	0.07	0.93	457,583	524,456	560,100	691,423
310,898	42,238	268,660	0.14	0.86	365,258	25,279	339,979	0.07	0.93				
350,480	84,008	266,472	0.24	0.76	787,671	538,369	249,302	0.68	0.32	828,995	547,570	354,601	752,503
231,688	47,104	184,584	0.20	0.80	55,117		55,117	0.00	1.00	44,543	18,793	233,526	243,221
7,880	0	7,880	0.00	1.00	645,189	560,306	84,883	0.87	0.13	546,118	114,137	167,560	166,929
14,556		14,556	0.00	1.00	236,789	582	236,207	0.00	1.00	241,342	210,543	226,619	271,946
9,360		9,360	0.00	1.00	22,496		22,496	0.00	1.00				
30,304		30,304	0.00	1.00						30,486	30,773	28,694	39,805
44,860		44,860	0.00	1.00	236,789	582	236,207			271,828	30,773	28,694	39,805
389,011	52,923	336,088	0.14	0.86	225,143	31,389	193,754	0.14	0.86	341,150	405,246	364,027	353,843
309,752	217,034	92,718	0.70	0.30	40,782	0	40,782	0.00	1.00	71,852	99,981	94,155	70,192
					94,020	0	94,020	1.00		85,143	122,504	144,525	156,378
586,966	312,024	274,942	0.53	0.47	561,778	94,099	467,679	0.7	0.83	578,572	740,528	825,133	959,041
5,788		5,788	0.00	1.00	3,795		3,795	0.00	1.00	3,300	2,085	1,388	3,990
9,674		9,674	0.00	1.00	4,747		4,747	0.00	1.00		3,381	3,987	2,030

업종	1984년					1989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레이빙용 강구 제조업	60,220	46,588	13,632	0.77	0.23	901,449	85,507	815,942	0.09	0.91
방열기 합계**	1,266	51	1,215	0.04	0.96	60,154	18,756	41,398	0.31	0.69
박용전기방식제(조선용 기자재)	3,215		3,215	0.00	1.00	6,481		6,481	0.00	1.00
현장(조선용 기자재)										
박용송풍기(조선용 기자재)	4,986		4,986	0.00	1.00	22,552	2,716	19,836	0.12	0.88
선등(조선용 기자재)	17,227	6,085	11,142	0.35	0.65	70,514	8,403	62,111	0.12	0.88
부스공중전회 제조업	114,293	49,897	64,396	0.44	0.56	406,800	163,565	243,235	0.40	0.60
사내단지참 제조업										
노브 제조업										
동북강산 제조업	526,930	424,367	102,563	0.81	0.19	1,243,151	830,882	412,269	0.67	0.33
지대봉사 제조업	6,229	624	5,605	0.10	0.90	16,888	443	16,445	0.03	0.97
천막 제조업	34,642	8,766	25,876	0.25	0.75	32,634	458	32,176	0.01	0.99
세목직물 제조업										
세목직물 합계**	6,293	626	5,667	0.10	0.90	19,621	3,670	15,951	0.19	0.81
배낭, 수통피, 안전삼피 제조업	17,582	1,736	15,946	0.10	0.90	41,843	14,700	27,143	0.35	0.65
배낭, 수통, 안전삼피 합계**	17,682	1,736	15,946	0.10	0.90	41,843	14,700	27,143	0.35	0.65
직업장갑 제조업	59,821	16,737	43,084	0.28	0.72	83,241	4,429	78,812	0.05	0.95
책장 제조업	76,629	53,960	22,668	0.70	0.30	100,733	47,228	53,505	0.47	0.53
살형대 제조업										
박물관 잔열대 제조업										
기발 제조업	39,611	18,178	21,433	0.46	0.54	75,662	10,874	64,788	0.14	0.86
가늘쌈 제조업	1,909		1,909	0.00	1.00	577		577	0.00	1.00
스털프 제조업	168		168	0.00	1.00	1,577		1,577	0.00	1.00
흑탄 제조업	1,034		1,034	0.00	1.00	2,473		2,473	0.00	1.00
비 제조업	2,850		2,850	0.00	1.00	1,461		1,461	0.00	1.00
생냥 제조업	6,402		6,402	0.00	1.00	10,826		10,826	0.00	1.00
악기	102,802	98,881	3,921	0.96	0.04	331,013	283,032	47,981	0.86	0.14
장부책 제조업	2,273		2,273	0.00	1.00	2,854		2,854	0.00	1.00
회계장 제조업										
양초 제조업	2,621		2,621	0.00	1.00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필름										
이륜차용 안전모 제조업	23,119		23,119			116,333	33,631	82,702	0.29	0.71
염화비닐열수축라벨 제조업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127,906	89,296	38,610	0.70	0.50	244,307	174,947	69,360	0.72	0.28	213,394	292,500	341,382	425,386
82,306	73,696	8,610	0.90	0.10	22,318	0	22,318	0.00	1.00	21,230	19,707	27,310	36,708
5,853		5,853	0.00	1.00	70,349	30,457	39,892	0.43	0.57	118,233	116,642	221,458	
22,945		22,945	0.00	1.00									
45,330	115	45,215	0.00	1.00									
					57,632		57,632	0.00	1.00	104,074	102,537	80,202	187,400
					362,806	193,356	169,450	0.53	0.47	267,692	431,282	462,654	546,114
1,383,860	966,589	417,271	0.70	0.30	460,719	352,425	108,294	0.76	0.24	463,318	420,527	388,560	524,406
12,729		12,729	0.00	1.00	39,739	97	39,642	0.00	1.00	32,505			
48,336		48,336	0.00	1.00	23,673		23,673	0.00	1.00				
					19,584		19,584	0.00	1.00	42,408	41,723	38,245	45,582
34,141	210	33,931	0.01	0.99	80,942	1,823	79,119	0.02	0.98	117,373	129,734	115,731	125,731
41,960		41,960	0.00	1.00	23,031		23,031	0.00	1.00	32,246	61,648	94,401	20,120
41,960	0	41,960	0.00	1.00	35,703	0	35,703	0.00	1.00				
97,639	2,086	95,553	0.02	0.98	63,548		63,548	0.00	1.00	402,985	408,613	433,934	483,074
					100,165	57,640	42,525	0.58	0.42				
					5,747		5,747	0.00	1.00				
					14,195		14,195	0.00	1.00	24,626	15,820	24,558	27,075
71,415	12,234	59,181	0.17	0.83	88,397	17,129	71,268	0.19	0.81	1,149	885	854	1,290
410		410	0.00	1.00	736		736	0.00	1.00	12,718	9,496	12,274	18,749
463		463	0.00	1.00	711		711	0.00	1.00	10,246			
3,266		3,266	0.00	1.00	62,657	41,625	21,032	0.66	0.34	23,695	18,516	17,622	18,964
3,347		3,347	0.00	1.00	8,431		8,431	0.00	1.00				
6,708		6,708	0.00	1.00	6,455		6,455	0.00	1.00	6,200	3,864	2,489	4,899
384,915	326,998	57,917	0.85	0.15	437,586	375,810	61,776	0.86	0.14	344,044	354,297	360,496	81,578
10,542		10,542	0.00	1.00	2,186		2,186	0.00	1.00	2,790	2,180	2,791	5,044
					138,705	50,125	89,580	0.36	0.64	199,336	133,839	234,382	267,197
99,436		99,436	0.00	1.00	18,976	3,878	15,098	0.20	0.80	14,818	21,450	32,738	35,735
					6,295		6,295	0.00	1.00	17,856	22,630	108,215	49,366

업종	1984년					1989년				
	출하액			출하액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폴리에틸렌 포대 제조업	52,652	4,668	47,984	0.09	0.91	105,524	11,798	93,726	0.11	0.89
합성수지제 끈 제조업	2,600		2,600	0.00	1.00	8,701		8,701	0.00	1.00
크리타블락, 벽돌, 기와 제조업**	103,580	0	103,580	0.00	1.00	193,929	0	193,929	0.00	1.00
유리용 도기나 제조업	3,226		3,226	0.00	1.00	10,465		10,465	0.00	1.00
석유심지(석유노로 및 풍로용 심지)	30,255	7,861	22,374	0.26	0.74	65,079	43,794	21,285	0.67	0.33
구멍탄난로 제조업	272		272	0.00	1.00	236		236	0.00	1.00
구멍탄난로(구멍탄용 연소기)*	272	0	272	0.00	1.00	236	0	236	0.00	1.00
구멍탄용 연소기 제조업										
포프라제품(할저, 알음과자맛이, 목스핀)	9,221		9,221	0.00	1.00	20,734		20,734	0.00	1.00
유청청소업(선박청소업)										
폴리에틸렌 피복강판										
강관전주(Flange Type)										
삐뚤 제조업						14,701		14,701	0.00	1.00
소석회 제조업	6,655	742	5,913	0.11	0.89	11,337		11,337	0.00	1.00
유기계면활성제	22,616		22,616	0.00	1.00	76,480	21,145	55,335	0.28	0.72
조제계면활성제	13,498		13,498	0.00	1.00	30,412		30,412	0.00	1.00
부동액 제조업						5,064		5,064	0.00	1.00
브레이크액 제조업						6,679		6,679	0.00	1.00
황산알루미늄 제조업	7,796		7,796	0.00	1.00	23,275		23,275	0.00	1.00
고체가성소다 제조업	55,446	39,367	16,079	0.71	0.29	100,895	81,629	19,264	0.81	0.19
액상, 고상 염화아연 제조업	20,180	3,307	16,873	0.16	0.84	81,773	45,649	36,124	0.56	0.44
규산소다						24,402		24,402	0.00	1.00
총화소다										
기타 무기화합물	8,256		8,256	0.00	1.00	30,680		30,680	0.00	1.00
유성페인트 제조업	120,206	70,029	50,178	0.58	0.42	177,973	88,957	89,016	0.50	0.50
수성페인트 제조업	29,578	8,757	20,821	0.30	0.70	67,497	37,882	29,615	0.56	0.44
브레이크슈 및 라이닝	44,684	18,843	25,841	0.42	0.58	262,728	163,347	99,381	0.62	0.38
소화기 제조업						11,612		11,612	0.00	1.00
손목시계케이스(시계케이스 제외) 제조업	13,628	7,964	5,664	0.58	0.42	12,987		12,987	0.00	1.00
자동차인호스트**	13,628	7,964	5,664	0.58	0.42					
소방호스 및 소방용 금속구**						118,755	3,358	114,797		
소방호스 및 소방용구						47,091	10,043	37,048	0.21	0.79
가스미터기(산업용 제외)						3,616	518	3,098	0.14	0.86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184,933	72,106	112,827	0.39	0.61	219,352	18,753	200,599	0.09	0.91				
4,251		4,251	0.00	1.00	71,731		71,731	0.00	1.00	96,934		147,579	23,646
273,888	0	273,888	0.00	1.00	375,325	0	375,325	0.00	1.00	386,067	400,397	388,247	372,334
5,872		5,872	0.00	1.00	2,986		2,986	0.00	1.00	5,353	6,069	2,815	4,181
84,587	55,947	28,640	0.66	0.34	69,230	25,636	43,594	0.37	0.63	128,045	117,431	175,715	224,182
686		686	0.00	1.00	8,797	8,449	348	0.96	0.04				
686	0	686	0.00	1.00	8,797	8,449	348	0.96	0.04	752	68	0	271
19,942		19,942	0.00	1.00	17,542		17,542	0.00	1.00	14,079	16,999	118,694	7,672
					931,591	728,342	203,249	0.78	0.22	1,048,959	1,144,550	1,090,608	
					851,827	593,529	258,098	0.70	0.30	998,203	1,504,461	1,889,544	2,623,127
33,521	2,681	30,840	0.08	0.92	37,292	7,792	29,500	0.21	0.79	26,355	22,325	51,433	48,025
1,2932		12,932	0.00	1.00	14,759		14,759	0.00	1.00	16,397	17,904	22,194	21,759
121,338	61,486	59,852	0.51	0.49	130,861	19,852	111,009	0.15	0.85	149,242	138,404		
26,858		26,858	0.00	1.00	79,086		79,086	0.00	1.00	231,102	85,027	145,877	140,092
4,409		4,409	0.00	1.00	4,908		4,908	0.00	1.00	10,320	13,060	15,330	23,145
6,344		6,344	0.00	1.00	9,425		9,425	0.00	1.00	5,929	6,282	5,915	25,089
34,656		34,656	0.00	1.00	28,721		28,721	0.00	1.00	12,966	33,750	30,337	36,663
110,122	65,754	44,368	0.60	0.40	143,049	80,062	62,987	0.56	0.44	225,015	128,231	128,745	219,509
69,274		69,274	0.00	1.00	22,051	418	21,633	0.02	0.98		33,425	28,942	33,537
28,623		28,623	0.00	1.00	28,816		28,816	0.00	1.00	28,082			
					2,949		2,949	0.00	1.00	2,471			
35,428		35,428	0.00	1.00									
248,734	136,438	112,296	0.55	0.45	340,555	128,223	212,332	0.38	0.62	613,612	210,305	689,105	863,451
86,429	33,647	52,782	0.39	0.61	54,500	9,608	44,892	0.18	0.82	100,533	151,234	168,631	141,381
381,256	241,551	139,705	0.63	0.37									
16,155		16,155	0.00	1.00									
13,579		13,579	0.00	1.00	17,136	2,238	14,898	0.13	0.87	13,389	22,892	25,100	
					68,182	17,252	51,930	0.25	0.75	99,066	83,318	107,067	91,574
108,617	1,098	107,519			64,233	70	64,163	0.00	1.00	61,281	28,277	3,118	6,257
37,223		37,223	0.00	1.00	108,039		108,039	0.00	1.00	125,823	120,033	179,189	220,358
5,192		5,192	0.00	1.00	10,265	630	9,635	0.06	0.94	24,838	30,366	18,444	19,184

업종	1984년					1989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구명정(조선용) 기자재	1,547	62	1,485	0.04	0.96	10,344	729	9,615	0.07	0.93
피뢰탄기반 제조업										
콘크리타류(단자에 한함)										
화재경보기류	34,668	9,956	24,712	0.29	0.71	68,971	9,890	59,081	0.14	0.86
등인장기(형광등용) 제조업	2,277		2,277	0.00	1.00	20,765		20,765	0.00	1.00
정류기(4천 KW 이하) 제조업	9,662		9,662	0.00	1.00	14,294		14,294	0.00	1.00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업	9,665	7	9,658	0.00	1.00	67,532	42,470	25,062	0.63	0.37
저항용접기	2,246		2,246			23,002	4,877	18,125	0.21	0.79
전기도관용 조인트 및 부착물 제조업						1,763		1,763	0.00	1.00
아이크용접기	5,355		5,355	0.00	1.00	5,276		5,276	0.00	1.00
배선기구(육내용 소형스위치)						278,733	90,636	188,097	0.33	0.67
순방모직물 제조업	8,373	4,429	3,944	0.53	0.47	64,410	54,926	9,484	0.85	0.15
혼방방모직물 제조업	47,888	41,441	6,447	0.87	0.13	46,699	30,747	15,952	0.66	0.34
기타 솜 제조업	20,643		20,643	0.00	1.00	14,297	1,343	12,954	0.09	0.91
순방모사 제조업	66,405	4,226	62,179	0.06	0.94	79,603	10,493	69,110	0.13	0.87
혼방방모사 제조업	21,060	14,124	6,936	0.67	0.33	106,650	72,790	33,860	0.68	0.32
이불, 요 제조업	3,344		3,344	0.00	1.00	24,219	3,895	20,324	0.16	0.84
부직포	26,690		26,690	0.00	1.00	94,406	39,576	54,830	0.42	0.58
양말 제조업	17,441	2,937	14,504	0.17	0.83					
서가 제조업	7,031	4,602	2,429	0.65	0.35	13,597	7,230	6,367	0.53	0.47
싱크대**	29,357	1,951	27,406	0.07	0.93	148,997	69,348	79,649	0.47	0.53
척선반, 제조업										
보관상자 제조업										
학교용 책걸상 제조업	4,159		4,159	0.00	1.00	23,899		23,899	0.00	1.00
도서카드함 제조업										
공류 합계**	56,388	22,565	33,823	0.40	0.60	103,040	33,809	69,231	0.33	0.67
슬라이드화스나 제조업	40,734	26,390	14,354	0.65	0.35	96,864	75,993	20,871	0.78	0.22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필름	184,305	40,769	143,536	0.22	0.78	156,502	87,033	69,469	0.56	0.44
포리필름+발포폴리스티렌판	184,305	40,769	143,536	0.22	0.78	359,007	91,376	267,631	0.25	0.75
사진제판(자기공정용 제외)						18,860		18,860	0.00	1.00
출판	36,056	6,855	29,201	0.19	0.81	61,764	1,004	60,760	0.02	0.98
복층유리 제조업						10,696	1,668	9,028	0.16	0.84
정토기와 제조업						12,023		12,023	0.00	1.00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12,274		12,274	0.00	1.00	34,082	12,742	21,340	0.37	0.63	45,863	77,335	78,501	23,974
					61,077	7,497	53,580	0.12	0.88	144,543	195,894	189,850	248,525
95,299	1,938	93,361	0.02	0.98	147,093	21,272	125,821	0.14	0.86	221,589	148,756	142,138	104,176
22,901		22,901	0.00	1.00	32,875		32,875	0.00	1.00	44,640	44,540	57,888	83,609
18,104		18,104	0.00	1.00	39,188		39,188	0.00	1.00	37,250	19,927	35,245	37,110
32,310		32,310	0.00	1.00	74,311	30,345	43,966	0.41	0.59	56,800			
18,393		18,393	0.00	1.00	20,614		20,614	0.00	1.00	12,518	11,533	37,699	44,725
3,710		3,710	0.00	1.00	3,088		3,088	0.00	1.00	44,817	12,663	5,601	9,508
11,317	2,984	8,333	0.26	0.74	15,084		15,084	0.00	1.00	27,707	17,784	17,811	21,335
405,813	146,867	258,946	0.36	0.64	800,327	401,112	399,215	0.50	0.50	667,953	700,260	1,060,977	254,110
50,314	44,966	5,348	0.89	0.11	45,091	27,840	17,251	0.62	0.38	225,530	174,240	113,242	141,684
41,089	18,444	22,645	0.45	0.55	100,097	64,472	35,625	0.64	0.36				
12,727		12,727	0.00	1.00	1,639		1,639	0.00	1.00	20,953	15,876	19,663	21,615
58,899	3,659	55,240	0.06	0.94	63,747	1,290	62,457	0.02	0.98				
81,884	60,394	21,490	0.74	0.26	76,490	5,589	70,901	0.07	0.93				
24,783		24,783	0.00	1.00	2,538		2,538	0.00	1.00	11,309	9,963	10,382	10,753
117,295	43,956	73,339	0.37	0.63	145,747	62,328	83,419	0.43	0.57	17,576	57,283	91,098	18,320
100,981	15,799	85,182	0.16	0.84						27,268	34,250	39,900	43,483
47,314	38,065	9,249	0.80	0.20	12,374	342	12,032	0.03	0.97	211,782	300,046	388,586	367,451
134,359	37,625	96,734	0.28	0.72	257,539	147,750	109,789	0.57	0.43	291,084	463,751	503,815	502,245
										14,428	16,357	20,166	36,092
38,422	8,018	30,404	0.21	0.79	10,126		10,126	0.00	1.00	7,354	5,702	9,565	12,853
					1,329		1,329	0.00	1.00		2,559	7,105	10,972
95,570	18,002	77,568	0.19	0.81	46,953	10,409	36,544	0.22	0.78	1,144	1,407	1,430	1,762
91,827	67,895	23,932	0.74	0.26	59,783	34,351	25,432	0.57	0.43	17,231	3,993	8,263	9,154
220,126	128,637	91,519	0.58	0.42	234,486	16,878	217,610	0.07	0.93	246,080	298,699	312,188	394,773
470,479	128,607	341,872	0.27	0.73	389,517	67,003	322,514	0.17	0.83	498,578	432,538	546,570	661,970
19,808		19,808	0.00	1.00	63,597	457	63,140	0.01	0.99	58,488	41,812	111,821	12,011
77,166	4,139	73,027	0.05	0.95	112,540	10,265	102,275	0.09	0.91	162,766	139,061	151,271	167,222
15,310	2,059	13,251	0.13	0.87	54,186	2,411	51,775	0.04	0.96	77,859			
12,435		12,435	0.00	1.00	17,893		17,893	0.00	1.00	14,476	16,372	16,279	20,208

업종	1984년					1989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타일시멘트						74,544	51,420	23,224	0.69	0.31
배합사로 제조업						1,765,013	341,362	1,423,651	0.19	0.81
간치류 제조업						32,291	213	32,079	0.01	0.99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47,309	56	47,253	0.00	1.00	106,591	3,074	103,517	0.03	0.97
국산차						3,295		3,295	0.00	1.00
국산차 합계**	0	0	0			3,295	0	3,295	0.00	1.00
바이오에너지(왕겨탄, 홑남탄)						20,335	1,735	18,600	0.09	0.91
수산물 통조림	60,512	10,939	49,573	0.18	0.82	152,142	64,053	88,089	0.42	0.58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121,501	114,385	7,116	0.94	0.06	171,391	145,262	26,129	0.85	0.15
알루미늄압력솔	7,192		7,192	0.00	1.00	12,606		12,606	0.00	1.00
도금업(자기공정도 제외)	40,568		40,568							
개폐장치 및 노후장치부품 제조업	66,484	12,760	53,724	0.19	0.81	240,049	107,569	132,480	0.45	0.55
휴일탱크	5,439	4,822	10,617	0.31	0.69					
인테리어 제조업(TV 옥외 제외)	18,585	1,783	16,802	0.10	0.90	80,407	42,463	37,944	0.53	0.47
전기면도기	1,570		1,570	0.00	1.00	6,488		6,488	0.00	1.00
백열전구	15,172	1,966	13,206	0.13	0.87	25,579	16,487	9,092	0.64	0.36
섬유상감 제조업	8,201	600	7,601	0.07	0.93					
카탈리스트	5,238		5,238	0.00	1.00	8,241		8,241	0.00	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제조업						81,215	13,800	67,415	0.17	0.83
재생프라스틱제품 제조업	11,692	4,342	7,350	0.37	0.63	29,602		29,602	0.00	1.00
콘크리트선주	34,738	10,785	23,953	0.31	0.69	46,286	3,224	43,062	0.07	0.93
콘크리트파일	44,619	15,243	29,375	0.34	0.66	119,963	3,266	116,697	0.33	0.67
국산차										
만출 제조업	135,123	22,272	112,851	0.16	0.84	240,077	30,124	209,953	0.38	0.62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출하액 비중		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92,984	52,192	40,792	0.56	0.44	47,544		47,544	0.00	1.00	54,303	48,508	52,659	47,272
1,718,435	185,769	1,532,666	0.11	0.89	2,006,227	339,569	1,666,658	0.17	0.83	2,278,406	2,490,792	2,618,512	3,006,351
16,153	677	15,476	0.04	0.96	56,829		56,829	0.00	1.00	73,314	124,337	150,703	189,787
141,049	6,969	134,080	0.05	0.95	154,316	256	154,060	0.00	1.00	196,467	244,407	257,827	319,004
6,210		6,210	0.00	1.00	91,268	34,936	56,332	0.38	0.62	83,415	115,265	120,304	164,334
7,431	0	7,431	0.00	1.00	91,268	34,936	56,332	0.38	0.62	83,415	115,265	120,304	164,334
17,742	2,494	15,248	0.14	0.86	8,445	4,900	3,545	0.58	0.42	17,768	16,839	10,493	266,756
167,549	81,490	86,059	0.49	0.51	318,307	30,810	287,497	0.10	0.90	360,075	371,984	446,929	521,553
155,408	116,467	38,921	0.75	0.25									
20,570		20,570	0.00	1.00									
232,867	81,285	151,582	0.35	0.65									
102,629	52,007	50,622	0.51	0.49									
10,296	1,476	8,820	0.14	0.86	6,407	0	6,407	0.00	1.00				
26,802	2,555	24,247	0.10	0.90	7,768	1,000	6,768	0.13	0.87				
10,788		10,788	0.00	1.00						58,069	63,141	34,786	44,846
8,765		8,765	0.00	1.00						114,005	141,754	157,705	128,879
109,149	30,983	78,166	0.28	0.72									
24,487		24,487	0.00	1.00									
50,335	4,139	46,196	0.08	0.92	61,321	2,691	58,630	0.04	0.96				
143,186	19,942	123,244	0.14	0.86	213,668	22,779	190,889	0.11	0.89				
333,597	72,625	260,972	0.22	0.78	389,721	131,150	258,571	0.34	0.66	398,614	638,264	458,004	477,951

주 : \* 유사품목 합계, \*\* 다른 산업분류 코드의 동일품목 합계

### [부록 3] 고유업종 품목별 사업체수

업종	1984년 사업체수			1989년 사업체수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울타리철선 (철조망)*	1	13	14			
철망(망) 제조업*	5	244	249	5	367	372
쇠못 제조업**	5	411	416	4	592	596
스테인레스용접강관(장식용 구조용)				3	33	36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재생알루미늄	0	11	11	0	18	18
이연말 제조업	0	4	4	0	4	4
동모세관(외경 4mm 이하)				9	189	198
연관 제조업	0	8	8	0	8	8
이연 및 알루미늄 다이캐스팅(350톤 이하)	0	35	35			
고압가스용기(50L 이상)	2	19	21	4	40	44
도금업(자기공정도 포함)				1	67	68
땀납 제조업						
생석회	0	27	27	0	20	20
공업용 수성경석회	0	2	2	0	3	3
탄산가스(액화탄산, 고형탄산)	8	158	166	17	167	184
침강탄산칼슘 제조업				0	13	13
이연화 제조업				0	3	3
롤리체인 제조업	0	13	13	1	35	36
국물건조기 제조업	0	5	5	0	21	21
선반 제조업**	4	3	7	3	5	8
밀링기	5	21	26	5	34	39
정미기 제조업	0	12	12	0	19	19
상업용 저울(가정용 저울 포함)	0	20	20	0	20	20
오일크리너(오일클레어라이어 포함)	3	47	50	1	125	126
벽시계 제조업	1	20	21	1	24	25
탁삼시계 제조업	1	6	7	0	6	6
길이계(자에 한함) 제조업	0	7	7	1	12	13
용집기(전기용집기 제외) 제조업				0	5	5
인경렌즈(누진다초점 유리렌즈 제외)	1	22	23	0	34	34
인경태 제조업	3	38	41	2	125	127

1990년 사업체수			1991년 사업체수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0	18	18	17	14	21	19
5	367	372	0	112	112	124	133	115	127
2	591	593	0	52	52	400	51	56	55
12	70	82	2	12	14	15	14	21	
0	29	29	0	35	35		26	26	
0	4	4	0	3	3	3	5	5	
12	199	211	6	42	48	53	47	43	40
0	6	6							
4	47	51	1	28	29	31	35	26	26
0	28	28	0	29	29	30	12		
			3	9	12	18	24		19
0	20	20	0	21	21	22	25	21	23
0	4	4	0	2	2				
21	177	198	0	18	18	32	30	34	48
0	13	13	0	10	10	12	17	15	16
0	3	3	0	5	5	7			
0	34	34	0	9	9	7	7	15	23
0	18	18	0	17	17		15	11	13
8	15	23	6	47	53	36	44	43	44
5	39	44	3	46	49	33	33	34	37
0	10	10	0	12	12	24	26	29	27
0	22	22	0	20	20	27	35	20	26
3	162	165	0	10	10	12	30	32	63
0	14	14	1	32	33	27	32	44	50
0	5	5	1	18	19	18	31	29	28
0	17	17	0	11	11	10	13	9	13
0	6	6	0	6	6	3	21	15	20
0	23	23	1	33	34	42	44	44	48
0	107	107	0	121	121	124	181	201	216

업종	1984년 사업체수			1989년 사업체수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0	24	24
피난기구 제조업				0	105	105
축압기 제조업				1	110	111
선박용문(조선용 기자재)	0	87	87	0	70	70
박용관(이동식)조선용 기자재						
소형프렐라조선용 기자재	1	209	220	7	336	343
소형조타기(조선용 기자재)						
박용전선(조선용 기자재)	4	48	52	6	99	105
박용사다리(조선용 기자재)	5	189	194	5	199	204
조선용 기자재 합계**	23	600	623	22	838	860
일반선박 합계**	19	128	147	21	89	110
탱크크리닝머신 제조업				0	69	69
이어폰 제조업	8	112	120	10	155	165
어학슬슬기 제조업	5	45	50	9	139	148
전자메카폰 제조업	5	96	101	14	190	204
안테나 제조업				20	541	561
어학기자 합계**	20	287	307	57	1,076	1,133
인터폰(송수 1회선) 제조업 1						
인터폰(송수 1회선) 제조업 2	0	5	5			
헤드폰 제조업	1	29	30	5	25	30
다그네트선(0.5m/m 이하)	0	5	5	2	5	7
플러그부착코드 제조업	9	132	141	8	229	237
철심코어(전자기용 변성기용)						
리드와이어 제조업						
트랜스포머(AC/AC 승압 및 감압용)	8	23	31	10	103	113
전자기기용 휴즈 제조업	1	19	20	2	11	13
플러그 및 잭(3극수 이하)		3	4	1	10	11
컷아웃스위치(25KV 급)	1	19	20			
고장구간개폐기 합계**	4	128	132	9	113	122
리코로우저(27KV, 560A 이상, 10KV 급)						
면거즈 제조업	0	66	66	0	36	36
세폭직물 제조업		38	39	2	64	66
세폭직물 제조업						
지수제품(전지저수제품)						

1990년 사업체수			1991년 사업체수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1	20	21	0	4	14	16	15	17	19
1	126	127	1	265	266	266	435	403	406
2	17	19	0	41	41	37	44	46	38
0	82	82							
8	364	372							
9	104	113							
2	234	236							
20	924	944	1	82	83	143	108	171	212
21	95	116	19	80	99	103	230	217	224
0	67	67							
8	162	170				15	18	19	23
6	148	154	177	1,318	1,495	1,416	1,506	1,390	1,428
11	180	191				62	46	41	25
53	592	645				40	53	55	51
81	1,156	1,237	177	1,318	1,495	1,250	1,312	1,199	1,289
4	277	281	0	7	7				
2	3	5	0	4	4	9	6	11	7
3	21	24				22	26	23	26
1	14	15	3	12	15	15	18	21	21
14	255	269	1	26	27	40	43	51	58
9	104	113	1	71	72	68	76	83	57
2	12	14	0	8	8	9	10	19	18
1	10	11	0	12	12	33	35	46	37
			6	88	94	88	81	79	63
7	118	125	0	26	26	35	23	66	76
0	33	33	0	16	16	8	4		
1	65	66	1	101	102				
			0	11	11	78	88	82	91
			3	72	75	150	175	174	161

업종	1984년 사업체수			1989년 사업체수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타올 제조업 합계**	2	154	156	2	217	219
폴리프로필렌 직물포대 제조업						
포장용 직물포대 제조업	1	20	21	1	117	118
폴리프로필렌 포대(포장용 직물포대)*	1	20	21	1	117	118
기타침구 및 관련제품(장난)						
자수제품(전자자수제품)	4	68	72	5	152	157
배낭, 수통피, 안전삼피 제조업						
면이불솜 제조업	0	62	62	0	51	51
양말 편조업(스타킹류를 제외)				4	173	177
장갑 편조업				1	83	84
가방 제조업	7	187	194	3	366	369
핸드백 제조업	7	82	89	3	122	125
휴대용케이스류 제조업	0	8	8	0	19	19
탁구대 제조업						
기타 낚시장비 제조업	3	76	79	2	125	127
봉제완구 제조업	9	102	111	3	92	95
유이용 승용물 합계**	0	19	19	1	25	26
구조장식품(의복장식) 제조업				1	130	131
크레용파스텔 제조업	0	6	6	0	8	8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	0	4	4	0	8	8
지우개 제조업	0	7	7	0	10	10
우산 제조업	0	18	18	0	20	20
양산 합계**	0	7	7	0	15	15
화장용 분철 및 패드 제조업	0	34	34	0	40	40
미네링 제조업	0	78	78			
거울판(거울을 포함함) 제조업	0	2	2	1	30	31
카본지 제조업	0	6	6	1	8	9
노트 제조업	0	46	46	0	41	41
일기책 제조업	0	8	8	0	8	8
연습장 제조업	1	108	109	0	88	88
얇범 제조업	1	40	41	0	46	46
비인더 제조업						
연희장 제조업	0	6	6	0	30	30
물감 제조업	0	8	8	0	9	9

1990년 사업체수			1991년 사업체수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0	154	154	2	94	96	43	42	0	41
			0	45	45	102	87	85	82
2	112	114	1	107	108	18	23	20	24
2	112	114	1	152	153	120	110	105	106
			0	15	15	19	14	19	14
5	159	164	3	153	156	38	23	31	27
			0	22	22	16	7	4	5
0	52	52	0	45	45				
2	165	167	4	201	205	170	181	155	170
0	56	56	0	58	58	66	81	87	93
2	326	328	4	401	405	369	404	377	417
4	118	122	3	121	124	134	164	167	148
0	26	26	1	18	19	16	20	32	35
0	133	133	0	3	3	2	2	3	3
0	133	133	0	145	145	137	141	138	142
4	81	85	3	199	202	130	103	87	85
0	25	25	0	31	31	21	27	26	18
0	149	149	0	160	160	167	221	227	187
1	8	9	1	6	7	12	9	7	10
0	8	8	0	6	6	8			
0	8	8	0	8	8	8			
0	21	21	0	30	30	33	34	26	28
0	20	20	0	27	27	22	31	28	24
0	30	30	0	15	15	6	5	10	10
1	108	109	0	11	11	13	11	14	17
1	33	34	0	36	36	51			
0	5	5	0	8	8	4	8	9	6
0	38	38	0	59	59	59	65	72	73
0	4	4							
0	84	84							
0	49	49	0	52	52	51	50	53	54
			0	33	33	37	44	39	44
0	31	31	4	283	287	156	163	146	113
0	8	8	0	10	10	12	11	6	11

업종	1984년 사업체수			1989년 사업체수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골판지상자 제조업	3	392	395	2	670	672
골판지상자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3	21	34	0	33	33
골판지상자(골판지)·	6	413	429	2	703	705
크리프트지 포타 제조업	1	39	40	0	41	41
종이 컵 합계**	0	19	19	0	42	42
습강지 합계**	0	16	16	1	23	24
판지상자 제조업	2	123	125	0	243	243
광택재 합계**	0	9	9	1	11	12
세탁비누 제조업	4	20	24	3	6	9
양초 합계**	0	14	14	0	19	19
재생타이어 제조업		27	28	1	34	35
교무장갑 제조업	2	2	4	0	5	5
발포폴리스티렌(EPS)의 판 및 판 제조업					174	175
폴리스티렌 패이퍼쉬트 제조업	0	79	79			
발포폴리 패이퍼쉬트(폴리내포장)·	0	79	79	0	0	0
주방용 프라스틱제품				1	139	140
프라스틱용기 및 육고상자 합계**	4	151	155	1	236	237
상업 인쇄업	0	162	162	0	213	213
재생프라스틱원료 제조업				0	54	54
절착재 제조업				3	19	22
연마지석 합계**	0	21	21	0	32	32
연마지 및 프 제조업	0	14	14	0	11	11
아스콘(이동식 간이설비 제외)				1	123	124
위생약품용 유리제품	4	18	22	2	19	21
화장품용 유리제품	1	5	6	2	14	16
위생약품용 유리(화장품용 유리)·	5	23	28	4	33	37
미강류 제조업	0	27	27	0	11	11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기타 식물성기름)						
미강유(식용정제 및 가공유)·	0	27	27	0	11	11
옥수수기름 제조업	0	3	3	0	5	5
식물성유지 제조업(옥수수유, 옥배유)	0	5	5	19	62	81
옥수수기름(식물성옥배유)·	0	8	8	19	67	86
서류전분(감자전분 제외)	4	68	72	4	50	54



1990년 사업체수			1991년 사업체수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2	702	704	0	45	45	58	80	98	108
			0	719	719	750	749	806	813
0	36	36	0	45	45	58	80	98	108
2	738	740	0	809	809	866	909	1,002	1,029
0	45	45	0	43	43	47	52	56	51
0	38	38	0	86	86	51	43	54	46
1	20	21	4	111	115	120	124	130	143
0	233	233	0	182	182	140	188	216	205
0	11	11	1	26	27	27	26	29	32
3	10	13	4	7	11	12	13	17	17
0	14	14	0	16	16	18	26	9	27
1	28	29	0	37	37	33	34	38	28
1	8	9	2	36	38	40	38	31	31
1	203	204	0	32	32	50			
			0	135	135	160	200	221	239
0	0	0	0	135	135	160	200	221	239
0	205	205	0	155	155				
3	226	229	6	326	332	292	346	328	370
			4	844	848	99	8		
0	55	55	0	58	58	42	39	51	64
2	128	130	3	139	142	153	158	132	139
0	34	34	0	32	32	29	39	38	50
1	10	11	0	11	11	13	15	18	5
0	147	147	1	145	146	175	221	240	257
3	15	18	6	44	50	45	49	50	39
2	13	15							
5	28	33	6	44	50	45	49	50	39
0	9	9	0	8	8				
			1	7	8		5	7	14
0	9	9	1	15	16		5	7	14
0	6	6	0	8	8	7			
9	80	89	1	10	11	14	12	9	8
9	86	95	1	18	19	21	12	9	8
3	50	53	4	50	54	51	54	52	56

업종	1984년 사업체수			1989년 사업체수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동물약품(원료동물약품을 제외)	2	55	57	1	56	57
양곡 도정업				5	147	152
국수 제조업		74	75	0	73	73
당면 제조업	0	54	54	0	67	67
두부 제조업	0	203	203	0	200	200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						
의료용 물질생성기(이온수기) 제조업				2	42	44
의료용 수술기구류 제조업						
보청기 제조업				0	4	4
어육연제품(맛살류를 제외)				9	141	150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적외장어 조미기공제품 제조업						
봉합침 제조업				0	5	5
자기치료기 제조업						
석건재 제조업	3	493	496	4	640	644
석공예 제조업						
석건재(석공예)·	3	493	496	4	640	644
증기보일러				6	227	233
난방용 보일러	0	38	38	2	72	74
버너 합계**	14	176	190	2	33	35
가정용 보일러(가스용을 제외)	0	103	103	0	68	68
기타 비운활유(프로세스유) 제조업	0	15	15	0	5	5
전기절연유(1종 광유계)				0	16	16
기타 비운활유(전기절연유)·	0	15	15	0	22	22
해면양식						
수산물 냉동냉장	8	129	137	8	195	199
음반 및 녹음테이프 합계**	9	53	62	2	96	98
철재 학생용 책걸상 합계**	0	44	44			
수동식별부 제조업	12	220	232	10	462	472
동력탈곡기 제조업	0	29	29	0	18	18
사료절단기 제조업	0	31	31	0	25	25
베어링용 강구 제조업	3	40	43	20	190	210
방열기 합계**	1	7	8	5	18	23
박용전기방식제(조선용 기자재)	0	10	10	0	15	15

1990년 사업체수			1991년 사업체수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1	69	70	0	32	32	39	40	41	34
3	135	138	0	106	106	141	226	281	349
0	72	72	0	80	80	81	89	77	83
1	72	73	0	67	67	61	64	57	48
0	201	201	0	203	203	207	209	207	190
0	16	16	1	44	45				
3	61	64	1	108	109	110	103	103	117
			0	53	53				
0	4	4	0	2	2	2	6	5	9
12	148	160	2	139	141	55	70	63	65
			9	113	122	135	145	151	148
			4	165	169				
0	4	4				41	48	42	52
						55	64	67	
4	671	675	2	745	747	803	916	886	935
4	671	675	2	745	747				
7	241	248	6	185	191	178	95	227	63
2	67	69	0	22	22	15	18	25	26
0	10	10	3	77	80	62	77	68	61
0	63	63	1	56	57	67	59	49	43
0	5	5	1	4	5	6	2	0	3
0	18	18				7	10	10	12
						7	10	10	12
6	200	206	4	213	217	230	261	230	210
10	106	116	0	43	43	48	66	51	51
1	82	83	0	197	197	194	244	251	253
14	506	520	9	414	423	455	569	588	633
0	16	16	0	12	12	13	11	8	9
0	22	22	0	19	19		13	11	8
5	62	67	11	81	92	93	107	100	114
4	7	11	0	42	42	27	36	34	38
0	12	12	1	82	83	143	108	171	

업종	1984년 사업체수			1989년 사업체수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현청(조선용 기자재)						
박용송풍기(조선용 기자재)	0	13	13	2	34	36
선동(조선용 기자재)	3	44	47	2	85	87
부스공중전화 제조업	6	130	136	8	251	259
시내단지함 제조업						
노드 제조업						
동복강선 제조업	15	104	119	20	174	194
지대봉사 제조업	2	15	17	2	24	26
천막 제조업	3	27	30	1	47	48
세폭직물 제조업						
세폭직물 합계**	1	38	39	2	64	66
배낭, 수통피, 안전삼피 제조업	1	33	34	1	37	38
배낭, 수통, 안전피 합계**	1	33	34	1	37	38
직업장갑 제조업	6	79	85	1	103	104
책장 제조업	12	158	170	1	248	249
실험대 제조업						
박물관 진열대 제조업						
가발 제조업	5	48	53	1	72	73
가늌척 제조업	0	9	9	0	4	4
스탐프 제조업	0	3	3	0	6	6
흑판 제조업	0	7	7	0	12	12
비 제조업	0	11	11	0	12	12
성냥 제조업				2	182	184
악기(리코더, 실로폰, 소고, 탬버린, 국악기)	7	21	28	1	101	102
장부책 제조업	0	37	37	0	23	23
회계장 제조업						
양초 제조업	0	14	14			
플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필름						
발포폴리스티렌(EPS) 내포장용 성형제품						
이륜차용 안전고 제조업	0	65	65	1	145	146
염화비닐열수축리벨 제조업						
플리에틸렌 프대 제조업	2	143	145	1	165	166
합성수지 제 끈 제조업	0	14	14	0	8	8
콘크리트 블록, 벽돌, 기와 제조업 합계**	0	2,317	2,317	0	1,914	1,914

1990년 사업체수			1991년 사업체수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0	42	42							
1	86	87							
			0	78	78	85	76	64	83
			2	161	163	199	252	262	330
26	186	212	7	33	40	46	52	53	55
0	24	24	1	41	42	30			
0	50	50	0	20	20				
			0	22	22	49	47	35	35
1	65	66	1	134	135	127	135	117	126
0	45	45	0	43	43	35	25	25	25
0	45	45	0	65	65	51	32	29	30
1	97	98	0	84	84	76	83	70	73
			7	200	207	207	246	196	227
			0	23	23	28	25	28	33
			0	14	14		12	17	30
1	73	74	1	69	70	57	59	63	56
0	3	3	0	5	5	4	4	3	5
0	3	3	0	3	3	3	4	3	5
0	14	14	2	56	58	49	48	52	44
0	15	15	0	18	18	18	18	12	18
2	183	185							
5	104	109	5	45	50	50	47	50	56
0	28	28	0	12	12	12	9	13	10
			3	74	77	77	80	80	77
0	175	175	1	23	24	23	25	25	28
			0	10	10	14	21	35	42
4	198	202	4	174	178				
0	8	8	0	150	150	183		286	53
0	1,828	1,828	0	1,958	1,958	1,987	1,902	1,641	1,503

업종	1984년 사업체수			1989년 사업체수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유리용 도가니 제조업	0	22	22	0	16	16
석유심지(석유난로 및 풍로용 심지)	0	0	0	0	23	23
구멍탄난로 제조업	0	15	15	0	5	5
구멍탄난로(구멍탄연소기)*						
구멍탄용 연소기 제조업				0	6	6
포포라제품	0	87	87	0	119	119
유장청소업(선박청소업)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강관전주(Flange Type)						
쌀통 제조업				0	8	8
소석회 제조업	1	20	21	0	29	29
유기계면활성제	0	21	21	1	32	33
조제계면활성제	0	13	13	0	21	21
부동액 제조업				0	4	4
브레이크액 제조업				0	9	9
황산알루미늄 제조업	0	19	19	0	22	22
고체가성소다 제조업	2	10	12	2	11	13
액성, 고상 염화아연 제조업	4	23	27	4	39	43
규산소다				0	17	17
황화소다						
기타 무기화합물	0	6	6	0	13	13
유성페인트 제조업	4	40	44	6	36	42
수성페인트 제조업	3	43	46	4	34	38
브레이크슈 및 라이닝	3	59	62	9	128	137
소화기 제조업				0	12	12
손목시계케이스(이형케이스 제외) 제조업	3	15	18	0	23	23
전동제인호이스트 합계**				1	49	50
소방호스, 소방용 금속구 합계**				4	137	141
소방호스 및 소방용구				2	53	55
가스미터기(산업용 제외)				1	6	7
구명정(조선용 기저재)	1	6	7	1	27	28
피로탄기반 제조업						
콘크리타류(단자)						
화재경보기류	6	42	48	1	94	95

1990년 사업체수			1991년 사업체수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0	17	17	0	13	13	13	14	10	10
0	36	36	3	138	141	144	122	99	108
0	5	5	1	4	5				
						6	2		3
0	3	3	0	10	10				
0	100	100	0	83	83	60	59	53	37
			6	29	35	32	42	39	
			14	101	115	130	261	219	265
1	16	17	1	15	16	13	15	20	16
0	23	23	0	24	24	22	31	29	29
2	30	32	1	39	40	40	48		
0	17	17	0	29	29	22	35	39	38
0	5	5	0	8	8	9	12	8	11
0	8	8	0	9	9	9	10	12	9
0	28	28	0	29	29	2	37	35	35
3	13	16	4	20	24	24	24	23	30
0	49	49	1	21	22		24	22	25
0	18	18	0	16	16	14			
			0	3	3	2			
0	15	15							
5	35	40	3	46	49	53	57	54	56
4	42	46	1	44	45	44	44	36	34
10	145	155							
0	9	9							
0	23	23	1	27	28	29	33	40	
0	69	69	2	62	64	53	82	86	71
3	135	138	2	55	57	47	48	4	6
0	56	56	0	122	122	111	97	116	122
0	9	9	1	10	11	11	11	9	11
0	30	30	1	40	41	49	77	76	40
			1	44	45	66	104	102	96
1	112	113	5	150	155	171	177	145	99

업종	1984년 사업체수			1989년 사업체수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등안정기(형광등용) 제조업	0	10	10	0	32	32
정류기(4천 KW 이하) 제조업	0	40	40	0	29	29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업	1	28	29	1	50	51
저항용접기	0	8	8	1	14	15
전기도관용 조인트 및 부착물 제조업				0	11	11
아아크용접기	0	2	12	0	18	18
배선기구(옥내용 소형스위치)				14	290	304
순방모직물 제조업	2	7	9	5	10	15
혼방방모직물 제조업	10	16	26	5	19	24
가타 슝 제조업	0	37	37	2	35	37
순방모시 제조업	2	24	26	3	22	25
혼방방모시 제조업	7	8	15	9	11	20
이불, 요 제조업	0	15	15	1	37	38
부직포	0	27	27	3	61	64
양말 제조업	3	57	60			
서가 제조업	4	58	62	1	82	83
싱크대 합계**	2	30	32	5	170	175
책선반 제조업						
보관상자 제조업						
학교용 책걸상 제조업	0	49	49	0	71	71
드서카드함 제조업						
공류 합계**	9	66	75	9	75	84
슬라이드화스나 제조업	3	38	41	2	42	44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필름	5	210	215	3	63	66
폴리 에틸렌(발포폴리스티렌관)*	5	210	215	4	237	241
사조제관(자기공정용을 제외)				0	71	71
흑관	3	36	39	1	52	53
복층유리 제조업				1	16	17
절토기와 제조업				0	49	49
타일시멘트(타일용 혼합시멘트)				3	17	20
배합사료 제조업				6	76	82
김치류 제조업				1	79	80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1	201	202	1	228	229
국산차				0	23	23



1990년 사업체수			1991년 사업체수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0	33	33	0	46	46	57	59	69	63
0	35	35	0	39	39	41	36	44	45
0	50	50	2	70	72	69			
0	19	19	0	16	16	12	12	20	16
0	7	7	0	5	5	6	12	7	9
2	18	20	0	15	15	19	22	21	18
3	369	382	22	386	408	236	399	304	184
7	12	19	7	22	29	24	26	23	16
4	17	21	5	14	19				
0	33	33	0	3	3	26	32	33	32
3	35	38	3	29	32	30	33	20	21
9	10	19	5	29	34				
0	44	44	0	8	8	16	40	10	7
4	69	73	4	73	77	35	36	39	30
1	97	98							
2	77	79	1	66	67	53	65	60	62
5	186	191	9	213	222	262	386	388	477
1	68	69	0	37	37	41	62	64	71
			0	5	5				
3	78	81		36	37	30	24	22	19
3	40	43	2	43	45	45	56	51	50
4	70	74	2	214	216	221	240	251	246
5	273	278	5	320	325	348	320	331	323
0	70	70	1	253	254	90	75	261	7
2	51	53	3	48	51	68	62	61	70
1	18	19	1	38	39	51			
0	44	44	0	46	46	39	41	34	35
3	19	22	0	31	31	21	29	37	43
5	80	85	7	79	86	88	110	112	117
	82	83	0	92	92	115	173	185	220
3	211	214		206	207	195	219	109	126
0	25	25	3	138	141	144	122	99	108

업종	1984년 사업체수			1989년 사업체수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국산차 합계**						
바이오에너지(왕겨탄, 톱밥탄)				1	29	30
수산물 통조림	11	87	98	6	101	107
백열전구	2	30	32	2	35	37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7	25	32	8	51	59
알루미늄압력솔	0	47	47	0	28	28
도금업(자기공정도 제외)	0	240	240			
개폐장치 및 보호장치부품 제조업	4	128	132	9	213	222
휴열탱크	3	48	51			
안테나 제조업(TV 육외 제외)	2	34	36	4	51	55
전기면도기	0	7	7	0	16	16
섬유장갑 제조업	2	53	55			
카니발용품	0	21	21	0	21	2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제조업	0	13	13	0	10	10
재생프라스틱제품 제조업	1	57	58	0	96	96
콘크리트전주	5	15	20	1	52	53
콘크리트파일	5	18	23	2	27	29
국산차	1	21	22	4	20	24
맨홀 제조업	12	174	186	10	151	161

1990년 사업체수			1991년 사업체수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기업체수
0	11	11							
1	29	30	1	14	15	18	26	21	22
6	92	98	16	248	264	223	260	173	170
1	28	29	1	14	15				
7	43	50							
0	21	21							
7	218	225							
3	74	77							
1	14	15	0	5	5				
0	44	44							
0	14	14							
0	9	9	0	9	9	8	7	4	8
0	92	92							
2	19	21	3	19	22				
4	36	40	4	45	49				
3	20	23	3	23	26	29	31	36	35
8	193	201	13	192	205	202	225	217	196

주 : \* 유사품목 합계, \*\* 다른 산업분류 코드의 동일품목 합계

### [부록 4] 고유업종 품목별 평균출하액

종 업	1984년			1989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올더리 철선(철조망)*	1,515.9	12,483.0	673.8	1,108.4	242.0	1,175.0
출망(강) 제조업*	408.1	2,433.4	458.4	705.6	4,052.2	660.0
소곳 합계**	439.2	4,164.6	393.9	633.5	9,254.5	575.2
스텐리스 용접강관(장식용 구조용)				4,998.5	18,947.0	3,730.4
주물 및 다이캐스팅용 저생일루미늄			952.6			5,252.2
아연말 제조업			5,731.0			4,556.5
동모세관(외경 4mm 이하)				3,416.0	41,205.0	1,516.5
연과 제조업			320.5			264.8
아연 및 갈루미늄 다이캐스팅(350톤 이하)			238.7			
그업가스용(50L 이상)	367.0	89.5	358.5	2,556.5	13,982.3	1,413.9
도금업(자기공정도 포함)				378.5	3,368.0	333.9
택날 제조업						
성석회			405.7			812.5
공업용수 성경석회			43.0			162.7
탄사가스(액화탄산, 고행탄산)	528.3	1,111.4	474.8	741.5	813.5	734.2
침강탄산칼슘 제조업						1,256.2
아연화 제조업						3,806.3
롤리체인 제조업			303.1	722.9	5,914.0	574.6
곡물건조기 제조업			292.6			931.9
선반합계**	1,254.7	2,002.8	110.3	12,287.9	28,473.0	2,576.8
밀루기	707.1	1,089.2	497.7	1,974.6	7,813.4	1,116.0
정미기 제조업			110.3			240.7
상업용 저울(아정용 저울 포함)			188.9			547.2
오일크리너(오일클래리파이어 포함)	419.2	1,251.0	344.2	620.5	1,384.0	614.4
벽시계 제조업	508.6	1,279.0	447.7	652.4	1,753.0	606.5
탁상시계 제조업	740.6	389.0	685.0			200.8
길이계(자) 제조업			190.6	535.8	1,269.0	474.8
용접기(전기용접기를 제외) 제조업						421.6
안경렌즈(누진다초점 유리렌즈 제외)	224.8	70.0	221.8			556.0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664.4	4,132.0	375.4	2,243.2		2,243.2	792.9	539.8	636.7	966.5
702.7	3,656.4	662.5	630.0		630.0	631.3	777.9	860.1	811.0
761.4	18,200.5	702.4	1,802.5		1,802.5	1,027.3	2,225.0	2,349.0	2,176.3
2,893.5	11,808.3	1,365.2	11,048.5	29,906.5	7,905.5	7,466.9	22,892.9	14,649.7	
		4,814.1			2,439.1		5,001.1	7,529.2	
		7,096.5			3,409.0	5,165.7	7,387.4	5,611.8	
3,760.8	35,507.3	1,846.4	5,773.5	32,438.0	1,964.3	4,515.4	4,456.1	6,658.3	9,892.9
		73.5							
2,557.1	13,961.5	1,586.5	2,074.9	743.0	2,122.4	2,822.7	2,197.9	2,534.7	2,584.5
		451.8			548.9	747.2	1,182.6		
			10,293.3	21,777.3	6,465.2	7,816.6	7,855.5		10,773.5
		1,032.5			1,253.4	1,491.3	1,994.7	2,504.6	2,244.0
		62.3	55.0	0.0	55.0				
957.5	783.3	978.1			1,144.5	813.5	672.5	1,066.0	1,460.5
		1,240.1			1,766.7	1,895.8	2,555.1	2,805.8	4,014.9
		6,731.3			3,843.8	4,056.0			
		809.0			1,630.7	555.4	2,192.1	2,447.4	2,758.9
		1,329.0			1,525.5		4,813.3	4,268.1	4,576.8
7,328.0	12,321.1	4,664.9	2,044.5	4,630.5	1,714.4	2,065.4	1,153.9	2,003.5	3,032.5
1,801.2	7,334.6	1,091.8	1,682.7	8,772.7	1,220.3	1,506.2	1,558.9	3,143.5	3,665.4
		333.8			277.8	325.3	459.2	711.7	660.5
		633.0			1,021.5	1,010.7	909.6	1,725.5	1,722.2
725.2	5,027.0	645.5			973.6	513.0	680.9	1,148.0	1,615.6
		559.9	507.0	1,067.0	489.5	516.6	589.3	783.9	647.2
		446.6	1,513.0	1,084.0	1,036.8	1,797.9	628.5	731.1	961.0
		332.2			610.2	792.8	674.1	426.0	982.0
		283.3			597.3	325.7	538.6	4,006.8	675.2
		564.7	964.6	4,807.0	848.2	927.2	1,154.2	1,127.0	1,279.9

업종	1984년			1989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안경테 제조업	658.5	5,158.7	281.1	427.0	2,526.0	393.4
자동소화기 제조업						1,249.3
파난기구 제조업						1,025.7
축압기 제조업				454.7	884.0	450.8
선박용문(조선용 기자재)			226.5			387.3
박용관이음쇠(조선용 기자재)						
소형프로펠러(조선용 기자재 직경 4천 mm 이하)	711.9	9,622.0	230.8	825.2	17,938.0	468.6
소형조타기(조선용 기자재)						
박용전선(조선용 기자재)	2,391.8	20,638.5	804.2	3,193.2	33,918.0	1,331.1
박용시다리(조선용 기자재)	452.8	5,444.4	312.5	747.7	7,784.4	570.9
조선용 기자재 합계*	664.5	9,639.3	320.4	1,043.6	17,232.5	618.6
일반선박(500G/T 이하에 한함)	26,514.5	100,692.3	661.1	20,905.3	59,713.9	1,952.3
일반선박(500G/T 이하에 한함)			75.9			103.9
일반선박 합계**	13,385.1	100,692.3	425.5	12,206.5	59,713.9	996.9
탱크크레인마신 제조업						332.8
이어폰 제조업	496.4	3,328.4	274.5	789.3	5,971.2	455.0
여학실습기 제조업	1,198.1	8,115.8	386.5	1,256.5	12,175.4	549.6
전자머가폰 제조업	459.2	3,730.6	274.5	1,350.9	10,606.3	668.9
안타나 제조업				1,790.5	12,155.8	1,407.3
여학기재 합계*	600.8	4,382.1	337.3	1,479.8	10,585.2	997.5
인터폰(송수 1회신여 한함) 제조업 1						
인터폰(송수 1회신여 한함) 제조업 2			874.2			
핸드폰 제조업	685.4	2,730.0	594.4	1,861.0	6,731.0	887.0
마그네트선(0.6m/m 이하인 제품에 한함)			616.8	13,630.6	26,849.5	8,343.0
플러그부착코드 제조업	503.3	3,607.0	273.1	911.9	7,038.4	697.9
철심코어(전자기기용 변성기용에 한함)						
리드와이어 제조업						
트랜스포머(AC/AC 송압 및 강압용으로 관선된 상태에 한함)	3,194.7	9,194.0	822.0	2,334.6	15,793.1	1,027.9
전자기기용 휴즈 제조업	382.5	1,202.0	322.4	3,131.8	18,913.0	262.5
솔라그 및 팩(3극수 이하의 것에 한함)	8,383.5	27,758.0	1,444.0	8,793.7	53,830.0	4,290.1
컷아웃스위치(25KV 급에 한함)	382.5	1,202.0	322.4			
고장구간 자동가폐기(25.8K, 400A, 15KV 급에 한함)	503.7	3,190.0	407.0	1,967.6	11,952.1	1,172.4
고장구간 자동가폐기(25.8K, 400A, 15KV 급에 한함)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553.7			583.0	701.8	708.8	763.8	810.7
1,600.4	6,303.0	1,365.3			1,811.8	2,260.7	2,109.9	2,388.4	2,176.4
1,196.3	26,548.0	995.1	1,293.4	90,715.0	956.0	1,072.3	780.4	913.7	1,054.4
2,280.6	2,043.0	2,308.5			601.4	1,274.5	787.0	647.6	1,297.5
		415.1							1,736.7
963.4	14,805.5	659.2							
3,704.9	32,419.8	1,220.0							
506.7	1,295.5	499.9							
1,064.4	20,646.4	640.5	847.6	30,457.0	486.5	826.8	1,080.0	1,295.1	1,736.7
28,863.4	99,755.5	1,294.5	47,292.1	155,640.0	2,539.7	59,473.5	21,111.4	28,058.3	32,177.7
		141.8			138.3	167.1	187.2	161.5	154.5
18,711.8	99,755.5	796.9	31,097.9	155,640.0	1,519.1	43,351.4	16,016.8	21,887.6	25,887.4
		513.5							
645.5	3,703.4	494.5				1,207.8	1,316.6	1,160.8	1,111.0
1,353.7	18,435.8	661.1	5,168.8	36,151.2	1,008.0	6,095.6	5,337.3	6,536.0	7,203.5
1,971.5	23,111.1	679.7				2,057.8	2,961.5	2,422.8	2,996.8
2,278.1	15,213.8	1,120.0				1,063.3	1,100.4	952.9	1,300.6
1,832.5	15,466.7	877.1	5,168.8	36,151.2	1,008.0	6,717.8	5,901.2	7,366.8	7,831.3
1,231.3	23,762.3	906.0			1,711.1				
30,203.8	74,367.0	761.7			3,471.5	3,613.7	1,143.3	897.7	2,252.0
2,300.9	12,630.3	825.3				1,933.8	2,182.5	2,491.0	3,228.7
9,940.3	71,068.0	5,574.0	5,196.9	18,934.0	1,762.7	13,202.9	10,866.6	11,173.8	17,040.4
1,188.7	9,706.0	721.1	2,401.7	24,003.0	1,570.8	2,444.2	2,714.2	2,961.3	2,909.1
2,448.2	16,352.6	1,244.9	3,760.6	142,640.0	1,804.5	3,784.3	4,328.2	3,593.0	5,125.0
4,848.4	32,246.5	282.0			790.4	1,476.1	2,088.7	823.8	673.5
8,029.1	60,248.0	2,807.2			731.4	604.5	691.3	692.6	763.2
			1,702.0	6,816.3	1,353.3	1,723.0	1,474.1	1,398.0	2,095.1
1,862.9	11,613.6	1,284.5				1,590.4			
					593.9	673.0	3,934.7	3,096.3	3,050.2

업종	1984년			1989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고장구간계폐기: 합계**	503.7	3,190.0	407.0	1,967.6	11,952.1	1,172.4
리크로우저(27KV, 56CA 이상, 10KV 급에 한함)						
던커즈 제조업			110.7			276.0
세죽직물 제조업	161.4	626.0	149.1	297.3	1,835.0	249.2
세죽직물 제조업						
지수제품(전자지수제품에 한함)						
타올 제조업			218.2	511.2	3,604.0	491.1
타올 제조업	422.1	1,001.5	255.2	863.0	16,477.0	615.2
타올 제조업						
타올 합계**	233.9	1,001.5	223.9	614.0	10,040.5	527.1
폴리프로필렌 직물포대 제조업						
포장용 직물포대 제조업	2,810.9	13,359.0	2,283.5	999.3	7,679.0	856.7
폴리포대, 직물포대 합계*	2,810.9	13,359.0	2,283.5	999.3	7,679.0	856.7
기타 청구 및 관련제품(칭낭에 한함)						
지수제품(전자지수제품에 한함)	894.7	6,842.8	514.6	643.3	3,351.8	554.2
배낭, 수통피, 안전삼피: 제조업						
견이불솜 제조업			156.2			534.8
양말 편조업(스타킹류를 제외)				876.2	2,278.5	843.8
장갑 편조업				250.9	567.0	247.1
가방 제조업	898.8	7,011.6	645.8	1,011.3	10,708.3	931.8
현드백 제조업	779.1	3,826.0	478.2	1,344.8	18,584.0	920.9
흑다용 케이스류 제조업			224.4			408.3
탁구대 제조업						
기타 낚시장비 제조업	323.8	671.7	298.3	427.8	3,421.0	379.9
봉제완구 제조업	1,216.2	4,127.8	881.5	887.4	794.0	890.4
유아용 승용콜 제조업			288.4	954.5	5,759.0	762.4
유아용 승용콜 제조업						
유아용 승용콜 제조업						
유아용 승용콜 제조업						
유아용 승용콜 제조업						
유아용 승용콜 합계**	288.4		288.4	954.5	5,759.0	762.4
오즈장식품(의복장식) 제조업				608.3	3,400.0	586.8
크레용파스텔 제조업			755.2			1,072.6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1,862.9	1,613.6	1,284.5			593.9	1,249.6	3,934.7	3,096.3	3,050.2
		175.6			230.8	158.8	514.3		
517.3	210.0	522.0	489.0	1,823.0	475.8				
					1,043.7	463.2	695.6	820.6	644.8
			912.5	5,861.7	706.3	782.5	741.3	665.1	780.9
		550.0	739.0	171.0	748.5	599.3	315.1		645.2
			1,084.3	11,096.0	750.6				
					472.3				
550.0		550.0	839.4	5,633.5	737.4	599.3	315.1		645.2
					534.1	1,166.7	1,154.0	1,436.9	1,509.9
1,043.0	1,101.2.5	865.0	967.2	17,487.0	812.8	1,425.8	2,043.8	1,382.9	1,585.4
1,043.0	1,101.2.5	865.0	839.8	17,487.0	730.3	1,205.6	1,340.0	1,426.6	1,527.0
					758.2	1,161.6	466.1	1,419.7	1,156.4
762.4	6,763.8	573.7	778.5	6,795.0	660.5	297.6	433.2	334.9	398.3
					576.0	916.9	626.4	825.8	360.0
		556.1			534.1				
916.2	11,280.0	790.6	986.4	5,064.0	905.2	1,000.7	1,075.8	1,351.7	1,632.5
		339.5			405.9	413.2	422.8	458.6	467.6
1,138.4	10,856.0	1,078.8	962.9	4,618.0	926.5	1,092.1	1,011.4	1,151.0	1,158.5
1,850.0	14,012.3	1,437.7	1,876.0	16,277.0	1,519.0	1,998.7	1,425.4	1,342.5	1,774.8
		606.1	701.1	397.0	718.0	554.7	608.0	495.2	1,046.3
		468.3			354.3	572.0	703.5	476.7	587.3
		468.3			595.3	581.5	518.6	609.4	746.6
1,008.6	3,115.0	904.6	1,414.1	12,520.0	1,246.6	1,529.3	1,596.9	1,652.6	1,375.5
		656.5			945.8	566.1	751.4	874.7	596.4
					475.2	387.0	1,305.8	719.0	733.7
					373.4	223.5	227.5	238.1	149.9
656.5		656.5	540.8		540.8	401.5	641.8	593.9	445.6
		615.1			631.1	682.7	641.4	694.7	689.2
984.6	242.0	1,077.4	1,701.7	1,701.0	1,701.8	1,059.8	1,055.1	1,753.4	1,874.9

업종	1984년			1989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타이프용 리본 제조업			300.0			859.8
지우개 제조업			198.3			289.9
우산 재조업			654.0			459.7
양산 재조업			197.0			765.9
양산 재조업						
양산 합계**	197.0		197.0	765.9		765.9
회장용 분업 및 파드 제조업			200.0			303.9
마네킹 제조업			144.6			
거울판(거울을 포함함) 제조업			160.0	647.5	233.0	661.3
키본지 제조업			465.5	1,901.8	3,300.0	1,727.0
노트 제조업			134.0			246.5
일기책 제조업			27.0			318.6
연습장 제조업	188.0	4,249.0	149.1			383.1
앨범 제조업	1,284.7	13.0	1,284.4			1,455.3
비인더 제조업						
연희장 제조업			86.5			187.0
물감 제조업			343.3			1,089.4
골판지상자 제조업	709.9	7,227.3	655.0	914.1	17,285.5	865.2
골판지상자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1,981.0	4,593.0	1,575.8	4,194.8		4,194.8
골판지+골판지상자*	810.6	5,910.2	756.2	1,067.7	17,285.5	1,021.5
크라프트지 포대 제조업	635.3	374.0	625.9			1,184.1
종이컵 제조업			324.6			498.5
종이컵 제조업						
종이컵 합계**	324.6		324.6	498.5		498.5
습감지(위생용 냅킨에 한함)			152.6	192.6	550.0	177.0
습감지(위생용 냅킨에 한함)						
습감지 합계**	152.6		152.6	192.6		177.0
판지상자 제조업	578.0	2,638.0	535.8			695.7
공택제 제조업			298.4	429.1	176.0	452.1
공택제 제조업						
공택제 합계**	298.4		298.4	429.1		452.1
세탁비누 제조업	2,175.6	6,312.5	1,123.5	5,928.9	12,674.0	2,556.3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1,174.3			1,489.7	1,280.8			
		335.6			456.9	680.6			
		602.7			741.4	718.0	544.6	677.8	677.3
		629.7			1,231.6	455.3	469.8	460.4	243.5
					214.8	110.5	298.3	414.3	
629.7		629.7	1,005.7		1,005.7	424.0	453.2	455.5	243.5
		201.3			40.3	371.7	1,552.6	763.2	1,014.8
638.1	26,439.0	399.2			327.0	387.2	394.2	529.6	423.8
872.6	68.0	897.0			791.9	686.7			
		3,748.2			400.4	804.8	539.5	1,146.7	725.3
		277.4			607.3	926.6	1,022.5	1,058.4	1,112.7
		343.3							
		365.3							
		1,483.4			1,402.3	1,492.1	1,331.0	1,586.8	1,812.9
					345.6	327.5	480.6	489.0	573.9
		303.4	681.3	19,218.8	419.3	1,245.2	1,369.9	1,681.0	2,868.8
		1,799.9			1,042.9	1,082.8	1,391.4	1,428.8	745.5
1,033.1	17,896.5	985.0			4,240.2	4,618.0	5,853.9	5,486.2	6,391.1
					1,095.7	1,089.4	1,001.1	1,191.2	1,453.8
		2,611.1			4,240.2	4,618.0	5,853.9	5,486.2	6,391.1
1,109.8	17,896.5	1,064.4	1,445.5		1,445.5	1,562.1	1,855.2	2,031.3	2,490.2
		1,133.9			1,389.0	1,509.2	1,676.5	1,362.9	2,039.2
		675.4			597.8	5,789.2	12,400.0	16,437.9	17,093.6
					529.8	847.3	725.9	724.5	775.3
675.4		675.4	572.5		572.5	2,785.3	2,897.9	3,343.4	3,258.5
193.5	796.0	163.4	2,246.6	34,523.5	980.9	2,718.7	2,749.2	3,041.1	2,861.9
					613.1	726.1	888.7	804.0	2,681.5
193.5		163.4	2,118.8		951.1	2,602.4	2,614.2	2,886.2	2,851.8
		778.7			924.9	920.7	771.3	959.9	1,079.5
		992.0	878.7	213.0	952.7	626.0	1,049.4	796.5	906.6
					392.1	1,147.8	550.0	1,323.6	1,008.3
992.0		992.0	572.3		586.1	1,012.5	742.1	1,032.8	963.8
5,171.8	18,402.3	1,202.6	14,194.8	35,238.8	2,169.7	5,635.9	4,182.2	3,234.8	5,493.2

업종	1984년			1989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양초 제조업						222.6
재생타이어 제조업	227.4	272.0	217.7	495.1	471.0	495.8
고무장갑 제조업	4,996.5	9,941.0	26.0			572.8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관 및 판 제조업				1,157.2	4,343.0	1,136.9
폴리스티렌 페이퍼셔츠 제조업			1,061.1			
폴리메리터+폴리내포장*	1,061.1		1,061.1			
주방용 플라스틱제품				578.6	19,596.0	441.7
프라스틱용기 및 욕모상자(폴리머 스텔용기 제외)	500.8	6,087.3	352.8	745.8	34,660.0	602.1
프라스틱용기 및 욕모상자(폴리머 스텔용기 제외)						
프라스틱용기 및 욕모상자 합계**	500.8		352.8	745.8		602.1
상업 인쇄업			216.5			187.1
자상프라스틱원료 제조업						194.3
접착제 제조업				1,770.2	21,526.333	1,272.15
연다지석 제조업			650.7			907.0
연다지석 제조업			369.4			322.1
연다지석 합계**	530.1		530.1	724.2		774.2
연다지 및 포 제조업			1,323.1			3,454.4
아스콘(이동식 간이설비를 제외함)				1,669.6	6,176.0	1,633.0
위생약품용 우리제품(자동제병을 제외)	3,186.4	6,665.3	1,974.5	2,522.1	8,297.5	1,915.3
화장품용 우리제품(자동제병을 제외)	1,489.3	3,625.0	885.2	3,069.4	13,652.5	1,557.6
위생약품+화장품용 우리*	2,822.7	6,057.2	2,119.6	2,759.4	10,975.0	1,763.5
미강류 제조업			306.6			1,056.6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기타 식물성기름)						
미강유+식용유*	306.6		306.6	1,056.6		1,056.6
옥수수기름 제조업			843.0			958.0
식물성유지 제조업(옥수수유, 옥배유)			1,008.2	5,559.0	11,006.4	3,889.6
옥수수기름+식물성옥배유*	946.3		946.3	5,291.5	11,006.4	3,670.8
서류전분(감자전분 제외)	542.4	4,203.5	308.8	1,989.2	13,502.5	1,068.2
동물약품(원료동물약품을 제외)	760.9	2,536.0	672.0	1,786.2	6,959.0	1,693.8
양곡 도정업				3,254.5	27,235.2	2,438.9
국수 제조업	150.1	90.0	148.9			325.4
당면 제조업			127.9			391.3
두부 제조업			205.2			296.7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251.4			269.1	312.1	344.7	559.4	323.5
698.4	5,055.0	542.8			688.0	697.3	1,504.1	1,316.1	1,102.1
890.8	4,620.0	424.6	808.3	4,278.0	615.5	529.0	790.4	1,141.9	1,102.1
1,227.2	0.0	1,233.3			478.9	1,063.2			
					1,054.3	940.3	1,242.4	1,626.6	1,352.5
			1,054.3		1,054.3	940.3	1,242.4	1,626.6	1,352.5
		492.9	413.8	0.0	413.8				
899.4	12,843.7	740.8	1,280.1	16,113.0	992.1	1,441.9	1,885.7	2,414.3	2,062.1
			865.0	10,704.5	688.5	981.2	994.9	971.4	875.5
899.4		740.8	996.3		784.4	1,099.5	1,218.9	1,305.7	1,138.4
		1,809.7	607.0	18,933.3	520.1	1,940.5	1,424.1		
		251.7			199.8	259.7	283.0	404.0	361.0
1,422.6	16,902.5	1,180.7	2,093.12	10,502.33	1,911.63	1,876.51	2,013.177	2,372.727	2,741.67
		1,137.9			1,075.4	917.4	1,352.4	2,440.8	1,826.7
		798.0			947.5	973.7	657.4	1,046.0	1,069.1
1,007.9		1,007.9	999.4		999.4	942.6	906.9	1,486.4	1,341.9
3,928.1	11,101.0	3,210.8			3,431.5	3,478.5	3,649.4	3,341.9	138.8
		2,135.1	2,484.3	890.0	2,495.3	3,307.3	2,764.5	2,096.4	2,036.2
3,393.8	8,541.3	2,364.3	5,288.3	24,748.7	2,634.6	6,503.6	5,701.1	7,016.2	8,576.7
2,949.4	12,190.0	1,527.8							
3,191.8	10,000.8	1,975.9	5,288.3	24,748.7	2,634.6	6,503.6	5,701.1	7,016.2	8,576.7
		1,165.7			1,383.4				
			6,902.0	20,389.0	4,975.3		2,837.2	1,796.4	6,987.5
1,165.7		1,165.7	4,142.7	20,389.0	3,059.6		2,837.2	1,796.4	6,987.5
		1,412.0			486.5	4,056.6			
5,230.8	19,253.8	3,653.2	3,839.8	535.0	4,170.3	5,530.5	2,811.9	6,348.9	6,915.4
4,989.6	19,253.8	3,496.8	2,427.9	535.0	2,533.1	5,039.2	2,811.9	6,348.9	6,915.4
2,326.2	19,266.3	1,309.8	2,867.9	16,911.3	1,744.4	2,560.0	2,372.0	2,452.7	3,159.5
2,043.3	24,766.0	1,714.0			3,751.6	3,898.1	4,156.7	6,513.1	7,931.2
3,843.9	29,164.7	3,281.3			2,270.1	2,755.0	3,087.8	2,911.2	3,608.0
		365.8			382.1	495.0	497.6	769.7	605.5
493.8	9,485.0	368.9			427.0	472.3	721.9	832.6	1,185.4
		331.6			336.6	458.1	483.4	505.2	534.1

업종	1984년			1989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일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제조업						
의료용 물질생성기(미온수기) 제조업				383.7	1,366.5	336.9
의료용 수술기구류 제조업						
보청기 제조업						92.8
어육연제품(맛살류를 제외)				1,656.7	14,482.6	838.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직조징어 조대가공제품 제조업						
봉합침 제조업						279.6
자기치료기 제조업						
석간재 제조업	195.7	4,103.7	171.9	430.5	9,509.0	373.8
석공예 제조업						
석간재+석공예*	195.7	4,103.7	171.9	430.5	9,509.0	373.8
중기보일러				2,498.1	64,909.2	848.4
난방용 보일러			346.8	1,980.8	21,277.5	1,444.8
버너			451.8	1,817.8	1,194.0	1,855.6
버너	897.0	5,902.5	396.2			
버너						
버너 합계**	838.4	5,902.5	435.6	1,817.8	1,194.0	1,855.6
가정용 보일러(가스용을 제외)			137.6			207.5
기타 비운활유(프로세스유) 제조업				1,627.2		1,627.2
전기절연유(1종 광유계에 한함)				1,458.4		1,458.4
기타 비운활유+전기절연유				1,504.4		1,504.4
해면양식						
수산물 냉동냉장(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및 허가 제외)	1,500.8	7,901.4	1,039.4	2,067.4	9,656.8	1,713.6
음반 및 녹음테이프	2,816.0	14,948.9	646.0	1,180.6	4,308.0	1,115.5
음반 및 녹음테이프						
음반 및 녹음테이프						
음반 및 녹음테이프 합계**	2,816.0	14,948.9	755.7	1,180.6	4,308.0	1,115.5
백열전구	474.1	983.0	412.7	691.3	8,243.5	259.8
철제학생용 책걸상 제조업			300.3	540.7	6,678.0	460.0
철제학생용 책걸상 제조업						
철제학생용 책걸상 합계**	300.3		300.3	540.7	6,678.0	460.0
수동식발브 제조업	688.5	4,547.9	453.3	972.7	10,695.6	762.2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355.8	1,616.7	14,885.0	1,315.1				
621.1	2,434.3	532.0	537.9	15,703.0	397.5	524.9	450.7	509.3	830.8
					446.6				
		206.0			121.0	277.5	784.8	1,052.6	670.9
1,869.0	11,276.6	1,106.2	1,075.7	15,189.0	872.7	1,754.3	1,453.9	1,517.0	1,514.7
			2,512.0	12,450.8	1,720.4	1,977.7	2,276.4	2,290.9	2,706.9
			847.8	6,065.3	721.3				
		349.0				1,578.4	1,327.0	1,635.6	1,740.1
						902.4	744.7	707.6	
460.6	10,559.5	400.4	515.7	12,639.5	483.2	569.8	572.6	632.2	739.5
460.6	10,559.5	400.4	515.7	12,639.5	483.2	569.8	572.6	632.2	739.5
1,413.2	12,001.1	1,105.7	4,123.9	89,728.2	1,347.6	4,657.3	5,763.9	1,562.1	11,944.5
3,357.8	23,552.0	2,755.0			2,505.3	2,969.5	1,044.1	9,341.0	9,354.7
		788.0	6,427.8	145,916.0	615.8	1,228.5	1,115.0	3,061.1	3,181.5
			14,370.2	412,551.0	639.8	20,023.3	787.0	940.7	1,142.8
			2,135.5	1,839.0	2,147.9	1,983.6	2,580.4	2,598.6	3,404.0
788.0		788.0	8,064.9	186,768.7	1,102.4	8,808.4	1,482.3	2,464.1	2,734.9
		231.0	4,154.2	582.0	4,218.0	3,602.1	3,568.5	4,624.9	6,324.4
		3,120.0			2,249.6				
		1,683.6				4,355.1	3,077.3	2,869.4	3,317.1
						4,355.1	3,077.3	2,869.4	3,317.1
1,888.4	8,820.5	1,680.4	1,037.5	7,847.3	909.6	1,483.3	1,552.7	1,669.7	1,685.0
2,670.3	21,700.4	875.0			1,616.9	1,056.9	566.3	588.0	304.2
					1,228.8	1,576.3	1,573.3	1,536.1	1,807.6
					451.4	1,657.4	1,814.0	2,388.5	1,158.9
2,670.3	21,700.4	875.0	948.4		948.4	1,492.8	1,514.9	1,846.2	1,376.3
924.2	2,555.0	866.0	517.7	1,000.0	483.3				
457.0	4,291.0	410.2			499.5	412.6	426.1	648.8	623.1
					461.4	458.5	548.8	529.8	615.1
457.0	4,291.0	410.2	477.3		477.3	438.9	502.1	575.8	618.1
1,128.8	22,287.4	543.4	1,328.1	10,455.4	1,129.7	1,271.6	1,301.5	1,403.3	1,515.1

업종	'984년			1989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동력탈곡기 제조업			236.4			213.1
사료절단기 제조업			221.8			302.0
베어링용 강구 제조업	1,400.5	15,529.3	317.0	4,292.6	4,275.4	4,294.4
방열기(라디에터 한함) 제조업	158.3	51.0	151.9	2,615.4	3,751.2	2,299.9
방열기(라디에터 한함) 제조업						
방열기(라디에터 한함) 제조업						
방열기(라디에터 한함) 제조업**	158.3	51.0	151.9	2,615.4	3,751.2	2,299.9
박용전기방식제(조선용기자재에 한함)			321.5			432.1
현창(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박용송풍기(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383.5	626.4	1,358.0	583.4
선동(조선용 기자재에 한함)	366.5	2,028.3	237.1	810.5	4,201.5	730.7
부스공중전화 제조업	840.4	8,316.2	473.5	1,570.7	20,445.6	969.1
시나단자합 제조업						
노브 제조업						
동북강선 제조업	4,428.0	28,291.1	861.9	6,408.0	41,544.1	2,369.4
지다봉사 제조업	366.4	312.0	329.7	641.8	221.5	676.9
천막 제조업	1,154.7	2,922.0	862.5	679.9	458.0	684.6
세족직물 제조업						
세족직물 합계**	161.4	626.0	149.1	297.3	1,835.0	249.2
배낭, 수통피, 안전삼피 제조업	520.1	1,736.0	483.2	1,101.7	14,700.0	733.6
배낭, 수통, 안전삼피 합계**	520.1	1,736.0	483.2	1,101.7	14,700.0	733.6
작업장갑 제조업	703.8	2,789.5	506.9	800.4	4,429.0	765.2
책장 제조업	450.8	4,496.7	133.3	404.6	47,228.0	215.7
실험대 제조업						
박물관 진열대 제조업						
기발 제조업	747.4	3,635.6	404.4	1,050.2	10,874.0	913.7
가노셋 제조업			212.1			144.3
스탬프 제조업			56.0			262.8
흑판 제조업			147.7			206.1
비 제조업			259.1			212.8
성냥 제조업			492.5			1,062.6
약기	3,671.5	14,125.9	140.0	3,245.2	283,032.0	475.1
장부책 제조업			61.4			24.1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361.8			316.3	253.8	189.5	173.5	443.3
		439.7			249.8		260.1	362.5	253.8
1,909.0	17,859.2	622.7	2,655.5	15,904.3	856.3	2,294.6	2,733.6	3,413.8	3,731.5
7,482.4	18,424.0	1,230.0			605.7	1,228.5	540.9	543.3	804.9
					390.1	346.9	539.1	962.4	1,162.4
					417.3	481.3	566.6	1,076.3	742.0
7,482.4	18,424.0	1,230.0	531.4		531.4	786.3	547.4	803.2	966.0
		487.8	847.6	30,457.0	486.5	826.8	1,080.0	1,295.1	
		546.3							
521.0	115.0	525.8							
					738.9	1,224.4	1,349.2	1,253.2	2,257.8
			2,225.8	96,678.0	1,052.5	1,345.2	1,711.4	1,765.9	1,654.9
6,527.6	37,176.5	2,243.4	11,518.0	50,346.4	3,281.6	10,072.1	8,087.1	7,331.3	9,534.7
		530.4	946.2	97.0	966.9	1,083.5			
		966.7			1,183.7				
					890.2	865.5	887.7	1,092.7	1,301.8
517.3	210.0	522.0	599.6	1,823.0	590.4	618.4	762.5	902.0	827.3
		932.4			535.6	502.2	2,290.5	3,643.9	732.8
932.4		932.4	549.3		549.3	632.3	1,926.5	3,255.2	670.7
996.3	2,086.0	985.1			756.5	764.1	760.7	496.9	614.3
			483.9	8,234.3	212.6	622.5	682.6	545.4	696.8
					249.9	262.6	228.1	341.6	389.5
					1,013.9		213.3	417.9	365.7
965.1	12,234.0	810.7	1,262.8	17,129.0	1,032.9	1,390.0	1,103.5	1,206.1	997.9
		136.7			147.2	287.3	221.3	284.7	258.0
		154.3			237.0	185.7	128.5	74.3	508.4
		233.4	1,080.3	20,812.5	375.6	510.9	1,473.7	1,236.5	910.5
		223.1			468.4	957.3	555.2	688.6	508.6
		745.3			717.2	775.0	552.0	622.3	612.4
3,531.3	65,399.6	556.9	8,751.7	75,162.0	1,372.8	6,880.9	7,538.2	7,209.9	1,456.8
		376.5			182.2	232.5	242.2	214.7	504.4

업종	1984년			1989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회계장 제조업						
양초 제조업			187.2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필름						
프리필름+발포폴리스티렌관	857.2	8,153.8	683.5	1,489.7	22,844.0	1,129.2
발포폴리스티렌(EPS) 내포장용 성형제품						
이론차용 안전모 제조업			355.7	796.8	33,631.0	570.4
염화비닐열수축라벨 제조업						
폴리에틸렌 포대 제조업	363.1	2,334.0	330.9	635.7	11,798.0	568.0
합성수지제 끈 제조업			85.7			1,087.6
콘크리트 블럭, 벽돌, 기와 제조업			40.9			87.0
콘크리트 블럭, 벽돌, 기와 제조업			54.5			131.8
콘크리트 블럭, 벽돌, 기와 제조업			33.5			67.4
콘크리트, 블럭, 기와 제조업 합계**	44.7		44.7	101.3		101.3
유리용 드가니 제조업			146.6			654.1
석유심지	1,375.2	7,881.0	1,017.0	2,711.6	10,948.5	1,064.3
구멍탄난로 제조업			18.1			47.2
구멍탄용 연소기 제조업						
구멍탄난로+연소기*	18.1		18.1	47.2		47.2
포프라제품			106.0			174.2
유청정소업(선박정소업)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강관전주(Flange Type 에 한함)						
쌀통 제조업						1,837.6
소식회 제조업	316.9	742.0	281.6			390.9
유기계면활성제			1,077.0	2,317.6	21,145.0	1,729.2
조제계면활성제			1,038.3			1,448.2
부동액 제조업						1,266.0
브레이크액 제조업						742.1
황산알루미늄 제조업			410.3			1,058.0
고체가성소다 제조업	4,620.5	19,683.5	1,339.9	7,768.7	40,814.5	1,760.4
액상, 고상 염화아연 제조업	747.4	826.8	624.9	1,901.7	11,412.3	926.3
규산소다(액상)						1,435.4
황화소다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1,814.4	16,708.3	1,210.5	2,588.8	1,673.0	2,929.8	3,470.1
1,692.4		1,252.3	1,198.5	13,400.6	1,007.9	1,432.7	1,351.7	1,651.3	2,049.4
		568.2	790.7	3,878.0	656.4	644.3	858.0	1,309.5	1,276.3
					629.5	1,275.429	1,077.619	3,091.857	1,175.38
915.5	18,026.5	569.8	1,232.3	4,688.3	1,152.9				
		531.4			478.2	529.7		516.0	446.2
		143.9			132.1	150.6	174.5	189.0	189.7
		196.3			246.5	236.2	245.3	283.2	297.9
		95.7			140.3	130.9	173.6	156.6	273.6
149.8		149.8	191.7		191.7	194.3	210.5	236.6	247.7
		345.4			229.7	411.8	433.5	281.5	418.1
3,677.7	18,649.0	1,432.0	2,662.7	8,545.3	1,895.4	4,415.3	3,788.1	4,881.0	6,405.2
		137.2	1,759.4	8,449.0	87.0				
						125.3	34.0		90.3
137.2		137.2	1,759.4	8,449.0	87.0	125.3	34.0		90.3
		199.4			211.3	234.7	288.1	2,239.5	207.4
			26,616.9	121,390.3	7,008.6	32,780.0	27,251.2	27,964.3	
			7,405.5	42,394.9	2,555.4	7,678.5	5,764.2	8,628.1	9,898.6
1,971.8	2,681.0	1,927.5	2,330.8	7,792.0	1,966.7	2,027.3	1,528.3	2,571.7	3,001.6
		562.3			615.0	745.3	577.5	765.3	750.3
3,791.8	30,743.0	1,995.1	3,271.5	19,852.0	2,846.4	3,731.1	2,883.4		
		1,579.9			2,727.1	10,504.6	2,429.3	3,740.4	3,686.6
		881.8			613.5	1,146.7	1,088.3	1,916.3	2,104.1
		793.0			1,047.2	658.8	628.2	492.9	2,787.7
		1,237.7			990.4	6,483.0	912.2	866.8	1,047.5
6,882.6	21,918.0	3,412.9	5,960.4	20,015.5	3,149.4	9,375.6	5,343.0	5,597.8	7,317.0
		1,413.8	1,002.3	418.0	1,030.1		1,392.7	1,315.5	1,341.5
		1,590.2			1,801.0	2,005.9			
					983.0	1,235.5			

업종	1984년			1989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유성페인트 제조업	2,732.0	17,507.0	1,140.4	4,237.5	14,826.2	2,472.7
수성페인트 제조업	643.0	2,919.0	452.6	1,776.2	9,470.5	871.0
브레이크슈 및 라이닝	720.7	6,281.0	416.8	1,917.7	18,149.7	776.4
소화기 제조업						984.3
수목시계케이스(이형케이스 제외) 제조업	757.1	2,654.7	314.7			564.7
전동제인호이스트(10톤 이상 제외)				688.6	2,404.0	653.6
전동제인호이스트(10톤 이상 제외)						
전동제인호이스트 합계**				688.6	2,404.0	653.6
소방호스 및 소방용 금속구 제조업				1,173.6	825.0	1,185.7
소방호스 및 소방용 금속구 제조업				752.7	1,044.3	744.6
소방호스, 소방용 금속구 합계**				842.2	989.5	937.9
소방호스 및 소방용구				856.2	5,021.5	699.0
가스미터기(산업용 제외)				516.6	518.0	516.3
구명정(조선용) 기자치여 한함	221.0	62.0	212.1	369.4	729.0	356.1
피뢰탄기판 제조업						
콘넥타리(다자에 한함)						
화재경보기류	722.3	1,659.3	514.8	726.0	9,890.0	628.5
등안정기(형광등용에 한함) 제조업			227.7			648.9
정류기(4천 KW 이하에 한함) 제조업			241.6			492.9
무정전 전원장치 제조업	333.3	7.0	333.0	1,324.2	42,470.0	561.2
저항용접기			280.6	1,533.5	4,877.0	1,294.6
전기드관용 조인트 및 부착물 제조업						160.3
아이크용접기			446.3			293.1
배선기구(옥내용 소형스위치)				916.9	6,474.0	648.6
순방모직물 제조업	930.3	2,214.5	438.2	4,294.0	10,985.2	948.4
혼방방모직물 제조업	1,841.8	4,144.1	248.0	1,945.8	6,149.4	839.6
가타 슝 제조업			557.9	386.4	671.5	370.1
순방모사 제조업	2,554.0	2,113.0	2,391.5	3,192.1	3,497.7	3,150.5
혼방방모사 제조업	1,404.0	2,017.7	462.4	5,332.5	8,087.6	3,078.2
어플 오 제조업			222.9	637.3	3,895.0	549.3
부직포			986.5	1,475.1	13,192.0	898.9
양말 제조업	290.7	979.0	241.7			
서기 제조업	113.4	1,150.5	39.2	163.8	7,230.0	77.6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6,218.4	27,287.6	3,208.5	6,950.1	42,741.0	4,615.9	11,577.6	3,689.6	12,761.2	15,418.8
1,878.9	8,411.8	1,256.7	1,211.1	9,608.0	1,020.3	2,284.8	3,437.1	4,684.2	4,158.3
2,459.7	24,155.1	963.5							
		1,795.0							
		590.4	612.0	2,238.0	55.8	461.7	693.7	627.5	
		356.4	1,114.0	8,626.0	780.2	1,896.1	1,051.7	1,245.0	1,289.8
					989.5	1,610.2	321.0		
		356.4	1,081.0	8,626.0	837.6	1,869.2	1,016.1	1,245.0	1,289.8
1,008.5	0.0	1,042.1	306.6	8.0	356.3	401.8	538.9	779.5	1,042.8
722.9	549.0	726.3	1,241.7	62.0	1,265.8	1,387.3	599.2		
787.1	366.0	796.4	1,126.9	35.0	1,166.6	1,303.4	589.1	779.5	1,042.8
		664.7			885.6	1,133.5	1,237.5	1,544.7	1,806.2
		578.9	933.2	630.0	963.5	2,258.0	2,760.5	2,049.3	1,744.0
		409.1	831.3	12,742.0	533.5	936.0	1,004.4	1,032.9	599.4
			1,357.3	7,497.0	1,217.7	2,190.0	1,883.6	1,861.3	2,588.8
843.4	1,938.0	833.6	949.0	4,254.4	838.8	1,295.8	840.4	980.3	1,052.3
		694.0			714.7	783.2	754.9	839.0	1,327.1
		517.3			1,004.8	908.5	553.5	801.0	824.7
		646.2	1,032.1	15,172.5	628.1	823.2			
		968.1			1,288.4	1,043.2	961.1	1,885.0	2,795.3
		530.0			617.6	7,469.5	1,055.3	800.1	1,056.4
565.9	1,492.0	462.9			1,005.6	1,458.3	808.4	848.1	1,185.3
1,062.3	11,297.5	701.8	1,960.9	18,232.4	1,033.5	2,830.3	1,755.0	3,490.1	1,381.0
2,648.1	6,423.7	445.7	1,554.9	3,977.1	784.1	9,397.1	6,701.5	4,923.6	8,855.3
1,956.6	4,611.0	1,332.1	5,268.3	12,894.4	2,544.6				
		385.7			546.3	805.9	496.1	595.8	675.5
1,550.0	1,219.7	1,578.3	1,992.1	430.0	2,153.7	5,160.1	2,096.2	8,923.1	3,431.5
4,309.7	6,710.4	2,149.0	2,249.7	1,117.8	2,444.9				
		563.3			317.3	748.3	193.6	438.4	724.3
1,606.8	10,989.0	1,062.9	1,892.8	15,582.0	1,142.7	1,174.5	871.4	788.9	1,327.3
1,030.4	15,799.0	878.2							
598.9	9,032.5	120.1	184.7	342.0	182.3	268.2	207.1	627.8	379.6

업종	1984년			1989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싱크대	917.4	975.5	913.5	1,145.4	19,512.3	497.1
싱크대				1,189.4	9,214.0	960.2
싱크대				103.6	1,597.0	73.8
싱트대 합계**	917.4	975.5	913.5	850.8	13,869.6	467.9
책선반 제조업						
보관상자 제조업						
학교용 책걸상 제조업			84.9			336.5
도서카드함 제조업						
공류 제조업	751.8	2,507.2	451.0	1,226.7	3,756.6	923.1
공류 제조업						
슬라이드화스나 제조업	993.5	8,793.3	350.1	2,201.5	37,996.5	496.9
플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필름(이축연산폴리프로필렌)	857.2	8,153.8	667.6	2,371.2	29,011.0	1,102.7
사진제판(자기공정용을 제외)						265.6
출판	924.5	2,285.0	748.7	1,165.4	1,004.0	1,168.5
복종유리 제조업				629.2	1,668.0	564.3
점토기와 제조업						245.4
타일시멘트				3,732.2	17,140.0	1,366.1
배합사로 제조업				21,524.5	56,992.0	18,724.5
김치류 제조업				403.6	213.0	406.1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234.2	56.0	233.9	465.5	3,074.0	454.0
국산차(울무차, 유자차, 쌍화차, 생강차, 칩차)				143.3		143.3
국산차 합계**				143.3		143.3
바이오에너지(왕겨탄, 톱밥탄 혼합)				677.8	1,735.0	641.4
수산물 통조림	617.5	994.5	505.8	1,421.9	10,675.5	872.2
금속제 식탁용품 제조업	3,796.9	16,340.7	222.4	2,904.9	18,157.8	512.3
알루미늄압력솔			153.0			450.2
도금업(자기공정도 제외)			169.0			
개폐장치 및 보호장치부품 제조업	503.7	3,190.0	407.0	1,081.3	11,952.1	622.0
휴일탱크	302.7	1,607.3	208.2			
안테나 제조업(TV 육외 제외)	516.3	891.5	466.7	1,461.9	10,615.8	744.0
전기면도기			224.3			405.5
섬유장갑 제조업	149.1	300.0	138.2			
카니발용품			249.4			392.4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712.4	8,876.3	472.3	1,249.8	21,182.4	532.8	1,708.8	1,111.3	1,439.2	1,052.9
		1,011.7	1,238.9	10,878.7	241.7	1,467.7	2,562.4	645.9	1,198.4
373.4	5,498.0	123.5	824.4	9,202.0	638.2	959.4	1,095.0	1,007.1	1,033.8
703.5	7,525.0	520.1	1,160.1	16,416.7	515.4	1,111.0	1,201.4	1,298.5	1,052.9
556.8	8,018.0	447.1			273.7	351.9	263.8	315.1	508.3
					265.8				
1,179.9	6,000.7	994.5	1,133.0	10,409.0	729.7	1,231.3	918.8	1,754.1	2,461.4
					1,520.1	1,741.8	924.3	1,592.3	1,137.1
2,135.5	22,631.7	598.3	1,328.5	17,175.5	591.4	1,534.7	1,343.8	1,477.7	1,793.0
2,974.7	32,151.8	1,307.4	1,085.6	8,439.0	1,016.9	1,113.5	1,244.6	1,243.8	1,604.8
		283.0	250.4	457.0	249.6	649.9	557.5	427.7	1,715.9
1,456.0	2,069.5	1,431.9	2,206.7	3,421.7	2,130.7	2,393.6	2,242.9	2,479.9	2,388.9
605.8	2,059.0	736.2	1,389.4	2,411.0	1,362.5	1,526.6			
		282.6			389.0	371.2	399.3	478.8	577.4
4,226.5	17,397.3	2,146.9			1,533.7	2,585.9	1,672.7	1,423.2	1,099.3
20,216.9	37,153.8	9,158.3	23,328.2	48,509.9	21,096.9	25,891.0	22,643.6	23,379.6	26,464.5
194.8	677.0	188.7			617.7	637.5	718.7	814.6	862.7
659.1	2,323.0	635.5	745.5	256.0	747.9	1,007.5	1,116.0	2,365.4	2,531.8
		248.4	647.3	11,645.3	408.2	579.3	944.8	1,215.2	1,521.6
206.4		206.4	647.3	11,645.3	408.2	579.3	944.8	1,215.2	1,521.6
591.4	2,494.0	525.8	563.0	4,900.0	253.2	987.2	647.7	499.7	1,034.4
1,709.7	13,581.7	935.4	1,205.7	1,925.6	1,159.3	1,614.7	1,430.7	2,583.4	3,068.0
3,108.2	16,641.0	905.1							
		979.5							
1,035.0	11,612.1	695.3							
1,332.8	17,335.7	684.1							
686.4	1,476.0	630.0	1,281.4	0.0	1,281.4				
		245.2							
		626.1							

업 종	1984 년			1989 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제조업				441.4	6,900.0	370.4
재생프라스틱제품 제조업	201.6	4,342.0	126.7			308.4
콘크리트전주	1,736.9	2,157.0	1,197.7	873.3	3,224.0	828.1
콘크리트과일	1,939.9	3,048.6	1,277.2	4,136.7	1,633.0	4,322.1
국산차(을무차, 유자차, 쌍화차, 생강차, 침차)						
만홀 제조업	726.5	1,856.0	144.0	1,491.2	3,012.4	993.1
양초 합계**	187.2		187.2	222.6		222.6
공류 합계**	751.8	2,507.2	512.5	1,226.7	3,756.6	923.1
가타 무기회합물			1,376.0			2,360.0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평균출하액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전체	전체	전체
590.0	15,491.5	427.1							
		266.2							
2,396.9	2,069.5	2,431.4	2,787.3	897.0	3,085.8				
3,579.7	4,985.5	3,423.4	4,360.6	5,694.8	4,242.0				
		111.0							
1,659.7	9,078.1	1,352.2	1,901.1	10,088.5	1,346.7	1,973.3	2,836.7	2,110.6	2,438.5
251.4		251.4	269.1		269.1	312.1	344.7	559.4	323.5
1,179.9	6,000.7	994.5	1,269.0	10,409.0	1,015.1	1,401.5	920.4	1,695.3	1,903.8
		2,361.8667							

주 : \* 유사품목 합계, \*\* 다른 산업분류 코드의 동일품목 합계

---

## ABSTRACT

### A Study on Designation of Industr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Eunja, Kim

The Korean government has performed various policies to encourage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Designation of industry fo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s one of those policies. In principle, it restricts new entry of large business to specific industries. However, on the contrary, the policy is said that it weakens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This study accompanied by an empirical study or a case study was started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designation of industry whether it enforc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ccording to this study, first, the policy works as a strong entry barrier to the large business which wants a new entry to the market. It protects the benefit of the large business which is already entered into the market rather than it does to the small medium business. Second, as the acceleration of domestic market opening under the WTO regime, the regulation on foreign investment is decreasing and imports are increasing. In current circumstances, the regulation

on large business entry is unfair, and does not enhan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s a result, designation of industry does not much for the e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nd is losing its effects because of the market opening. Anti-competitive designation of industry should be abolished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